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Establishing Public Building Centre at Local-level

임유경 Lim, Yookyoung

변나향 Byun, Nahyang

박석환 Park, Seokhwan

(aur)

정책연구보고서 2017-4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Establishing Public Building Centre at Local-level

지은이	임유경, 변나향, 박석환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7년 9월 25일, 발행: 2017년 9월 29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3,000원, ISBN: 979-11-5659-134-4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 연구책임      임유경 부연구위원

| 연구진      변나향 부연구위원  
                        박석환 연구원

| 연구보조원      이로운

---

| 연구심의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고관규 국토교통부 과장

| 연구자문위원      강인호 한남대학교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도현학 영남대학교 교수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방재성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전영훈 중앙대학교 교수



---

# 연구요약

---

Summary

## 제1장 서론

각 지자체는 행정청사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공공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여러 지자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등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공건축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며, 충청남도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디자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와 수원, 영주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유일하게 동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센터 지정 이후 법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건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추가 지정과 국가-지역 간 역할 분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관리·지원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공공건축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2장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과 주요 쟁점

1980~90년대 이후 공공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에 약 24,000동, 1990년대에 46,000동, 2000년대에 49,000동이 조성되었다. 공사계약 실적에서 지자체 발주 사업은 2015년 전체 건수 중 33.19%, 계약금액의 8.58%를 차지하며, 공공부문(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자체 발주 공사계약 건수는 68.9%, 계약금액의 33.06%를 차지한다. 지자체 공공건축은 양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건축 공사계약 실적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공공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 공공건축의 품질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공건축은 무엇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이며 삶의 장소에 인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 연령층과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공공건축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와 품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건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낮거나 지역 수요에 맞지 않는 시설이 공급되고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수급·관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산, 규모, 프로그램 등의 사업계획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주민 수요와 장소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질 낮은 공공건축이 양산되고 있다.

## 제3장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업무 실태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사업 기획은 총무,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 노인·보건·장애인, 자치행정 등 해당 시설을 담당하고 운영하는 개별 부서에서 담당한다.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 담당 부

서와 협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 담당 부서가 빨주 단계부터 개입하여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설계예정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계공모를 원활하게 운영할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2008년 「건축기본법」 시행 이후 모든 광역 지자체와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 공공건축 품질 향상에 대한 인식 부재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 6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사전검토, 자문응답,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통해 지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적 지원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받은 단일 센터로써 업무가 과중되고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세종시 공공건축추진단, 서울시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도시공간개선단,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의 조직이 신설되어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의 인력 구성과 예산, 수행 업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타 부서와 업무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분업적 행정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건축의 기획·조성·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일반적인 지자체 공공건축 조직의 문제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조직 현황과 문제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 개별 부서에 의한 사업 기획 ✓ 수요와 공급 불일치, 지역 불균형	☞ 공공건축 기획조성관리를 통합적 시각에서 조정하는 조직 필요
✓ 비전문가가 사업계획 수립 ✓ 예산, 규모, 프로그램 계획 부실	☞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 전문가가 개입하여 예산, 규모, 프로그램 검토
✓ 공모 준비운영 미숙, 디자인 관리 역량 부족 ✓ 우수 설계자 선정에 한계, 설계의도 구현 실패	☞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제외 공공사업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는 건축가 조직 필요(ex. 공공건축가)

## 제4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향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원칙과 업무 추진 목표, 업무 구성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공공건축 지원 조직의 설립과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정책 방향과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된 지자체에 한해 선별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 구분 없이 설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추진 목표는 지자체 공공건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 차원의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지자체 공공건축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을 할 것, 지역 여건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수준 높은 공공건축을 실현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 조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와 조직 체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업무 추진 목표에 따라 ①지자체 공공건축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계획 수립, ②지역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공건축 기획 및 계획 지원, ③지역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수 설계자 선정 지원, 설계의도 구현과 관리체계 마련, 공공건축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구성

위의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센터장 이하 총괄 기획, 디자인 지원, 교육·홍보, 공공건축 테이터베이스, 운영 지원 등 5개 팀으로 구성하는 조직 체계를 제안하였다.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 시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조직의 형태보다 지자체 행정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각각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더라도 국가와 지역, 서로 다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 부처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 공공건축 조성 지원, 교육 및 홍보 현황, 특히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를 개정하는 한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점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1. 「점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 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 5호 나목과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p><b>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의 요청에 있는 경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제 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li><li>2.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제 24조제2항에 따른 업무</li><li>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li></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세부 업무,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주제어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 차 례

##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4. 연구 추진 과정	12
제2장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과 주요 쟁점	13
1.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13
2. 지자체 공공건축의 문제	33
3. 지자체 공공건축의 주요 쟁점	39
제3장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업무 실태	43
1. 지자체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43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성과와 한계	50
3. 지자체 공공건축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한 시도	54
4. 지자체 공공건축 조직의 가능성과 한계	71
제4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안	73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향	73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79
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 체계 제안	82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87

---

# 차례

## CONTENTS

제5장 결론	91
1. 연구 성과	91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95
 참고문헌	97
영문요약	99
부록 1. 지자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 2015~2016	102
부록 2. 센터 운영 사례 조사	124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공공건축 정의의 대안	6
[표 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행 공공건축 연구(2007-2016)	8
[표 1-3] 선행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표 2-1]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13
[표 2-2] 소유구분별 건축물 증가 추세	14
[표 2-3] 사용승인연도별 공공건축물 등수 현황	15
[표 2-4] 사용승인연도별 공공건축물 연면적 현황	15
[표 2-5] 빌주기관별 공사계약 실적 현황	17
[표 2-6] 빌주기관별 건축공사계약 실적 현황	18
[표 2-7] 공사규모별 공사계약 실적 현황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합계	19
[표 2-8] 공사규모별 건축공사계약 실적 현황	20
[표 2-9] 광역시·도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	21
[표 2-10] 특·광역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22
[표 2-11] 특·광역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23
[표 2-12] 광역도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24
[표 2-13] 광역도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25
[표 2-14]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구분	26
[표 2-15]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 관련 부문	27
[표 2-16]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축사업 행위유형 현황	29
[표 2-17]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축사업 건축물유형 현황	29
[표 2-18]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공공건축사업 행위유형 현황	30
[표 2-19] 경기도 수원시 공공건축사업 행위유형 현황	30
[표 2-20]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공공건축사업 건축물유형 현황	31
[표 2-21] 경기도 수원시 공공건축사업 건축물유형 현황	31
[표 2-22] 지방자치단체 시기별 공공건축 분포현황	32
[표 2-2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주요 의견 구분	34
[표 2-24] 자자체의 공공건축 주요 의견 현황	35
[표 2-25] 공공건축 사업의 분류체계 총괄	41
[표 3-1] 일반적인 자자체의 공공건축 조직 현황과 문제	44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3-2]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공공건축 관련 실천과제별 로드맵	45
[표 3-3] 지자체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기	47
[표 3-4] 지자체별 광역건축기본계획 공공건축 관련 추진사항	47
[표 3-5] 서울·영주·포항시의 공공건축가 및 민간전문가 운영사례	48
[표 3-6]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유형별 현황	49
[표 3-7]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49
[표 3-8] 2014~2017 신청기관별 사전검토 접수 현황	51
[표 3-9] 사전검토 실효성에 대한 설문 결과(2016년 사전검토 수행 사업 담당자 대상)	52
[표 3-10] 사전검토에서 도움을 받은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2016년 사업담당자 대상)	52
[표 3-11] 재정사업 사전 심사제도	59
[표 3-12]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60
[표 3-13]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정원 및 협원	64
[표 3-14]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2017년도 추진업무	65
[표 3-15]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위원회 운영	65
[표 3-16]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구성원 및 업무분야	68
[표 3-17]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공공디자인 컨설팅 대상	68
[표 4-1] 오마하 공공건축 마스터플랜 구성항목	76
[표 4-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안)	81
[표 4-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안)	81
[표 4-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인력구성(안)	82
[표 4-5]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대안 검토	83
[표 4-6]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형태	84
[표 5-1] 일반적인 지자체 공공건축 조직의 문제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93
[표 5-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94

---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마스터플랜	3
[그림 1-2]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	3
[그림 1-3] 연구호름도	12
[그림 2-1] 50년 이상 경과 공공건축물 동수(좌), 20년 이상 경과 공공건축물 동수(우)	16
[그림 2-2] 발주기관별 공사비율(2015)	17
[그림 2-3] 공공부문 공사비율(2015)	17
[그림 2-4] 발주기관별 건축공사비율(2015)	18
[그림 2-5] 공공부문 건축공사비율(2015)	18
[그림 2-6] 10억 원 미만 공공부문 실적(2015)	19
[그림 2-7] 10~30억 원 미만 공공부문 실적(2015)	19
[그림 2-8] 30~50억 원 미만 공공부문 실적(2015)	19
[그림 2-9] 10억 원 미만 건축공사 공공부문 실적(2015)	20
[그림 2-10] 10~30억 원 미만 건축공사 공공부문 실적(2015)	20
[그림 2-11] 30~50억 원 미만 건축공사 공공부문 실적(2015)	20
[그림 2-12] 특·광역시 용도별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28
[그림 2-13] 광역도 용도별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28
[그림 2-14] 공공건축 조성 관련 언론보도 주제어 분포(2014.1~2017.5)	33
[그림 2-15] 지역별 공공건축물 노후현황	39
[그림 2-16] 지역별 폐교재산 현황	39
[그림 2-17]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	39
[그림 2-18]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	39
[그림 2-19] 공공건축 유형별 조성 현황(2013년~2016년)	40
[그림 3-1] 국가건축정책의 추진체계	46
[그림 3-2] 사전검토 신청기관별 접수 비율	51
[그림 3-3]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운영 조직체계	55
[그림 3-4] 영주시 삼각지 조성계획	56
[그림 3-5] 세종시립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58
[그림 3-6] 지방자치회관 설계공모 당선작	58
[그림 3-7]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60

---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8] 공공투자사업 관리 흐름	61
[그림 3-9] 공공투자사업 실행 단계	61
[그림 3-10]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전·후의 계획단계 절차 변화	62
[그림 3-11] B/C 1.0 미만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	62
[그림 3-12]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62
[그림 3-13] 서울시 조직 및 업무현황 총괄	63
[그림 3-14]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조직도	64
[그림 3-15] 도담 어린이집(신시흥 어린이집)	66
[그림 3-16] 구로119안전센터	66
[그림 3-17] 충남연구원 조직도	67
[그림 3-18]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추진체계	69
[그림 3-19] 컨설팅 추진 단계	69
[그림 3-20] 디자인 지원 단계	69
[그림 3-21]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적용 절차	70
[그림 4-1] 커뮤니티 센터 현재 위치와 재배치가 필요한 센터 현황	76
[그림 4-2] 커뮤니티 센터의 확장(중장기 재배치 및 신설) 계획안과 서비스 범위	77
[그림 4-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구성	79
[그림 4-4] 자체 기획업무 추진체계	79
[그림 4-5]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도	82
[그림 4-6]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체계(안)	86

---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추진 과정
-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자체 공공건축의 중요성 증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공공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건축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 확충

올해 서울에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가 새로 생긴다. 서울시는 1650억 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해 1419개에서 1719개로 늘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간 시설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6400개 가운데 26%를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한다. 연말에는 동별 국공립 어린이집이 평균 4.1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동별 평균 1.5개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총총해지는 셈이다. 서울 어디에서나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아동의 걸음으로 평균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출처: 동아일보 2017.2.22. [http://news.donga.com/3/all/20170222/82999865/1\(2017.5.22.\)](http://news.donga.com/3/all/20170222/82999865/1(2017.5.22.))

※ 세종을 '책 읽는 도시'로 만든다

세종을 '책 읽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된다. 현재 6개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도서관을 8개소로 확대하고, 30개소의 작은 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지원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출처: 굿모닝충청 2017.1.16.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92\(2017.5.22.\)](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92(2017.5.22.))

특히 현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국민의 품위 있는 삶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보육·교육·안전·환

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아동·청소년·노령층을 위한 복지시설,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시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 등의 공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초래
-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필요
-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중략)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 모색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12-13

#### □ 공공건축의 균형 공급,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구 증대

공공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조성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건축 조성 시 지역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인근 지역에 유사 시설이 중복되어 건립되거나,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며, 설계와 감리·공사 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낮은 품질의 공공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 감사원 “공공도서관 지역간 불균형 심각...최대 9.4배 차이

비슷한 인구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도서관 1개당 인구 수 차이가 약 10배에 달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문체부가 자자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건립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뉴시스 2016.2.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1\\_0013890408&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1_0013890408&cID=10301&pID=10300)(2017.5.22.)

#### ※ 동네를 남루하게 만드는 공공건축

파출소, 주민센터, 우체국, 어린이집, 유치원, 어느 동네든 하나씩은 있는 공공건축물들이다. 그런데 다 똑같다. (중략) 획일적이라는 이야기다.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건물들이 찍어내듯 비슷하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다. 건물들이 들어 서면서 동네환경이 풍성해지고 좋아지기는커녕 삭막해지고 남루해지니 하는 말이다. 시민들 세금으로 건축되는 공공건축물들이 동네환경을 애롭게 하기는커녕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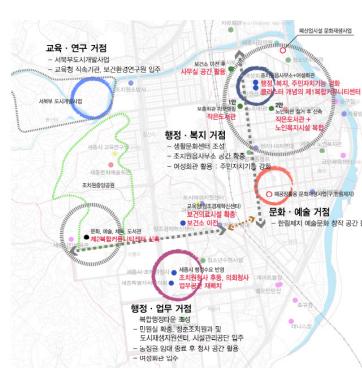
출처: 박인석(2017), 「건축이 바꾼다」, 마티, pp.91-92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공공건축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건축을 합리적으로 계획·조성·관리하기 위한 공공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나 공공건축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1-1]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마스터플랜

출처: 권영상 외(2013),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마스터플랜, p.3



[그림 1-2]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

출처: 임우경 외(2016),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 p.204

#### 지자체 차원의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움직임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요구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높은 수준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문가를 영입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등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며,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대규모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동네에 있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2014년 3월 ‘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서 완성까지 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1)<sup>1)</sup>과 세종시(2016)는 공공건축물 건립 전담기구인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하고 청사기획, 교육시설기획, 시설건축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 조성 관리·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sup>. 서울시의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2016)」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공공건축 관리·시스템 구축과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형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충청남도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2015)」에는 공공디자인센터의 장기발전 계획에 ‘공공건축 지원’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기관이나, 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 조성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2) 2016년 6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가 시행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장 등의 개정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사) 새건축사협의회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가 시·도지사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

- 공공건축 조성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분담 방안 모색 필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공공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 9월 현재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외에는 지정 사례가 없다.

2014년 이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월 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7.4건, 2015년 18.3건, 2016년 21.5건, 2017년(9월까지) 23.2건<sup>3)</sup>으로 증가하였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건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건축 조성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1~12년에 걸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동으로 수행한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 II」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도 공공건축지원 체계의 장기 발전 방안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조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3.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실천과제 3.1 '공공건축 효율화'의 세부과제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포함

실천과제	세부과제	세부단위과제
3.1 공공건축 효율화	3.1.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공공건축 사전기획업무 강화 공공건축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공건축 조성 업무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3.1.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지자체 공공건축 발주부서의 전문직 확대 건설공사 예산책정 지원체계 구축

출처: 국토교통부(2016),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37

## 2) 연구 목적

-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관리 지원 조직의 업무 목표와 방향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3) 월별 사전검토 신청 건수는 최소 6건(2014년 8월)에서 최대 39건(2017년 2월)까지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사전검토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 대체로 상반기의 접수 건수가 높게 나타난다.

지자체 공공건축 지원 조직의 업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공공건축의 합리적 조성과 관리를 위한 지자체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위의 업무 목표와 방향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업무 구성과 조직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 공공건축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방안 제시  
세 번째 목적은 기존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2. 연구 방법과 범위

### 1)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관련 계획(제1,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광역건축기본계획 등) 내용 분석
-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현황 통계자료 분석
  - 지자체 공유재산목록,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 조달정보개방포털 자료 분석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2014~16) 결과 분석
-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관리 실태조사
  -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내용 분석
  -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언론보도자료 분석
-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
  -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관리 조직 담당자 면담

- 지자체 공공건축 관리체계 마련, 행정조직, 법령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

□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TF 운영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 계획, 조직 구성안 제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업무협의회 개최

## 2) 연구 범위

□ 공공건축의 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는 공공건축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정의를 따르되, 건축물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에서는 공공건축의 개념을 공공적 가치 측면(공익성과 접근성)에서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대안(최소범위)로 한정한다.

[표 1-1] 공공건축 정의의 대안

공익성의 수준	접근성의 수준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	공간적 범위	대안
(2)+(3)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에 기여	(B)+(C)+(D)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	(a) 공공기관 소유	(가) 건축물	I (최소범위)
		(a) 공공기관 소유	(가)+(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	-
		(a) 공공기관 소유	(가)+(다) 건축물과 공공공간	-
		(a) 공공기관 소유	(가)+(나)+(다) 건축물(건축물의 일부 포함)과 공공공간	-
		(a)+(b) 공공기관 소유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	(가) 건축물	II(중간범위)
		(a)+(b) 공공기관 소유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	(가)+(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	-
		(a)+(b) 공공기관 소유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	(가)+(다) 건축물과 공공공간	-
		(a)+(b) 공공기관 소유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	(가)+(나)+(다) 건축물(건축물의 일부 포함)과 공공공간	III(최대범위)

출처: 이규철 외3인(2017), 현행 법령의 공공건축 개념 정의 검토, auribrief no.154, p.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역’ 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지역’은 「지방자치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2조 제1항에 따른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 「지방자치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관계 법령인 「건축기본법」과 국가계획인 “제1,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도 “지역건축 기본계획”,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과 같이 광역·기초 지자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건축기본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존의 용어 사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지역’ 용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 선행 연구 현황

공공건축의 합리적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건축 학계에서는 공공청사, 도서관, 소방서,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별 건축계획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소방서 등 공공시설의 적정 입지와 공급의 형평성, 서비스수준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개소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건축(public building)’을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고, 공공건축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공공건축이 도시공간의 질과 국민(주민)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면서 자체체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공건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2007년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건축 통합화, 디자인품질지표, 공공건축 조성 절차, 건축디자인기준, 시설별 계획기준, 시설 공급수준 등 공공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공공건축 연구는 크게 지역과 장소의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의 통합적 계획 연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와 관리체계 개선 연구, 개별 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계획방향 또는 디자인 기준 연구,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지표 연구, 에너지 성능과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연구로 구분된다.

[표 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행 공공건축 연구(2007~2016)

년도	연구소 자체과제(기본, 정책)	수탁과제
2007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2008	장소의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2009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연구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방안 연구(영주시)
	학교시설의 성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행정 지원방안	
	유치원의 통합적인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방향설정 연구	
	지역중심 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연구	
2010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사용자 중심 이론에 기반한 보육시설 공간환경디자인 방향설정 연구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1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방안 연구	
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	공공시설 내 한국적 실내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 정책 연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년도	연구소 자체과제(기본, 정책)	수탁과제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2014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한국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2015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국유지 유형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책방안 연구(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유지 개발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수행체계 개선 방안 연구(한국자산관리공사)
2016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기기준 합리화방안 연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조치원을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청관사 수급·관리체계와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관계분석 연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정부청사 면적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 지역 공공건축 연구 [ ]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 연구

출처: 연구진 작성

#### • 지역 공공건축 관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공건축 연구 중 광역·기초 지자체의 공공건축과 관련된 연구는 장소 가치 향상, 도시재생, 공공건축 통합화,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이다. 이를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공공건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건축에 대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 관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공건축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조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공공건축 지원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I,II(2011,12)」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센터를 설립하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 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성·관리체계 관련 연구

각 지자체와 지자체 연구원에서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제까지 연구는 서울과 충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백승만,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설계경기 방식을 확산하고,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방재성, 2015,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건축 디자인 방향 설정을 위해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공공건축 지원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전영훈, 2016,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서울시의 공공건축 관리·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기획업무의 체계적 관리·지원, 사전검토제도 운영을 위한 서울시형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 사후설계관리업무 도입, 공공건축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선행 연구와 차별성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한 공공건축 연구의 성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우선 적용,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건축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조직이 설립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이 주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환경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공공건축 관리·지원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꾸준하게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조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공공건축의 품질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지역의 공공건축 관리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I, II」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1-3] 선행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장소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저자: 조준배 외(2008) -연구목적: 지자체 공공건축 통 합화 정책방안 제시	-문헌연구 -공공건축 통합화 사례 현 황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 한 전문가 인터뷰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공공건축 현 황 조사 -통합전략 마스터플랜 제시 및 우선추진 프로젝트 시 뮬레이션	-장소가치 향상을 위한 매개로서 공공건축의 통 합화와 필요성 논의 -국내 공공건축 통합화 유형 및 운영사례 파악 -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시범계 획 수립 -공공건축 통합화를 위한 정책제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II -저자: 서수정 외(2012,2013) -연구목적: 실행력을 담보한 국 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 안 마련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연구 -국내 공공건축의 기획, 관 리, 운영 단계의 문제점 파 악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부서 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해외 관련기관 조사	-국가 차원의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및 의미 -국내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 실태 파악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지원 대상 및 범위 설정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모델 구상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 략 마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 책방안 연구 -저자: 서수정 외(2015),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연구목적: 장소중심의 공간복 지 정책 마련, 공간복지 실현 수 단으로서 공공건축 조성정책 마련	-TF 운영 -사례 및 문헌조사, 웹문서 및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 및 보건복지 전문가 및 실무자와 협업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정책 제안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 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저자: 전영훈·새로운문화를실 천하는건축사협의회(2016),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연구목적: 서울시 공공건축 관 련 행정조직체계 제안과 정비 계획 마련, 업무 역할과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국내외 유사 연구사례 내 용 분석 -국내외 유사업무 수행기관 업무분석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	-서울시 공공건축의 관리·지원 현황분석 -국내외 공공건축의 체계적 관리·지원 사례 분석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서울시 건축문화진흥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서울시 공공건축 및 문화진흥 관리·지원 총괄 체계 구축
본 연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목적: 지자체 공공건축 관 리체계 구축방향 제시, 국가·광 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방 안 제시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현 황 통계자료 분석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관 리 실태조사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TF 운영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현황 분석 -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성·관리·운영 관련 조직 및 업무 실태 조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안 제시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분담 및 협 력 체계 제안

## 4. 연구 추진 과정



[그림 1-3] 연구흐름도

---

## 제2장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과 주요 쟁점

1.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2. 지자체 공공건축의 문제
  3. 지자체 공공건축의 주요 쟁점
- 

### 1.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 1) 공공건축 일반 현황

##### ① 전체 건축물 대비 국·공유 공공건축물 현황

###### □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건축물은 185,271개 동으로 전체 건축물 7,054,734개 동 중 2.6%를 차지하며, 연면적은 195,685천㎡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 3,573,623천㎡의 5.5%를 차지한다.

[표 2-1]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소유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동수	연면적 (천㎡)	동수	연면적 (천㎡)	동수	연면적 (천㎡)	연면적 (천㎡)	
합계	6,911,288	3,355,193	6,986,912	3,437,912	7,054,734	100%	3,573,623	100%
공공	<b>172,422</b>	<b>182,545</b>	<b>176,664</b>	<b>183,595</b>	<b>185,271</b>	<b>2.6%</b>	<b>195,685</b>	<b>5.5%</b>
개인	5,531,965	1,016,357	5,557,646	1,031,238	5,636,849	79.9%	1,059,054	29.6%
법인	387,078	539,793	405,097	558,226	434,117	6.2%	608,982	17.0%
기타1)	819,823	1,616,498	847,505	1,664,853	798,497	11.3%	1,709,902	47.8%

주1) 소유주체 항목 값 오기

자료 출처: 2016년 건축통계집, p.12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의 평균 연면적은 506.5m<sup>2</sup>이며 공공건축물의 평균 연면적은 1,056.2m<sup>2</sup>, 개인건축물의 평균 연면적은 187.8m<sup>2</sup>, 법인건축물의 평균 연면적은 1,402.8m<sup>2</sup>이다. 공공건축물의 규모는 전체 건축물에 비해 약 2배이며, 개인건축물 규모의 약 5.62배에 이른다.

#### □ 공공건축물의 증가 추세

전체 건축물의 증가 추세와 비교하였을 때 공공건축물의 증가 추세는 동수와 연면적 모두 평균을 상회한다. 전체건축물은 동수에 비해 연면적의 증가율이 높으나, 공공 소유의 건축물은 연면적에 비해 동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공공건축물의 수가 지난 6년간 3.68% 늘어난 것에 비해 연면적 증가율은 2.38%에 그치는 것을 볼 때, 건축물의 규모가 점차 소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소유구분별 건축물 증가 추세

소유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6년간 평균
	동수 증가율	연면적 증가율	동수 증가율	연면적 증가율	동수 증가율	연면적 증가율	
합계	0.82%	-	0.95%	-1.52%	0.81%	1.06%	
공공	<b>8.00%</b>	-	<b>3.05%</b>	<b>1.60%</b>	<b>1.70%</b>	<b>0.59%</b>	
개인	3.45%	-	0.98%	1.93%	0.26%	1.15%	
법인	8.42%	-	4.19%	4.73%	3.25%	3.85%	
기타1)	-22.36%	-	-1.23%	-6.05%	3.28%	0.14%	
소유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동수 증가율	연면적 증가율	동수 증가율	연면적 증가율	동수 증가율	연면적 증가율	동수 증가율
합계	0.86%	2.23%	1.08%	2.41%	0.96%	3.80%	0.91% 1.59%
공공	<b>2.29%</b>	<b>2.95%</b>	<b>2.40%</b>	<b>0.57%</b>	<b>4.65%</b>	<b>6.18%</b>	<b>3.68% 2.38%</b>
개인	0.31%	0.37%	0.46%	1.44%	1.41%	2.63%	1.14% 1.50%
법인	3.97%	4.12%	4.45%	3.30%	6.68%	8.33%	5.16% 4.87%
기타1)	2.81%	2.68%	3.27%	2.90%	-6.14%	2.63%	-3.39% 0.46%

주1) 소유주체 항목 값 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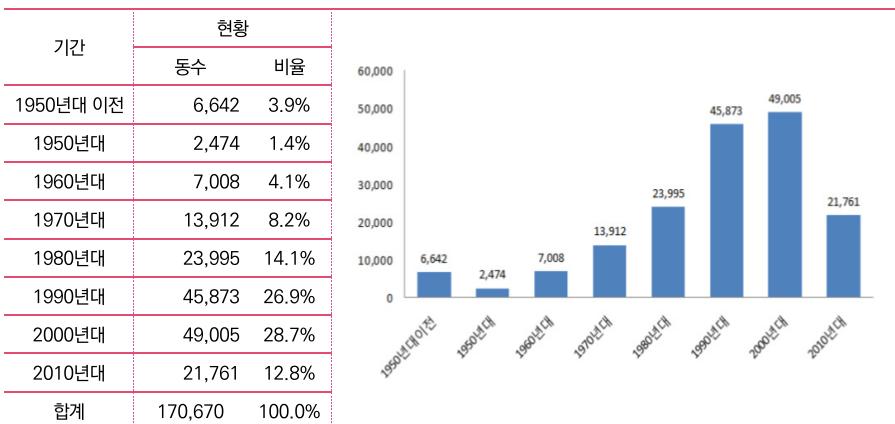
자료 출처: 2010년 ~ 2016년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② 국·공유 건축물 노후 현황

- 1990~2000년대 준공 공공건축물이 중요한 비율 차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사용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공공건축물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가장 많이 준공되었으며, 1980년대에 약 2만4천동, 1990년대에 약 4만6천동, 2000년대에는 4만9천동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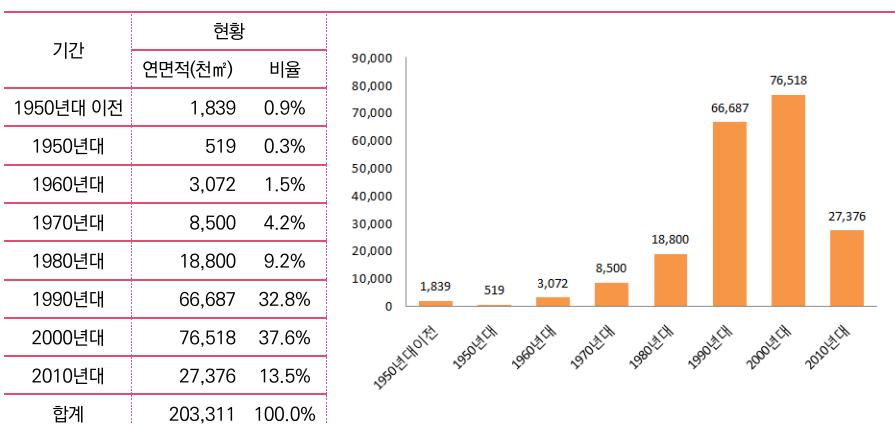
[표 2-3] 사용승인연도별 공공건축물 동수 현황



자료출처: 2015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p.34, 공공건축지원센터 재인용,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역시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약 66,687천m<sup>2</sup>, 2000년대에 76,518천m<sup>2</sup>의 공공건축물이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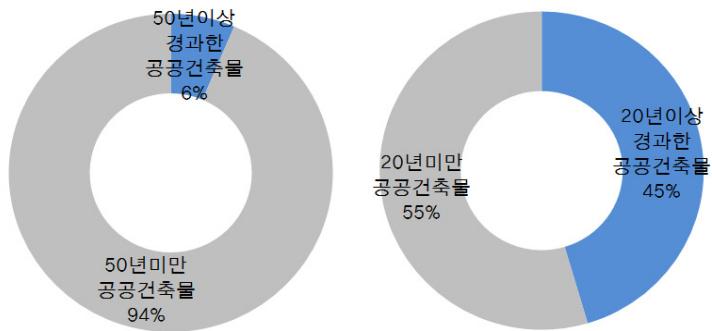
[표 2-4] 사용승인연도별 공공건축물 연면적 현황



자료출처: 2015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p.34, 공공건축지원센터 재인용,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중요성 증대

5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의 수는 10,932동으로 전체 공공건축물 수의 6.4%를 차지하며, 2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의 수는 77,519동으로 전체 공공건축물 수의 45.4%를 차지한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2-1] 50년 이상 경과 공공건축물 등수(좌), 20년 이상 경과 공공건축물 등수(우)

자료출처 : 2015,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p.35, 공공건축지원센터 재인용, 건축행정시스템 서울티

## 2)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현황

### ① 지자체 건설공사계약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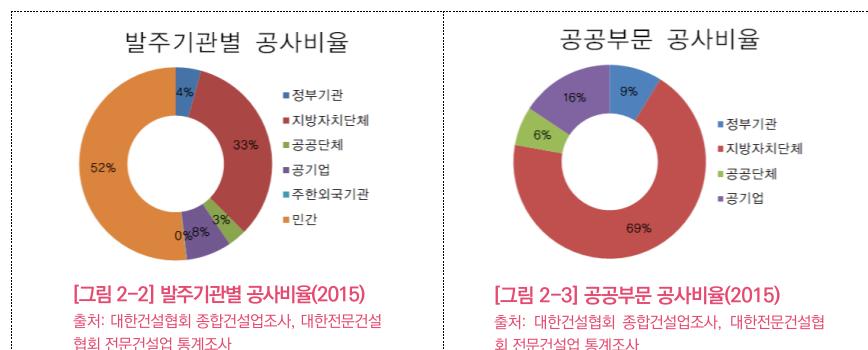
#### □ 전체 건설공사 중 지자체 발주 건수

건축, 토목, 산업설비 및 조경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계약 현황(건수, 계약액 등)을 발주기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자체 공사계약 건수가 공공부문 전체의 69%를 차지한다.[그림2-3].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기업, 주한외국기관, 민간의 2015년도 공사 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69만5천여 건의 공사 중 23만여 건(33.19%)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공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공사금액으로 비교하면 정부기관의 약 2배를 차지한다. 공공 건설공사 중 지자체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발주기관별 공사계약 실적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10억원)		건수	금액(10억원)	
합계	664,455	209,016		695,955	264,189	
정부기관	27,623	4.16%	9,198	4.40%	29,536	4.24%
지방자치단체	220,310	33.16%	21,585	10.33%	230,985	33.19%
공공단체	20,392	3.07%	9,485	4.54%	21,769	3.13%
공기업	51,095	7.69%	23,964	11.47%	52,575	7.55%
주한외국기관	834	0.13%	438	0.21%	701	0.10%
민간	344,201	51.80%	144,342	69.06%	360,389	51.78%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자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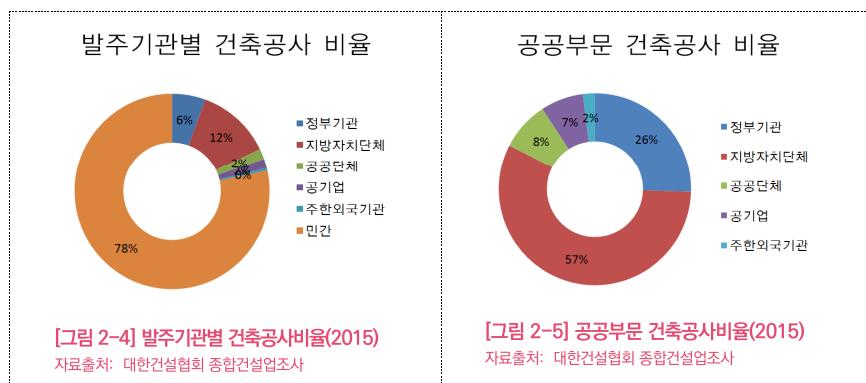
## □ 건축공사 중 지자체 발주 건수

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업 분야 중 토목과 산업설비, 조경을 제외한 건축공사 부문에 대한 공사계약 현황(건수, 계약액 등)을 발주기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자체 공사계약 건수가 공공부문 전체의 57%를 차지한다.[그림2-6].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기업, 주한외국기관, 민간의 2015년도 공사 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4만6천여 건의 공사 중 5천 7백여 건(12.35%)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보다는 건수 비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민간 부문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공사금액으로 비교하면 정부기관의 약 1.77배를 차지한다. 민간 부문의 건축공사 비율이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의 건축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표 2-6] 발주기관별 건축공사계약 실적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10억원)		건수	금액(10억원)		건수	금액(10억원)
합계	49,593	104,932.0		46,183	138,792.5			
정부기관	3,253	6.56%	3,168.9	3.02%	2,549	5.52%	2,599.6	1.87%
<b>지방자치단체</b>	<b>7,581</b>	<b>15.29%</b>	<b>4,358.2</b>	<b>4.15%</b>	<b>5,702</b>	<b>12.35%</b>	<b>4,602.9</b>	<b>3.32%</b>
공공단체	992	2.00%	1,990.4	1.90%	828	1.79%	1,385.5	1.00%
공기업	804	1.62%	6,889.4	6.57%	714	1.55%	6,359.2	4.58%
주한외국기관	320	0.65%	253.4	0.24%	203	0.44%	120.4	0.09%
민간	36,643	73.89%	88,271.5	84.12%	36,187	78.36%	123,724.6	89.14%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http://kosis.kr>



## ② 지자체 건설공사의 규모

### □ 공사규모별 공사계약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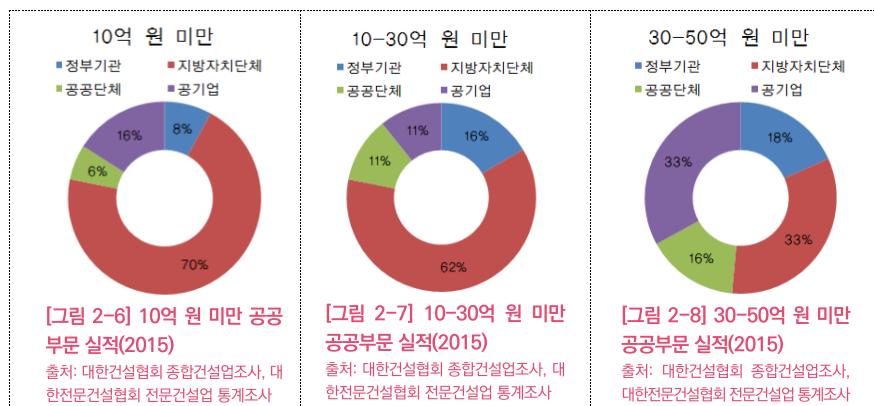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2015년도 공사규모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00억 원 미만의 공사가 공공부문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3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지자체의 공사 비중이 다른 공공 발주기관보다 4배~10배가량 많으며, 30억 원~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지자체의 공사 비중이 다른 공공 발주기관보다 1.2배~2배가량 크다. 이와 반대로 공기업은 공사규모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비중이 높으며, 민간부문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88.2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공사규모별 공사계약 실적 현황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합계

금액	10억원 미만		10~30억원 미만		3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200억원 미만		200~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	(%)
합계	608,315	100%	76,289	100%	4,829	100%	4,223	100%	985	100%	695	100%	619	100%
정부기관	23,851	3.92%	5,075	6.65%	296	6.13%	223	5.28%	68	6.90%	19	2.73%	4	0.65%
<b>지자체</b>	<b>211,139</b>	<b>34.71%</b>	<b>18,896</b>	<b>24.77%</b>	<b>537</b>	<b>11.12%</b>	<b>343</b>	<b>8.12%</b>	<b>51</b>	<b>5.18%</b>	<b>13</b>	<b>1.87%</b>	<b>6</b>	<b>0.97%</b>
공공단체	17,734	2.92%	3,445	4.52%	252	5.22%	247	5.85%	48	4.87%	33	4.75%	10	1.62%
공기업	47,918	7.88%	3,289	4.31%	534	11.06%	517	12.24%	154	15.63%	111	15.97%	52	8.40%
외국기관	379	0.06%	314	0.41%	5	0.10%	2	0.05%	0	0.00%	0	0.00%	1	0.16%
민간	307,294	50.52%	45,270	59.34%	3,205	66.37%	2,891	68.46%	664	67.41%	519	74.68%	546	88.21%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http://kosis.kr>

공공부문의 공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70%, 10억 원~3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62%, 30억 원~5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33%, 50억 원~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26%의 실적을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다.



## □ 건축공사 규모별 공사계약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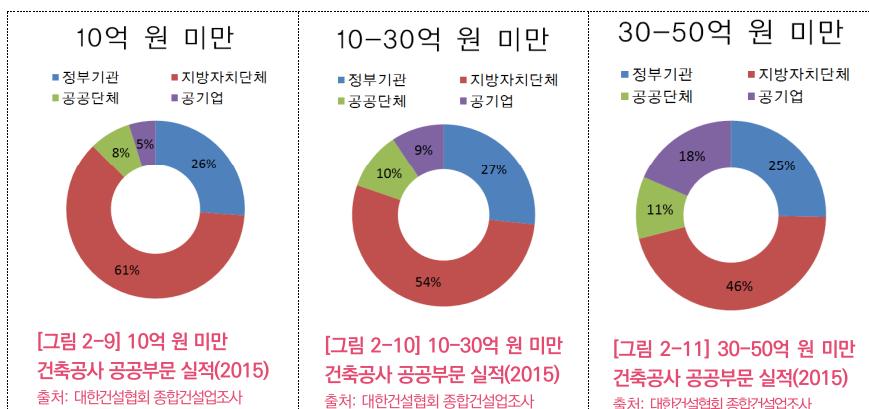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업 분야 중 토목과 산업설비, 조경을 제외한 건축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기관의 2015년도 공사규모별 실적을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공사에서 민간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를 제외하면 지자체의 경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합산 현황과 유사하게 100억 원 미만의 공사가 공공부문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3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지자체의 공사 비중이 다른 공공 발주기관보다 2배~12.7배 가량 많으며, 30억 원~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지자체의 공사 비중이 다른 공공 발주기관보다 1.6배~4.3배 가량 크다.

[표 2-8] 공사규모별 건축공사계약 실적 현황

금액	10억원 미만		10~30억원 미만		3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200억원 미만		200~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	(%)
합계	33,542	100%	7,486	100%	1,916	100%	1,547	100%	653	100%	495	100%	544	100%
정부기관	2,002	5.97%	338	4.52%	96	5.01%	71	4.59%	32	4.90%	10	2.02%	0	0.00%
지자체	4,710	14.04%	678	9.06%	173	9.03%	119	7.69%	16	2.45%	4	0.81%	2	0.37%
공공단체	578	1.72%	132	1.76%	40	2.09%	51	3.30%	19	2.91%	7	1.41%	1	0.18%
공기업	369	1.10%	118	1.58%	70	3.65%	51	3.30%	38	5.82%	30	6.06%	38	6.99%
외국기관	188	0.56%	13	0.17%	1	0.05%	0	0.00%	0	0.00%	0	0.00%	1	0.18%
민간	25,695	76.61%	6,207	82.91%	1,536	80.17%	1,255	81.12%	548	83.92%	444	88.70%	502	92.28%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http://kosis.kr>

공공부문의 건축공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61%, 10억 원~3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54%, 30억 원~5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46%, 50억 원~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41%의 실적을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다.



□ 광역·기초 지자체 발주 건축설계용역 계약금액 비교(전체)

조달청의 조달정보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2015~6년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역시·도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2015년도 11.2%, 2016년도 10.8%를 차지한다. 사업별 평균금액은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광역시·도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사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세부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5천만 원 미만의 사업이 광역시·도 본청의 경우 74.2~77.1%를 차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84.8~86.8%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5천만원 미만의 사업이다. 2.1억 원 이상의 사업은 광역시·도 본청은 8.5~10.1%를 차지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5%~4.2%에 그친다.

[표 2-9] 광역시·도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광역시도 본청	427	144,502,503	165	38.6%	152	35.6%	41	9.6%	26	6.1%	43	10.1%
기초자치 단체	3385	42,919,492	1579	46.6%	1361	40.2%	208	6.1%	120	3.5%	117	3.5%
합계	3812	54,298,281										
2016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494	90,231,075	167	33.8%	214	43.3%	41	8.3%	28	5.7%
기초자치 단체	4048	45,327,254	1712	42.3%	1721	42.5%	274	6.8%	178	4.4%	170	4.2%
합계	4542	50,211,113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특·광역시의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 현황

• 2015년

특·광역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2015년 기준), 인천광역시(13.3억 원), 서울특별시(7천5백만 원), 부산광역시(4천8백만 원) 순으로 평균 계약금액이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계약금액이 작은 광역·특별자치시는 울산광역시(3백

만원), 대전광역시(3천1백만 원), 광주광역시(4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1억 원 이상의 사업 비율이 높은 광역·특별자치시는 인천광역시(44.4%), 서울특별시(25.8%), 부산광역시(20.7%)순이며 반대로 대구광역시는 2015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

[표 2-10] 특·광역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특별시	66	374,058,415	16	24.2%	22	33.3%	5	7.6%	6	9.1%	17	25.8%
기초	417	28,121,063	207	49.6%	170	40.8%	18	4.3%	13	3.1%	9	2.2%
소계	483	75,392,006										
부산광역시	29	178,178,308	5	17.2%	13	44.8%	4	13.8%	1	3.4%	6	20.7%
기초	178	27,133,497	85	47.8%	75	42.1%	6	3.4%	8	4.5%	4	2.2%
소계	207	48,294,364										
대전광역시	20	58,160,332	6	30.0%	9	45.0%	2	10.0%	2	10.0%	1	5.0%
기초	48	20,439,558	33	68.8%	11	22.9%	2	4.2%	0	0.0%	2	4.2%
총합계	68	31,533,903										
인천광역시	9	1,316,705,538	0	0.0%	3	33.3%	1	11.1%	1	11.1%	4	44.4%
기초	109	36,114,858	46	42.2%	42	38.5%	10	9.2%	7	6.4%	4	3.7%
총합계	118	133,787,028										
대구광역시	25	38,612,644	12	48.0%	7	28.0%	2	8.0%	4	16.0%	0	0.0%
기초	65	47,363,330	15	23.1%	33	50.8%	10	15.4%	4	6.2%	3	4.6%
소계	90	44,932,584										
광주광역시	22	73,035,867	9	40.9%	9	40.9%	2	9.1%	0	0.0%	2	9.1%
기초	30	16,671,769	15	50.0%	14	46.7%	1	3.3%	0	0.0%	0	0.0%
소계	52	40,518,118										
울산광역시	6	14,968,405	2	33.3%	0	0.0%	2	33.3%	1	16.7%	1	16.7%
기초	26	24,592,155	10	38.5%	5	19.2%	4	15.4%	5	19.2%	2	7.7%
소계	32	3,039,762										
세종특별자치시	41	44,542,963	15	36.6%	23	56.1%	0	0.0%	2	4.9%	1	2.4%
소계	41	44,542,963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 2016년

울산광역시(2.1억 원), 대구광역시(6천7백만 원), 세종특별자치시(6천3백만 원) 순으로 평균 계약금액이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계약금액이 작은 광역·특별자치시는 인천광역시(2천4백만 원), 대전광역시(2천5백만 원), 광주광역시(3천3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1억 원 이상의 사업비율이 높은 광역·특별자치시는 울산광역시(38.5%), 서울특별시

(15.1%), 대구광역시(13.5%)순이며 반대로 인천광역시는 2016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

[표 2-11] 특·광역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특별시	93	163,513,039	15	16.1%	52	55.9%	8	8.6%	4	4.3%	14	15.1%
기초	525	44,819,076	216	41.1%	232	44.2%	38	7.2%	19	3.6%	20	3.8%
소계	618	62,680,789										
부산광역시	24	56,619,792	3	12.5%	12	50.0%	6	25.0%	2	8.3%	1	4.2%
기초	205	34,709,566	80	39.0%	97	47.3%	10	4.9%	11	5.4%	7	3.4%
소계	229	37,005,835										
대전광역시	22	50,831,000	11	50.0%	6	27.3%	3	13.6%	1	4.5%	1	4.5%
기초	68	17,935,277	53	77.9%	13	19.1%	0	0.0%	0	0.0%	2	2.9%
총합계	90	25,976,453										
인천광역시	17	32,946,133	5	29.4%	10	58.8%	0	0.0%	2	11.8%	0	0.0%
기초	152	23,223,092	73	48.0%	64	42.1%	9	5.9%	4	2.6%	2	1.3%
총합계	169	24,201,149										
대구광역시	37	125,206,671	12	32.4%	15	40.5%	4	10.8%	1	2.7%	5	13.5%
기초	71	38,066,237	19	26.8%	35	49.3%	9	12.7%	7	9.9%	1	1.4%
소계	108	67,919,904										
광주광역시	16	48,840,022	7	43.8%	3	18.8%	3	18.8%	2	12.5%	1	6.3%
기초	50	28,820,849	22	44.0%	20	40.0%	6	12.0%	1	2.0%	1	2.0%
소계	66	33,673,982										
울산광역시	13	504,896,341	2	15.4%	5	38.5%	0	0.0%	1	7.7%	5	38.5%
기초	30	86,848,927	4	13.3%	8	26.7%	10	33.3%	4	13.3%	4	13.3%
소계	43	213,235,354										
세종특별자치시	47	63,685,334	16	34.0%	24	51.1%	3	6.4%	0	0.0%	4	8.5%
소계	47	63,685,33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 광역도의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 현황

##### • 2015년

경상북도(1.1억 원), 경기도(1.1억 원), 충청북도(5천1백만 원) 순으로 평균 계약금액이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계약금액이 작은 광역도는 경상남도(2천2백만 원), 전라남도(2천9백만 원), 충청남도(3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1억 원 이상의 사업의 개수가 많은 광역도

는 경기도(4건), 경상북도(3건) 순이며, 특·광역시에 비해 사업별 평균금액과 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광역도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강원도	6	58,269,500	3	50.0%	2	33.3%	0	0.0%	0	0.0%	1	16.7%
기초	471	30,444,971	224	47.6%	203	43.1%	30	6.4%	6	1.3%	8	1.7%
소계	477	30,794,965										
경기도	29	223,604,763	14	48.3%	10	34.5%	1	3.4%	0	0.0%	4	13.8%
기초	372	103,838,503	131	35.2%	165	44.4%	25	6.7%	13	3.5%	38	10.2%
소계	401	112,499,903										
경상남도	22	28,204,245	9	40.9%	11	50.0%	0	0.0%	2	9.1%	0	0.0%
기초	332	21,896,635	169	50.9%	137	41.3%	15	4.5%	7	2.1%	4	1.2%
소계	354	22,288,634										
경상북도	21	112,561,895	3	14.3%	6	28.6%	7	33.3%	2	9.5%	3	14.3%
기초	186	116,415,338	49	26.3%	86	46.2%	18	9.7%	16	8.6%	17	9.1%
소계	207	116,024,409										
전라남도	27	22,465,844	17	63.0%	6	22.2%	2	7.4%	2	7.4%	0	0.0%
기초	278	30,570,397	124	44.6%	118	42.4%	17	6.1%	11	4.0%	8	2.9%
소계	305	29,852,944										
전라북도	17	17,436,353	7	41.2%	8	47.1%	2	11.8%	0	0.0%	0	0.0%
기초	241	33,189,366	120	49.8%	84	34.9%	19	7.9%	12	5.0%	6	2.5%
소계	258	32,151,376										
제주특별 자치도	38	31,337,713	16	42.1%	13	34.2%	7	18.4%	2	5.3%	0	0.0%
기초	83	19,823,573	48	57.8%	26	31.3%	6	7.2%	3	3.6%	0	0.0%
소계	121	23,439,584										
충청남도	25	42,297,973	16	64.0%	5	20.0%	1	4.0%	1	4.0%	2	8.0%
기초	391	29,594,058	234	59.8%	123	31.5%	19	4.9%	9	2.3%	6	1.5%
소계	416	30,357,515										
충청북도	24	57,336,765	15	62.5%	5	20.8%	3	12.5%	0	0.0%	1	4.2%
기초	158	50,545,379	69	43.7%	69	43.7%	8	5.1%	6	3.8%	6	3.8%
소계	182	51,440,946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 2016년

경상북도(8천7백만 원), 경기도(7천6백만 원), 충청북도(5천8백만 원) 순으로 평균 계약

금액이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계약금액이 작은 광역도는 충청남도(2천9백만 원), 강원도(3천1백만 원), 경상남도(3천1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1억 원 이상의 사업은 경기도(3건)와 충청남도(3건)을 제외하고 1건 혹은 0건의 광역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표 2-13] 광역도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기관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강원도	13	50,848,535	8	61.5%	3	23.1%	1	7.7%	0	0.0%	1	7.7%
기초	454	30,792,240	177	39.0%	228	50.2%	21	4.6%	17	3.7%	11	2.4%
소계	467	31,350,553										
경기도	37	64,334,767	10	27.0%	19	51.4%	1	2.7%	2	5.4%	3	8.1%
기초	569	77,615,019	175	30.8%	278	48.9%	40	7.0%	32	5.6%	51	9.0%
소계	606	76,804,179										
경상남도	43	25,662,933	27	62.8%	11	25.6%	2	4.7%	3	7.0%	0	0.0%
기초	362	32,678,386	191	52.8%	133	36.7%	19	5.2%	9	2.5%	10	2.8%
소계	405	31,933,536										
경상북도	17	101,331,778	2	11.8%	9	52.9%	1	5.9%	4	23.5%	1	5.9%
기초	242	86,594,241	81	33.5%	106	43.8%	25	10.3%	12	5.0%	18	7.4%
소계	259	87,561,570										
전라남도	23	22,761,437	15	65.2%	6	26.1%	1	4.3%	0	0.0%	1	4.3%
기초	354	44,126,590	125	35.3%	162	45.8%	37	10.5%	17	4.8%	13	3.7%
소계	377	42,823,146										
전라북도	15	92,009,233	3	20.0%	8	53.3%	2	13.3%	1	6.7%	1	6.7%
기초	250	31,628,086	131	52.4%	83	33.2%	14	5.6%	16	6.4%	6	2.4%
소계	265	35,045,887										
제주특별 자치도	29	47,589,946	8	27.6%	14	48.3%	3	10.3%	3	10.3%	1	3.4%
기초	86	40,168,057	28	32.6%	41	47.7%	6	7.0%	10	11.6%	1	1.2%
소계	115	42,039,663										
충청남도	24	76,901,310	8	33.3%	9	37.5%	3	12.5%	1	4.2%	3	12.5%
기초	454	26,653,632	261	57.5%	154	33.9%	17	3.7%	10	2.2%	12	2.6%
소계	478	29,176,528										
충청북도	24	15,095,497	15	62.5%	8	33.3%	0	0.0%	1	4.2%	0	0.0%
기초	176	64,372,071	76	43.2%	67	38.1%	13	7.4%	9	5.1%	11	6.3%
소계	200	58,458,882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3)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의 유형과 분포

#### ① 지자체 공공건축물의 유형

##### □ 지자체 공공건축 사업 유형 분석

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문화·체육 정책 중 대다수는 공공건축을 통해 실현된다.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공공건축물 관련 투자사업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일반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지자체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청사와 문화시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은 일반 투자사업에 포함된다.

[표 2-14]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구분

구분	정 의	범 위
일반투자 사업	세출예산서의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사업을 포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
행사성 사업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	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공연·축제·문화행사, 각종기념행사,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시설물·구조물을 등을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
홍보관 사업	자자단체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의 75%이상을 차지하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함.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
지방자치 단체청사 신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대 시설	복합시설물인 경우 청사가 연면적이 25%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 범위에서 제외
문화·체육시설 신축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이 해당함(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은 제외)	사업 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포함된 복합 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연면적이 75%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20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중 공공건축물 사업 현황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사업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의 13개 분야 52개 부문의 가능분류를 살펴본 결과, 13개 분야 모두 공공건축물 조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52개 부문 중에서는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부문이 공공건축물 조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표 2-15]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 관련 부문

분야	부문 명칭	부문 명칭	부문 명칭
010 일반공공행정(4)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소방
050 교육(3)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5)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70 환경보호(6)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8)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 일반	
090 보건(2)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100 농림해양수산(3)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110 산업중소기업(6)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5)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3)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1)	161 예비비		
90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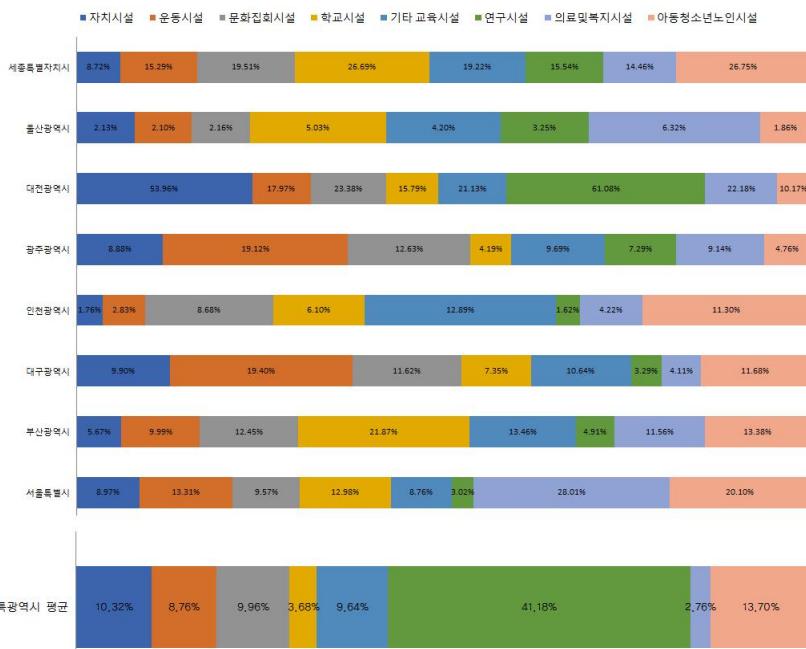
자료출처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 □ 지자체 건축물 유형별 조성 현황

##### • 광역시·도 공공건축물 조성현황(2013년~2016년 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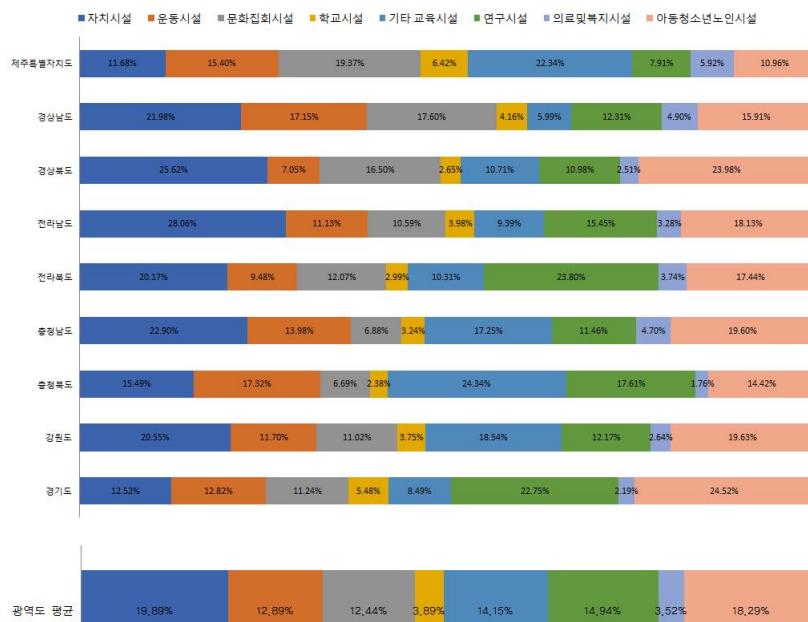
특·광역시의 경우는 운동시설, 문화집회시설, 학교시설, 의료 및 복지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광역시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자치시설이 10.32%, 운동시설이 8.76%, 문화집회시설이 9.96%, 학교시설이 3.68%, 기타 교육시설이 9.64%, 연구시설이 41.18%, 의료 및 복지시설이 2.76%, 아동청소년노인시설이 13.70%를 차지한다.

광역도의 경우 자치시설, 운동시설, 연구시설, 아동청소년노인시설의 비중이 크다. 자치 시설이 19.89%, 운동시설이 12.89%, 문화집회시설이 12.44%, 학교시설이 3.89%, 기타 교육시설이 14.15%, 연구시설이 14.94%, 의료 및 복지시설이 3.52%, 아동청소년노인시설이 18.29%를 차지한다.



[그림 2-12] 특·광역시 용도별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세움터 DB



[그림 2-13] 광역도 용도별 공공건축물 조성현황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세움터 DB

• 서울시 공공건축물 조성현황(2014년~2016년)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에서 조성하는 공공건축사업의 행위 유형은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청과 자치구별 행위 유형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에서 조성하는 건축물 유형은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 본청은 업무시설의 비율 40.9%로 매우 높으며 문화집회시설(13.8%)과 공원시설(9.5%) 순으로 많이 조성하고 있는 반면, 자치구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자치시설(24.2%), 복지시설(20.6%), 교육시설(1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6]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축사업 행위유형 현황

행위유형	2014년(건수)			2015년(건수)			2016년(건수)			합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비율	자치구	비율
신축	31	97	128	31	170	201	27	149	176	89	38.4%	505	36.4%
개보수	23	91	114	22	96	118	41	264	305	86	37.1%	537	38.7%
기본계획	5	9	14	11	10	21	3	7	10	19	8.2%	45	3.2%
리모델링	6	37	43	8	60	68	15	89	104	29	12.5%	215	15.5%
인테리어	1	12	13	0	8	8	0	3	3	1	0.4%	24	1.7%
증축	3	12	15	4	10	14	1	31	32	8	3.4%	61	4.4%
소계	69	258	327	76	354	430	87	543	630	232		1387	

자료출처: 서울시 계약마당 DB

[표 2-17]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축사업 건축물유형 현황

건축물유형	2014년(건수)			2015년(건수)			2016년(건수)			합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비율	자치구	비율
공동주택	4	9	13	0	8	8	1	1	2	5	2.2%	18	1.6%
공원	9	12	21	10	12	22	3	4	7	22	9.5%	28	2.4%
교육시설	8	80	88	4	20	24	6	22	28	18	7.8%	122	10.6%
도시설계	2	7	9	3	8	11	3	7	10	8	3.4%	22	1.9%
문화재	6	30	36	2	26	28	6	33	39	14	6.0%	89	7.7%
문화집회시설	5	14	19	9	26	35	18	21	39	32	13.8%	61	5.3%
복지시설	2	9	11	2	96	98	1	133	134	5	2.2%	238	20.6%
복합시설	0	4	4	2	1	3	4	19	23	6	2.6%	24	2.1%
업무시설	26	54	80	36	40	76	33	34	67	95	40.9%	128	11.1%
연구시설	1	0	1	0	1	1	1	0	1	2	0.9%	1	0.1%
운동시설	4	2	6	4	13	17	2	33	35	10	4.3%	48	4.2%
의료시설	1	3	4	1	7	8	2	14	16	4	1.7%	24	2.1%
자치시설	1	15	16	1	74	75	3	191	194	5	2.2%	280	24.2%

건축물유형	2014년(건수)			2015년(건수)			2016년(건수)			합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서울시	비율	자치구	비율
주차장	0	4	4	0	7	7	1	13	14	1	0.4%	24	2.1%
창고시설	0	1	1	2	0	2	0	0	0	2	0.9%	1	0.1%
판매시설	0	14	14	0	15	15	3	18	21	3	1.3%	47	4.1%
총합계	69	258	327	76	354	430	87	543	630	232		1155	

자료출처: 서울시 계약마당 DB

• 경기도 공공건축물 조성현황(2015년~2017년 6월까지)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조성하는 공공건축사업의 행위 유형은 신축(49.3%), 개보수(23.3%), 증축(15.8%), 리모델링(11.8%)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시(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건축사업의 행위 유형은 개보수(62.9%)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신축(18.9%)과 증축(17.4%)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조성하는 건축물 유형은 업무시설(53.7%), 의료시설(19.2%), 교육시설(8.4%) 등으로 업무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건축물 유형은 교육시설(77.3%), 운동시설(6.8%), 공원(6.8%) 등으로 교육시설이 다수를 차지한다.

[표 2-18]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공공건축사업 행위유형 현황

행위유형	2015년(건수)	2016년(건수)	2017년(건수)	소계(건)	비율
신축	44	19	37	100	<b>49.3%</b>
개보수	8	28	11	47	23.2%
리모델링	6	12	6	24	11.8%
증축	11	13	8	32	15.8%
소계	69	72	62	203	100.0%

자료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DB

[표 2-19] 경기도 수원시 공공건축사업 행위유형 현황

행위유형	2015년(건수)	2016년(건수)	소계(건)	비율
신축	12	13	25	18.9%
개보수	52	31	83	<b>62.9%</b>
리모델링	0	1	1	0.8%
증축	13	10	23	17.4%
소계	77	55	132	100.0%

자료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DB

[표 2-20]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공공건축사업 건축물유형 현황

행위유형	2015년(건수)	2016년(건수)	2017 (6월까지 건수)	소계(건)	비율
공동주택	0	1	1	2	1.0%
공원	0	0	1	1	0.5%
교육시설	5	8	4	17	8.4%
도시설계	0	0	2	2	1.0%
문화재	0	0	1	1	0.5%
문화집회시설	1	4	0	5	2.5%
복지시설	0	1	0	1	0.5%
복합시설	3	1	2	6	3.0%
업무시설	44	34	31	109	53.7%
의료시설	11	14	14	39	19.2%
연구시설	0	3	0	3	1.5%
자치시설	3	3	2	8	3.9%
주차장	1	0	1	2	1.0%
창고시설	1	3	2	6	3.0%
판매시설	0	0	1	1	0.5%
소계	69	72	62	203	100%

자료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DB

[표 2-21] 경기도 수원시 공공건축사업 건축물유형 현황

행위유형	2015년(건수)	2016년(건수)	소계(건)	비율
공원	5	4	9	6.8%
교육시설	62	40	102	77.3%
도시설계	5	4	9	1.5%
문화재		2	2	0.8%
문화집회시설	1		1	3.0%
복지시설		1	1	2.3%
업무시설	1		1	0.8%
운동시설	1	3	4	6.8%
주차장	2	1	3	0.8%
소계	77	55	132	

자료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DB

### ③ 지자체 공공건축물의 분포

#### □ 공공건축물은 지자체 전역에 분포 : 삶의 장소와 인접

- 지자체 내 공공건축 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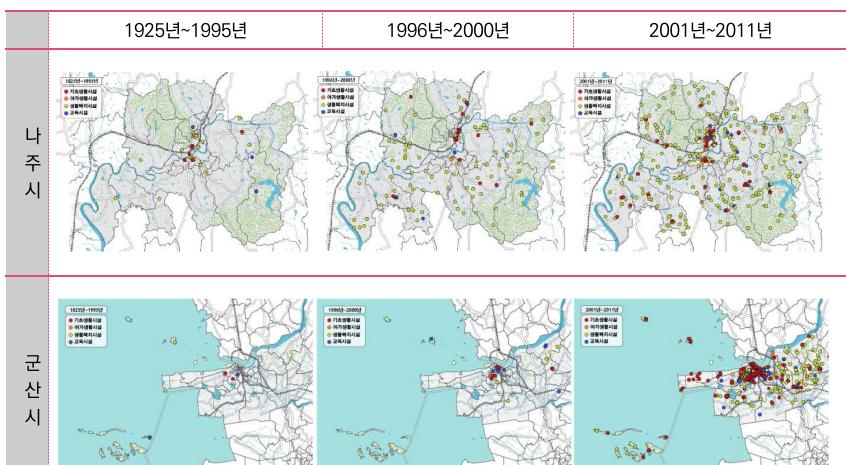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시가지 또는 주거지역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장소와 인접한 위치에 조성되며, 일상생활공간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차주영 외(2011;100,164)의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 내 공공건축의 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의 조성은 도시 산업구조 변화와 도심확장과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며 형성된다고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공공건축물의 양적 분포를 살펴보면, 도심과 읍면지역, 구시기자와 신시가지사이에 편차는 있으나 도시 지역 단위로는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주영 외, 2011;101).

- 시기별 공공건축 조성 과정 사례

- 나주시는 95년 이전까지 구도심인 읍성지역과 영산포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시설 및 생활복지시설이 조성됨.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구도심에 기초생활시설이 중점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도농통합시로 통합되면서 읍면지역에 생활복지시설이 고르게 분포되기 시작함. 2001년 이후에는 신시가지인 송월동을 포함하여 영산포 지역까지 집중적으로 조성됨. 읍면지역 간선도로 주변으로 생활복지시설이 많이 밀집됨
- 군산시는 해방 이후 도심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나 95년 이전에는 군산항 주변 구도심에만 일부 기초생활시설과 교육시설과 같은 일부 공공시설이 조성됨.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유형별로 고르게 조성됨. 2001년 이후에는 산업단지와 도심, 읍면지역별로 다른 유형의 공공시설이 조성됨

[표 2-22] 지방자치단체 시기별 공공건축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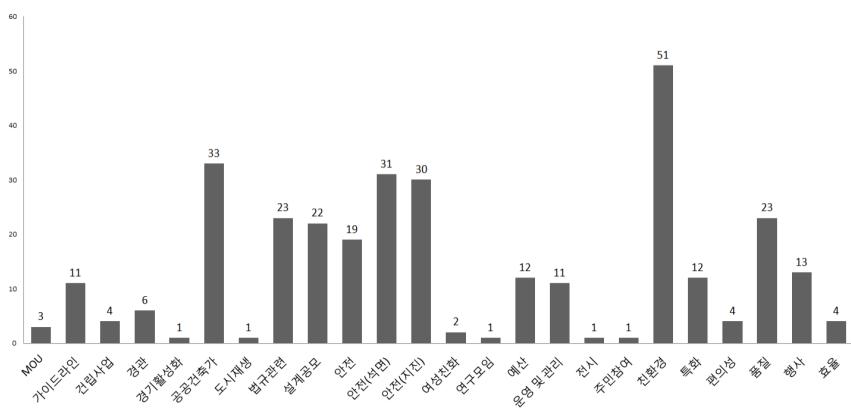
출처: 차주영 외(2011),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p.100, p.164 재편집

## 2. 지자체 공공건축의 문제

### 1) 공공건축 조성관련 주요 논점 도출

#### □ 최근 키워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최근의 지자체 공공건축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공공건축'을 검색어로 언론보도 319건을 분석<sup>4)</sup>하여, 지자체 공공건축의 주요 논의 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림 2-14] 공공건축 조성 관련 언론보도 주제어 분포(2014.1~2017.5)

출처: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안전

319건의 언론보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진, 석면, 범죄, 침수, 공사 등 공공건축의 안전 문제이다. 특히 경주 지진 등 국내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공공건축의 내진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사 결과, 석면 함유 공공건축물의 비율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보도가 많았다.

#### •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안전에 이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친환경 주제이다. 에너지 효율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공건축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제로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중구와 경상남도 등은 공공건축물의 옥상 녹화를 추진하고 있다.

4) 2017년 3월 기준으로 최근 기사부터 분석 진행 중이며, 조사 완료 후 주제어 조정 예정

-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

공공건축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준이 향상되고 「건축기본법」시행으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활용,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 조성, 공공건축 특화 등 공공건축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지자체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 □ 주요 의견 구분 항목

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주요 의견 항목을 [표2- 23] 과 같이 정합성, 타당성, 수요, 규모, 스페이스프로그램, 입지, 부지, 배치, 예산, 발주방식, 일정, 인증허가, 운영계획, 사업관리, 설계방향, 관련계획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2-2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주요 의견 구분

구분	주요내용
정합성	정부정책 및 상위법률과의 부합성, 지역사회 요구
타당성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객관성 및 구체성
수요	수요추정(설문조사 등), 시설증복(관내 유사시설과 차별화), 향후 변화예측(변경 가능성)
규모	층수, 높이, 면적, 리모델링 사업범위
스페이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완·확정, 프로그램 별 세부면적, 실별 건축조건 구체화
입지	부지 적정성, 사업부지 확정, 접근성 등
부지	토지이용계획, 지상 및 지하 매설 현황, 부지규모, 지역지구, 계획구역, 문화재, 경관계획, 자구 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 도로 및 교통, 차량 진입 가능성, 주변시설(인접부지)과의 관계
배치	부지 내 외부공간 활용, 시설(동) 배치 방향, 증축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예산	재원조달 가능성, 전체 예산규모,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발주방식	설계, 시공
일정	사업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공모기간 등
인증허가	건축성능 달성(인증, 설계기준), 구조안전진단 등
운영계획	시설운영 전략, 유지 및 운영방안
사업관리	전담팀, 부서간 협력,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적인 사업관리, 감리, 안전확보, 민원대처
설계방향	외관, 동선, 공용면적비율 및 주안점 설정, 설계지침서 검토 등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스터플랜 수립

자료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자체에서 신청한 184건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를 분석하였다. 1순위 의견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부지(17.3%), 설계방향(13.9%), 수요(11%)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의견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부지(19.1%), 배치(11.6%), 스페이스프로그램(9.8%), 설계방향(9.8%),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 의견은 설계방향(15.2%), 수요(12.9%), 스페이스 프로그램(12.9%), 예산(12.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견으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을 종합하면 부지, 설계방향, 수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며, 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성에 있어서 지원 및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24] 지자체의 공공건축 주요의견 현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타당성	6	3.5%	2	1.2%	0
수요	<b>19</b>	<b>11.0%</b>	10	5.8%	<b>22</b>
규모	4	2.3%	5	2.9%	8
스페이스 프로그램	11	6.4%	<b>17</b>	<b>9.8%</b>	<b>22</b>
입지	14	8.1%	11	6.4%	5
부지	<b>30</b>	<b>17.3%</b>	<b>33</b>	<b>19.1%</b>	15
배치	12	6.9%	<b>20</b>	<b>11.6%</b>	13
예산	8	4.6%	16	9.2%	<b>21</b>
발주방식	11	6.4%	4	2.3%	4
일정	6	3.5%	12	6.9%	16
인증허가	0	0.0%	4	2.3%	2
운영계획	6	3.5%	6	3.5%	5
사업관리	10	5.8%	8	4.6%	6
설계방향	<b>24</b>	<b>13.9%</b>	<b>17</b>	<b>9.8%</b>	<b>26</b>
관련계획	12	6.9%	8	4.6%	6

자료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 3) 지자체의 공공건축의 문제점<sup>5)</sup>

#### □ 사업계획

- 기본계획 수립 부재

공공건축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 수요, 규모, 스페이스 프로그램, 입지선정, 기본계획, 시설운영, 비용편익분석 등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

5)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11-114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과 공공기관 발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촉박한 사업 일정 계획

공공건축 조성에 있어서 사전 기획, 설계공모,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 등을 위한 적정 기간을 확보해야 하나, 예산 집행, 준공 일정,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무리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기획 및 사용자 의견수렴이 부실한 경우, 향후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과도한 설계 변경과 공사 변경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및 결과에 장애요인이 된다. 특히 기존 시설의 증개축 사업의 경우 설계 발주 전에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도면화 작업을 통해 면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부적절한 입지 선정

학교시설과 공공청사의 경우 시설 규모에 비해 협소한 부지에 조성되는 사례가 많다. 급경사 또는 암반지대로 지형 조건이 불리한 경우도 있고, 보행과 차량 접근이 어렵고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지에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는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 단계에서 보행과 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도로체계를 정비·개선하고 부지 여건에 맞춰 건물의 진출입구 위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 미흡한 수요 예측 및 시설규모 산정

사업 기획 시점의 정원을 기준으로 건축물 규모를 산정할 경우 향후 인원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고 임기응변적으로 증축 또는 시설 이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향후 시설의 운영시기 또는 중장기적인 인원 증원 계획을 반영하여 시설면적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수요 대상 인구 수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시설 공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 및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고 지역 특화에 대한 전략 및 프로그램 고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 예산

- 공사비 부족

공사비 책정 시 과년도 또는 사업계획 시점의 공사비 기준 자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공 및 공사 시기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물가상승률과 각종 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교육부 예산 기준(2013년 기준)

이외에 지방교육청별로 특별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교육부 예산 기준보다 적게 책정된다.

예산확보 단계 이전에 시설의 규모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설 규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을 결정한 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규모를 조정하거나 공사비 단가를 낮춰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 설계비 부족

시설의 용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정 설계대가를 산정해야 하나 도서량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설계비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공모에 의한 설계용역 계약 시 과도한 낙찰률을 적용하거나 수의시담을 통해 용역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각종 부대비용 누락

측량조사, 설계공모 보상, 설계의도 구현, 각종 인증, 평가 및 조사 비용을 누락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비에 명확한 산출 내역 없이 이를 부대비용을 설계비에 포함시켜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 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철거 및 이전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 □ 세부시설 계획

- 외부공간 계획 방향 설정 미흡

대다수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주차장, 옥외 휴게공간, 운동공간,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 계획 등 외부공간 활용 계획이 미흡하다. 공공건축의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접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건축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외부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증축 및 단계별 개발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세부시설 계획 방향 설정 미흡

시설프로그램(space program) 계획 시 공용면적을 과소하게 책정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전용공간은 대부분 수용 인원별 또는 사용 목적에 따른 계획 지침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용공간에 대한 계획 방향은 미흡하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의 경우 계획 기준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교육정책, 복지정책, 의료기준 등 각 시설별 정책 방향과 활용 지침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공용공간과 전용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체육관, 도서관, 문화교실 등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을 복합하여 계획하고, 외부공간 및 동선 계획 시에도 주민의 접

근성과 개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발주방식

- 사업 및 발주기관 여건에 맞는 발주방식 선정의 어려움

일부 지자체 사업에서는 일정이 부족하여 발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이 아닌 사업수행능력평가(PQ)나 제안공모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발주방식을 결정할 때는 사업 특성과 발주기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설계공모로 발주할 경우에도 일반설계공모, 제안공모, 2단계 설계공모 중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부시설 계획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거나 사용자와 면밀한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안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안공모가 유리하나, 발주기관의 시설 건립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 사업 관리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업 및 발주기관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발주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 □ 사업관리체계

- 전담인력 부재

지자체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담인력 및 조직이 부재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사업초기 단계에서 운영조직 및 프로그램 고려 미흡

지자체가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기획부서의 의지에 따라 사업초기에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나 조직 구성과 시설운영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운영 프로그램도 부실하게 계획된다.

사업기획, 발주 및 시공, 시설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내실 있게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관성 있게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주체를 초기 단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 복합공종의 공공건축 사업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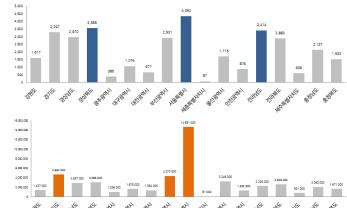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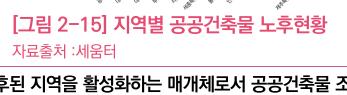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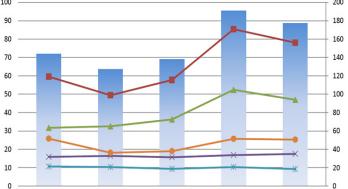
전시시설의 경우 건축과 전시 분야의 협력적 설계가 필요하다. 전시의 내용과 건축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전시 계획과 시공은 별도의 전문 업체에 발주하되 사업 초기부터 설계업체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건축물 조성에 참여하여 내실 있는 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3. 지자체 공공건축의 주요 쟁점

#### 1) 수급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

##### □ 지자체의 공공건축 현황 및 재고 파악 필요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수와 면적, 경과 연도는 계속 늘고 있으나 자산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과 노후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는 드물다. 자체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 정도, 인구 특성, 쇠퇴 여부, 재정여건이 상이하므로 면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을 통합적으로 수급·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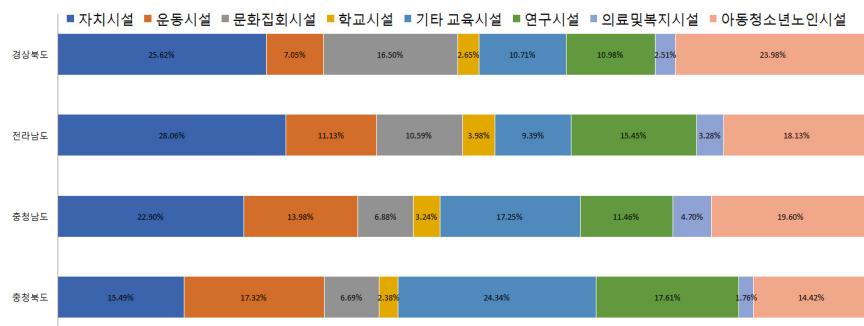
건축물 노후여건이 지역별로 상이함	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공공건축물 재고 관리
3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의 등수와 연면적의 차이가 두드러짐. 소규모 노후 공공건축물은 지방에 다수 분포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폐교의 활용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82개 도시의 철도 유류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현황, 유류공간에 대한 파악 및 재고관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b>[그림 2-15] 지역별 공공건축물 노후현황</b> 자료출처 : 세운터	<b>[그림 2-16] 지역별 폐교재산 현황</b> 자료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a href="http://www.moe.go.kr">http://www.moe.go.kr</a>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매개체로서 공공건축물 조성 지역의 폐교를 펜션과 체험학교로 리모델링하여 슬로시티 청산도에 주요관광 거점역할을 함 	긴축재정으로 인한 신축사업의 부담 지역 시·군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문교사회용 건축허가는 다른 용도건축물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임 
<b>[그림 2-17]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b> 출처 : 오우재건축사사무소	<b>[그림 2-18] 용도별 건축허가 추이</b> 출처 : 국토교통부 2016년 건축통계집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건축 수급관리 목표와 범위를 차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초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단위로 실행조직 및 전담(위탁)인력을 확보하여 시·군·구의 공공건축물 유류자산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2)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계획

### □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운동, 복지, 문화, 유아·청소년·노인시설)의 특성

지자체에 다수 분포하는 공공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므로 조성과정에서 명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다중이용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면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시설의 조성·발주·운영·이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공공의 재원 투자의 효과 및 지역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림 2-19] 공공건축 유형별 조성 현황(2013년~2016년)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세움터 DB

###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고려사항

지역의 공공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주민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심사 또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단계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민간 전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각 부처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컨설팅·관리하는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 3) 공공시설 간 연계, 장소 맥락을 고려한 공공건축물의 질적 수준 확보

#### □ 공공건축 사업의 범위 확대

전영훈(2016)의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유형을 공공건축물 이외에도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 공적공간으로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건축기본법」과 「경관법」에 따른 ‘공간환경’,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따른 ‘공적공간’ [표2-25]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공공건축에 포함된다.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이 연계된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 2-25] 공공건축 사업의 분류체계 총괄

분류유형	법적근거	구체적 대상												
도시공간 외	기타 기준 및 「도시계획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이 아닌 사적의 것</li><li>· 가로시설물 등</li><li>· 각종 연구용역 및 정책</li><li>· 도시계획</li></ul>												
공공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중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 및 자자체의 청사</li><li>· 기타 공공건축물</li><li>· 문화 및 서비스시설</li></ul>												
도시 공간	공공 건축	<table border="1"><tr><td>공간구조</td><td>「건축기본법」 연구 중 '주요 용어정리'</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계획 중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계획</li><li>· 마을만들기, 특성화 길 조성사업 등</li><li>· 보행환경 개선</li></ul></td></tr><tr><td>공공 공간</td><td>「건축기본법」 제3조3항</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장, 가로, 수변공간, 아트리움, 보행자 전용로, 운동장 등</li></ul></td></tr><tr><td>공간 환경</td><td>「경관법」 제2조1항</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li><li>· 지역 녹화관련 사업</li><li>·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사업</li><li>·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li><li>·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li></ul></td></tr><tr><td>공적 공간</td><td>「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 내 공개 공간, 공개 공간</li><li>·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li><li>·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li></ul></td></tr></table>	공간구조	「건축기본법」 연구 중 '주요 용어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계획 중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계획</li><li>· 마을만들기, 특성화 길 조성사업 등</li><li>· 보행환경 개선</li></ul>	공공 공간	「건축기본법」 제3조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장, 가로, 수변공간, 아트리움, 보행자 전용로, 운동장 등</li></ul>	공간 환경	「경관법」 제2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li><li>· 지역 녹화관련 사업</li><li>·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사업</li><li>·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li><li>·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li></ul>	공적 공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 내 공개 공간, 공개 공간</li><li>·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li><li>·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li></ul>
공간구조	「건축기본법」 연구 중 '주요 용어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계획 중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계획</li><li>· 마을만들기, 특성화 길 조성사업 등</li><li>· 보행환경 개선</li></ul>												
공공 공간	「건축기본법」 제3조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장, 가로, 수변공간, 아트리움, 보행자 전용로, 운동장 등</li></ul>												
공간 환경	「경관법」 제2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li><li>· 지역 녹화관련 사업</li><li>·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사업</li><li>·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li><li>·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li></ul>												
공적 공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 내 공개 공간, 공개 공간</li><li>·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li><li>·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li></ul>												

자료출처 : 전영훈(2016),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p.20

## □ 건축물 단위 공공건축물 조성에서 도시 맥락적인 접근으로 공공건축물 조성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단위로 단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도시 전체의 맥락 속에서 공공건축물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2017)

-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건축 조성·활용·관리 정책 제안
- 연구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조치원읍 인구·사회·경제 여건 및 공공건축물 일반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치원읍 인구·사회·경제 여건 분석</li> <li>- 조치원읍 대상 기 수행 사업 현황 및 문제 분석</li> <li>-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일반현황 분석</li> </ul>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공급수준과 접근성 분석, 활용현황, 이용자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물 현황 진단</li> <li>-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문제 분석(설문 등) 및 개선사항 도출</li> <li>-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개선 사항 도출</li> </ul>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원칙 수립</li> <li>-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방향 설정</li> <li>-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안) 제시</li> </ul>
공공건축물 개선 우선 추진 프로젝트 도출 및 계획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물 개선 우선 추진 프로젝트 도출</li> <li>- 우선 추진 프로젝트 계획방향 제시(시뮬레이션 등)</li> </ul>

자료출처 : 임유경 외(2016),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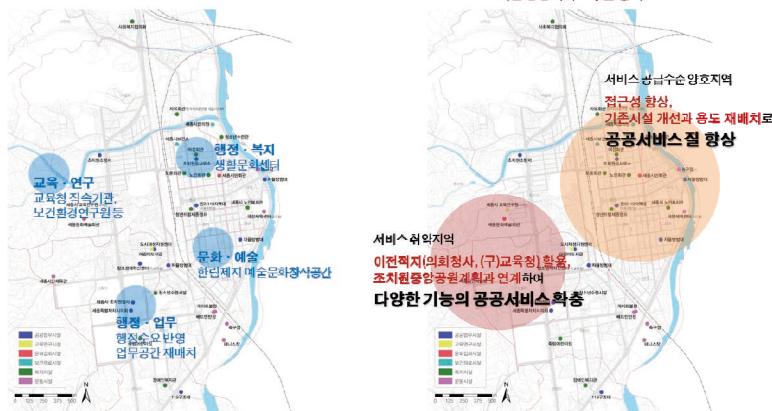
-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방향

### 세종특별자치시 중부생활권 중심지

로시 위상 김희

### 세종시 균형 발전, 조치원읍 등 · 서 생활권 균형 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자료출처 : 임유경 외(2016),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p.195

---

# 제3장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업무 실태

- 
1. 지자체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성과와 한계
  3. 지자체 공공건축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한 시도
  4.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조직의 가능성과 한계
- 

## 1. 지자체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 1) 지자체의 공공건축 관련 정책 개요

#### ①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정책 추진 배경

##### □ 지자체 공공건축 조직의 일반 현황과 문제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업 기획은 개별 부서(총무,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 노인보건장애인, 자치행정 등)에서 담당한다.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 담당 부서와 협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담당 부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예산과 규모가 확정된 후 발주 단계부터 개입하여 시공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설계예정금액이 고시금액<sup>6)</sup>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공모를 원활하게 운영할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설계공모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여전히 가격 입찰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다<sup>7)</sup>.

---

6) 2017년의 경우 2.1억 원

7) 서울특별시는 설계공모 적용 대상을 예정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

[표 3-1] 일반적인 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직 현황과 문제

지자체 공공건축의 쟁점	조직 현황과 문제
Efficiency 효과적인 수급 관리, 통합적 접근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	✓ 개별 부서에 의한 사업 기획 ✓ 수요와 공급 불일치, 지역 불균형
Right-sized, Functionality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 비전문가가 사업계획 수립 ✓ 예산, 규모, 프로그램 계획 부실
Quality, Sense of Place 설계 벌주, 우수한 설계자 선정, 디자인 관리	✓ 공모 준비운영 미숙, 디자인 관리 역량 부족 ✓ 우수 설계자 선정에 한계, 설계의도 구현 실패

출처: 연구진 작성

#### □ 공공건축 조성 절차 개선 및 전문가 참여 필요성 대두

지자체 공공건축의 문제 분석 과정에서 개별 부서의 비전문가에 의한 사업 기획 및 계획 수립, 가격에 따른 설계자 선정, 디자인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공공건축 전담 조직 또는 지원 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② 「건축기본법」제정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 「건축기본법」 제정

건축의 공공성을 천명한 「건축기본법」이 2007년 12월에 제정되면서 공공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8)</sup>.

「건축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국가 및 지자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을 창조하고 조성하여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sup>9)</sup>.

#####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건축기본계획은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성 구현과 건축·도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창조적 건축문화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

8) 방경식(2011),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9) 방경식(2011),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하기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이다<sup>10)</sup>. 제1,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 11)에서는 3개의 정책목표와 26개의 세부 과제를 정하고 그 중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와 공공건축 효율화를 위한 3 가지의 세부과제를 상정하였다<sup>11)</sup>. 공공건축 효율화 관련 세부과제는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공공건축물 리뉴얼 체계적 추진’이며, 각 세부과제에 따라 향후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제시하였다<sup>12)</sup>.

[표 3-2]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공공건축 관련 실천과제별 로드맵

세부과제	사업내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시행시점				
				16	17	18	19	20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공공건축 사전기획업무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공공건축 성과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공공건축 조성 업무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지자체 공공건축 발주부서의 전문직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건설공사 예산책정 지원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공공건축물 리뉴얼 체계적 추진	리뉴얼수요 등 현황 파악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연차별 리뉴얼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출처: 국토교통부(2016),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37

####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
- 시·도별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시·군·구별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건축분야 최상위 기본계획
- 대통령령으로 구성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시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범 부처적인 실천계획
-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건축관련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계획

출처: 김상호 외(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

국가 건축정책의 추진체계에서 국가는 법·제도 정비, 디자인 행정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의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 선도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한다. 중앙행정기관

10) 국토교통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68

11) 국토교통부(2016),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12

12) 같은 책

은 실천과제에 따라 연차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한다<sup>13)</sup>.

###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수립

각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추진한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지역 건축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기 보다는 하위 세부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립하기 위한 상위 계획이다. 즉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의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 시·도는 '광역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며, 광역건축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한다. 기초 시·군·구 역시 필요시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sup>14)</sup>.



[그림 3-1] 국가건축정책의 추진체계

출처: 국토교통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68의 [그림8]을 재편집

#### □ 광역건축기본계획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0년 12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8개의 특·광역시와 9개의 도 지자체가 모두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3) 국토교통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68

14) 같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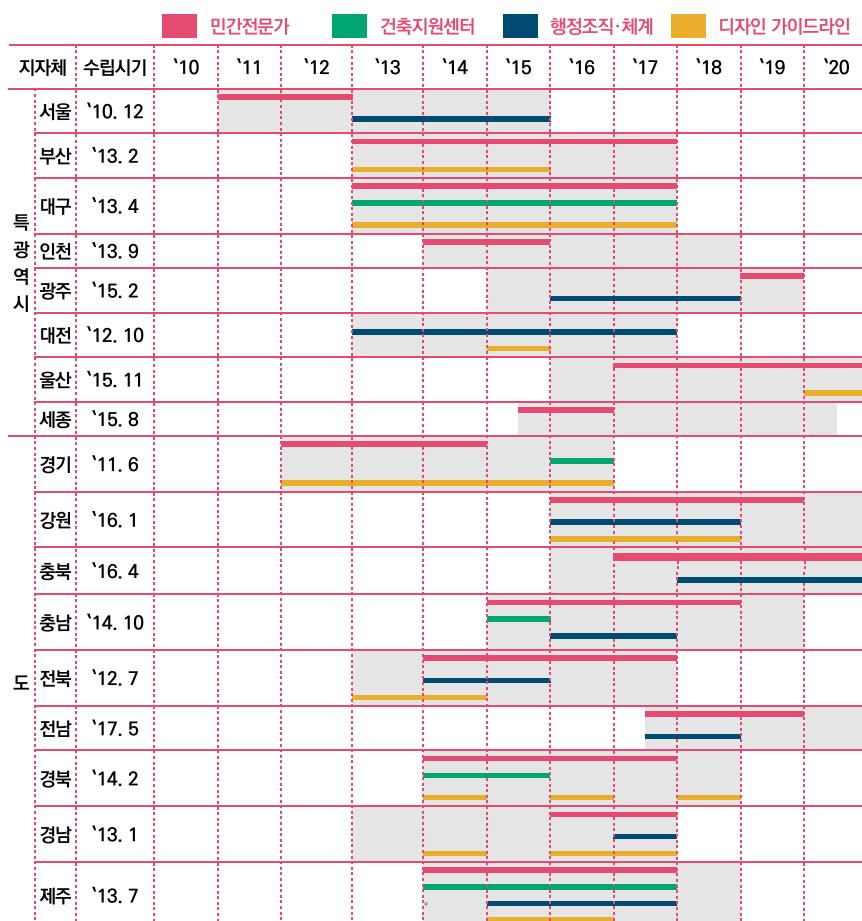
[표 3-3] 지자체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기

특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립시기	'10. 12	'13. 2	'13. 4	'13. 9	'15. 2	'12. 10	'15. 11	'15. 8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립시기	'11. 6	'16. 1	'16. 4	'14. 10	'12. 7	'17. 5	'14. 2	'13. 1	'13. 7

출처: 연구진 작성

각 지자체가 수립한 광역건축기본계획 중 공공건축 관련 실천과제와 세부 추진사항은 공공건축가를 비롯한 민간전문가의 활용과 건축지원센터 설립, 효율적인 협업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체계 구성,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표 3-4] 지자체별 광역건축기본계획 공공건축 관련 추진사항



출처: 연구진 작성

## 2) 지자체의 공공건축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본 연구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17개 광역 지자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각 지자체 건축기본계획 상의 공공건축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건축 관련 정책 중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공건축가 제도(서울, 부산 등)와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이 주를 이루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가 제도, 공공건축 전담 조직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실행력 확보 어려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① 공공건축가 제도, 민간전문가 활용

영주시, 서울시, 부산시, 포항시, 수원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는 민간의 우수한 건축·도시 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경관 및 공적 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또는 도시 차원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다<sup>15)</sup>). 공공건축가의 주요 업무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등이다<sup>16)</sup>.

[표 3-5] 서울·영주·포항시의 공공건축가 및 민간전문가 운영사례

구분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총괄형 공공건축가	
	서울시	영주시	포항시	
명칭	·서울형 공공건축가	·도시건축 관리단장	·디자인 전문위원	
위치	·외부민간전문가	·시장직속, 외부민간전문가	·시장직속, 외부민간전문가	
선정기준	·건축, 도시, 조경설계 전문가	·건축·도시·조경 설계 전문가로 국내외 건축사 자격 소지	·건축·도시·조경 설계 전문가로 국내외 건축사 자격 소지	
역할	·자문, 설계	·기획, 자문	·자문, 설계	
업무범위	·기본구상 참여 ·3억 미만 사업 설계참여 ·대규모 사업 총괄조정 ·건축디자인시범사업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설계자문 ·중앙부처 사업 기획 지원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 총괄검토 ·개별프로젝트 설계디자인 자문	

출처: 경상북도(2014), 「경상북도 광역 건축기본계획」, p.181, 전라남도(2017),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p.190 바탕으로 재구성

### ② 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sup>17)</sup>, 35개 지자체

15) 서울특별시(2010), "서울시, 도시와 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서울형공공건축가 도입", 12월 14일자 보도자료.

16)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17) 2016년 기준, 총 54개 지자체(광역 15, 기초 39)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운영

체에서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관련 지침으로 한정된 경우(X)와 공공건축물을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바라보고 공공건축물의 외부경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침(A), 경관계획지침뿐 아니라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간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지침(B)으로 구분된다<sup>18)</sup>.

[표 3-6]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유형별 현황

가이드라인 유형	광역	기초(시·군)	계
공공건축물 미포함	공공시설물 중심형(X)	5	12
공공건축물 포함	디자인 중심(A)	5	13
	디자인+프로그램(B)	5	14
계		15	39
			총 54개

출처: 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지침 조사' 자료 참조

[표 3-7]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구 분	명칭	유형	비고
광역시	서울 디자인서울을 가이드라인(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A	200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0
	대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10
	부산 도시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16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 가이드라인	A	201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09
(광역)강원도			
(광역)경기도	홍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A	2012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B	2010
시·군	광명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4
	광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0
	군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A	2009
	김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A	2010
	부천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B	2010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5
	양주시 건축물 가이드라인	A	2012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B	2010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11
(광역)경상북도	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B	2009
시·군	경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12
	구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1
	안동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11
	문경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13
	포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11
(광역)전라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B	2010
시·군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B	2011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1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09
	김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3
(광역)충청남도			
시·군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4
	보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12
(광역)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A	2009
시·군	제천시 공공디자인 통합매뉴얼	A	2009
	청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	200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A	2010

출처: 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지침 조사' 자료 참조. '공공시설물 중심형(X)' 유형은 목록에서 제외함

18) 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지침 조사' 자료 참조

##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성과와 한계

### 1)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현황

####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배경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광역 지자체와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축기본계획 수립 이후 서울과 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 가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관심이 부족하거나 조직과 예산의 한계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의 품질이 낮고 주민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지속되었다.

2013년에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건축 조성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공건축 기획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6월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센터로 단독 지정되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19)</sup>.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자체 공공건축과 관련된 업무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사전검토, 자문 응답, 관계자 교육 등의 법정 업무 외에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3년부터 공공건축 조성 지원 및 관련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사업을 수행했으며, 같은 해 3월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개소하였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업무와 그 외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연구, 대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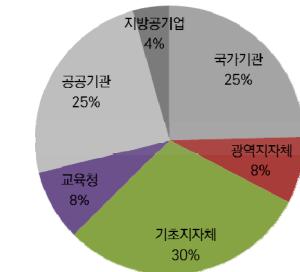
### □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지원 현황

2014년 6월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사전검토 등 법정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7년 9월까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전검토는 750건이며, 지자체(광역, 기초, 교육청)의 사전검토 신청 건수는 348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한다. 이 중 광역지자체의 신청 건수는 60건(전체의 8.0%), 기초지자체는 224건(29.9%), 교육청은 64건(8.5%)으로써 기초지자체가 전체 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3-8] 2014~2017 신청기관별 사전검토 접수 현황

신청기관 유형	2014	2015	2016	2017. (~9월)	총합	
					건수	비율
국가기관	17	52	61	55	185	24.7%
지방자치(광역)	5	10	22	23	60	8.0%
지방자치(기초)	16	70	79	59	224	29.9%
지방자치(교육청)	1	22	28	13	64	8.5%
공공기관	13	60	62	49	184	24.5%
지방공기업	2	15	6	10	33	4.4%

자료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림 3-2] 사전검토 신청기관별 접수 비율

자료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사전검토 외에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대행 등의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sup>20)</sup>. 또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과 제도, 좋은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제안공모 등의 발주제도,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교육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공공건축물 조성 사례를 직접 방문하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수 공공건축 사례 답사를 실시하였다.

### □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지원 성과

광역·기초 지자체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분석 결과, 수요와 입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설계방향에 대한 의견이 뒤를 잇는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비해 수요, 스페이스프로그램, 타당성 관련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 사전검토를 받는 일부 기관에서는 사전검토 이후에도 설계공모 대행 등의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사전검토 수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들이 공공건축 사업 기획을 내실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검토는 지자체 공공건축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2016년)에서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광역 지자체가 88.9%, 기초 지자체는 97.1%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 전체<sup>21)</sup> 평균인 84.6%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기초 지자체 담당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전문가의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표 3-9] 사전검토 실효성에 대한 설문 결과(2016년 사전검토 수행 사업 담당자 대상)

구분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공공기관	19	65.5%	10	34.5%
국가기관	21	91.3%	2	8.7%
지방공기업	3	100.0%	0	0.0%
지방자치단체(광역)	8	88.9%	1	11.1%
지방자치단체(기초)	34	97.1%	1	2.9%
교육청	3	60.0%	2	40.0%
총합계	88	84.6%	16	15.4%

출처: 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자료(2016.9.7.)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들은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과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전검토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사전검토가 의사 결정과 적정 예산을 산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전검토가 심의 준비를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표 3-10] 사전검토에서 도움을 받은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2016년 사업담당자 대상)

구분	의사결정		부서간 협의		기준·근거자료		전문성 보완		적정예산 산출		예상문제점검		심의 준비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공공기관	7	24.1	3	10.3	12	41.4	11	37.9	5	17.2	13	44.8	1	3.4
국가기관	3	13.0	2	8.7	13	56.5	12	52.2	5	21.7	11	47.8	0	0.0
지방공기업	0	0.0	1	33.3	2	66.7	1	33.3	1	33.3	2	66.7	1	33.3
광역지자체	2	22.2	0	0.0	3	33.3	6	66.7	2	22.2	5	55.6	0	0.0
기초지자체	9	25.7	4	11.4	22	62.9	22	62.9	9	25.7	27	77.1	14	40.0
교육청	1	20.0	0	0.0	2	40.0	2	40.0	0	0.0	1	20.0	0	0.0
총합계	22	21.2	10	9.6	54	51.9	54	51.9	22	21.2	59	56.7	16	15.4

출처: 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자료(2016.9.7.)

21) 광역·기초 지자체 외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이 포함된다.

### 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 성과와 한계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 검토, 자문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하여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사업 기획을 내실화하고 사업계획을 합리화하는 한편 담당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 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 도시구조를 고려하도록 유도하여 공공건축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사전검토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는 지역과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전략과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향 제시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한정된 인력이 다양한 지역과 용도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30일 내에 검토하기 때문에 지역 고유의 특성과 현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DB 시스템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에 의존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2014년 개소 이후 업무량이 과증되고 있기 때문에<sup>22)</sup> 증가하는 지자체의 지원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지원 업무의 가장 큰 문제는 설계·시공·운영 등 사전 검토 이후 단계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발주 이후 단계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건축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역의 여건과 사업 특성,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공공건축이 높은 품질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

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월평균 건수가 2014년 7.4건에서 2015년 18.0건, 2016년 20.4건, 2017년 23.2건(9월까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월별 사전검토 신청 건수는 최소 6건(2014년 8월)에서 최대 39건(2017년 2월)까지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사전검토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 대체로 상반기의 접수 건수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2017년의 월별 접수 건수 평균은 23.2건(9월까지)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

### 3. 지자체 공공건축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한 시도

#### 1) 공공건축의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한 기획 내실화 : 영주 도시건축관리단

##### □ 설립 목표 및 역할

영주시는 2009년부터 '영주시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건축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였다<sup>23)</sup>. 통합 마스터 플랜은 분산되고 개별적인 기본 도시계획을 장소 단위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계획이자 장기적으로 공공건축을 총괄 관리·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개별 건물을 따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다.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각 부서별 협업을 원활하게 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영주시는 2010년에 시장 직속의 '디자인관리단(현 도시건축관리단)'을 신설하였다.

도시건축관리단은 다른 부서 간 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디자인 관련 사업을 선별해 직접 관리대상과 간접 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행정과 함께하는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다<sup>24)</sup>.

##### □ 조직체계 및 운영

도시건축관리단의 설치 근거는 「건축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21조이다. 관리단의 구체적인 활동과 업무영역은 「영주시 경관조례」 제946호(2015)에 근거한다. 조례에 의하면 도시건축관리단은 시장이 위촉하는 도시건축관리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도시경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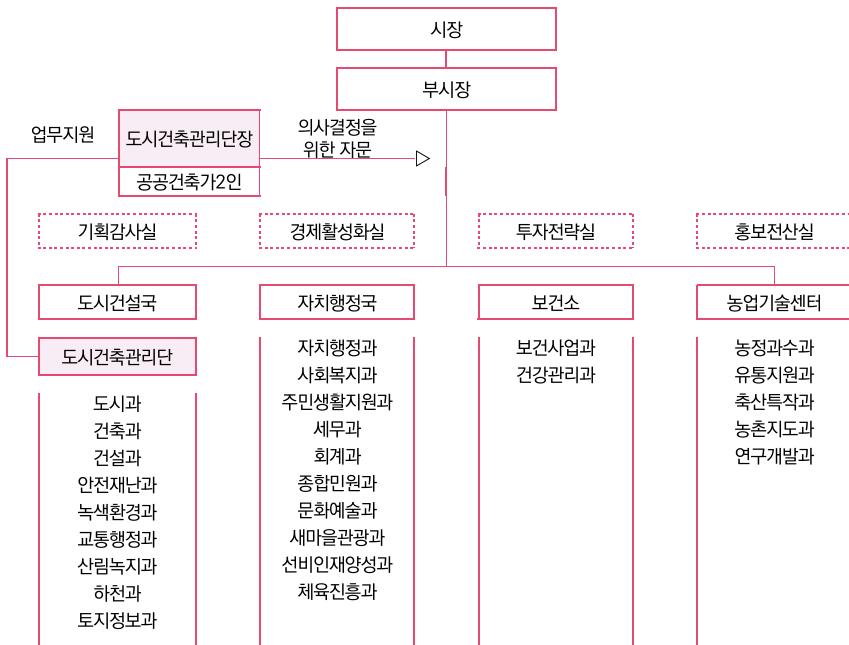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

23) 2008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기본과제로 수행한 「장소의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에서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에는 영주시가 발주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한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방안 연구」에서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한 '영주시 도심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24) 차주영·조준배·박선영(2014),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1 –영주시의 시도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44-5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 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관리단은 시장 직속으로 도시건축관리단장과 도시·건축·공공디자인 등 전문 분야별 공공건축가 2명이 시로부터 위촉되어 활동한다. 실질적인 행정지원 조직은 지역개발국 내 도시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팀(2010)과 도시재생팀(2013)이며 공무원 3명으로 운영되는 이원적인 조직체계이다. 중앙부처 시범사업 총괄 MP, 지역 NGO단체, 그리고 사업단위별 주민협의체 등은 민간협력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각각의 역할과 업무를 구분해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그림 3-3]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운영 조직체계

출처: 경상북도(2014), 「경상북도 광역 건축기본계획」, p.285 및 영주시 조직도(2017) 바탕으로 영주시 확인을 거쳐 재작성

## □ 조직 업무 및 성과

영주시는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도시발전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 도시적 차원에서 비전을 형성하고, 단계적이며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합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각종 시범사업에 응모한 결과, 영주시는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중앙부처와 도의 시범사업 총 15개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62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차주영 외, 2014:54).

### \* 영주시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영주시는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터로'라는 주제의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건축물 조성과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제안서에서 영주시는 중앙선, 영동선, 북영주선 철도로 둘러싸여 삼각지 마을의 단절된 도시공간구조를 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극복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공동화 되어가는 도심을 정비하여 공공공간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커뮤니티를 회복을 통한 새로운 도시의 성장축을 제시하였다.



[그림 3-4] 영주시 삼각지 조성계획

출처: 박계현(2012), "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의 한 예를 보여준 영주시", SPACE Magazine, [http://www.vmspace.com/2008\\_re/kor/sub\\_news\\_view.asp?idx=5889](http://www.vmspace.com/2008_re/kor/sub_news_view.asp?idx=5889)(2017.5.22.)

영주시는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도시건축 관리단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수요에 맞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고려하고 각 공공건축물의 현황을 전체와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 2) 공공건축 건립 효율화를 위한 자체 조직 신설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추진단

### □ 공공건축추진단 신설 배경

기존 행정조직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복지, 여성가족 등 관계 부서 정책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개별 기획하고 공공건축 부서에서는 공사 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세종시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외에도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편의시설인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하는 시설로써 다양한 수요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부서 의견을 취합하여 시설 조성·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기존 건축과의 공공건축담당 업무와 총무과의 청사관리담당 일부 업무를 이관 받아 T/F 성격으로 2016년 3월에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sup>25)</sup>.

### □ 공공건축추진단 신설 목표

공공건축추진단의 신설 목표는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특히 읍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공사규모 및 난이도가 크고 시정 중요도가 높은 역점 사업을 집중 관리하며, 실과 발주부서의 건립사업 기획·계획(사업비 산출 등) 업무를 지원한다.

### □ 공공건축추진단의 기구 및 인력 현황

2017년 현재, 공공건축추진단은 총 8명(건축: 5급 1, 6급 2, 8급 1, 9급 1/통신 7급 1/기계 7급 1/전기 8급 1)으로 구성된다. 원래는 건축과 내 공공건축담당 6명으로 운영되었으나, 행정도시지원과 내 공공건축추진단으로 개편되면서 8명으로 확대되었다.

### □ 공공건축추진단의 업무 분장

공공건축추진단의 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016년 3월 21에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0조(균형발전국)에는 균형발전국의 사무 중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인수 등 공공건축에 관한

25) 세종시의 공공건축추진단 신설에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2011년에 공공건축 건립의 '계획'과 '시공' 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건축추진단(국장급)이 신설되었다. 공공건축추진단은 공공청사기획과(정부청사·시청사 등 공공청사 건립 전담), 교육시설기획과(교육청 및 각급 학교 건립 전담), 공공시설건축과(국립도서관·대통령기록관·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 전담)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이중 공공 시설건축과는 신설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1), "건설청, 세종시 본격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 2011.6.21. 보도자료 참조.

사항”이 명시되었다. 조례의 시행규칙 제9조(균형발전국에 두는 과)의 ② 행정도시지원과장의 업무 분장에는 “22. 공공건축물 공사에 관한 사항, 23. 공공건축물 용역에 관한 사항, 24. 공공건축물 공사관련 관급자재 발주, 수불 및 관리, 25.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 공공건축물을 건축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 공공건축물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읍·면·동주민센터 개청 이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신축·인수에 관한 사항”이 공공건축추진단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추진단 2017년도 추진계획

- 총 42개 사업 / 79,193백만 원(설계·공사 38건, 감리 6건(설계·공사대상 중), 행정절차 이행 4건)
- 시의 발주부서 의뢰 시 설계·공사, 감리감독 실시(연중)
- (역점사업) 총 9개 사업 / 164,722백만 원(2017~2020년)
- 읍·면·동 복합(7개 사업), 지방자치회관, 아름종촌동 주차타워,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도서관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추진단(2017), ‘17년도 공공건축사업 추진계획 참조



[그림 3-5] 세종시립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7),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17.5.18. 보도자료



[그림 3-6] 지방자치회관 설계공모 당선작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6), “지방자치회관 건립 당선작 발표”, 2016.11.21. 보도자료

## □ 업무 성과

공공건축추진단은 2016년 3월 신설 이후, 2016년에만 설계·공사·감리 감독 업무를 87건 수행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건립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인수 및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공건축추진단은 각 부서의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 강화 :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 □ 설립 목표 및 역할

각 지자체에서 주요 공공건축 건립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관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조사 전문 독립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요 지자체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공공투자사업 사전심사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와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로 구분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앙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의 수행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담당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타당성 조사영역은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담당한다<sup>26)</sup>.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투자 심사제도는 지자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의 한정된 투자자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11] 재정사업 사전 심사제도

제도명	중앙정부 투자심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예비타당성	타당성	투자심사	
수행주체	PIMAC	LIMAC	중앙 (행정자치부)	시·도	군·구
심의 대상 기준	500억 이상 (국비300억 이상)	500억 이상 (국비300 억 미만)	200억원 이상 시·도 사업 100억 이상 군·구 사업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도 사업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군·구 사업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군·구 사업

주) 투자심사 대상기준은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세분화됨

출처: 최태립(2016),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p.3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광역 시·도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전국 7개 시·도에 재정사업 투자분석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조직이 설립되어 있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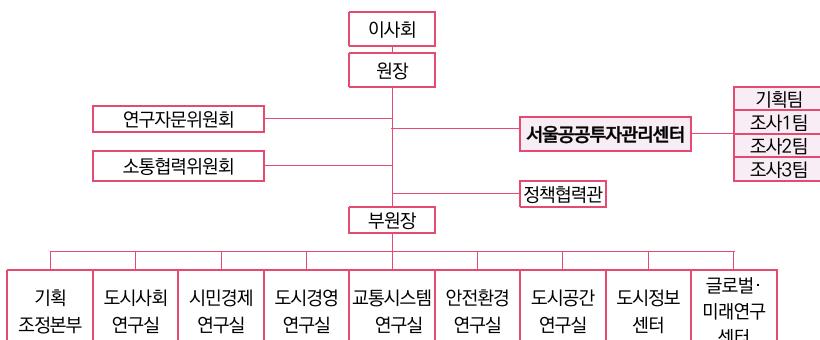
26) 최태립(2016),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p. 3.

[표 3-12]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구분	기관명	유형	인력	설치연도	설치근거
중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 센터	센터	24명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 5 수석연구원/전문위원/ 전문분석원 16 관리직 2 / 변호사 1	2014년 12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 센터	센터	6명 투자분석위원 3 연구원 3	2010년 10월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16년 제정)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	6명 센터장 1 연구위원 1 전문연구원 4	2014년 12월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공공투자분석 센터	센터	3명 센터장 1 전문위원 1 전문연구원 1	2012년 2월	
지방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 센터	센터	2명 센터장 1 연구원 1	2015년 1월 (공공투자 연구팀)	
	대구경북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센터	6명 센터장 1 부연구위원 2 연구원 3	2015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 센터	센터	4명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1 전문연구원 1 위촉연구원 1	201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15년 제정)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 센터	센터	23명 센터장(선임연구위원) 1 부연구위원 1 팀장 4 연구원 16 운영직원 1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14년 제정)

출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2015), 「지방공공투자사업 관리 개선방향 워크숍 자료집」을 바탕으로 재작성(2017.7.1. 홈페이지 기준)

#### □ 조직체계와 인원구성



[그림 3-7]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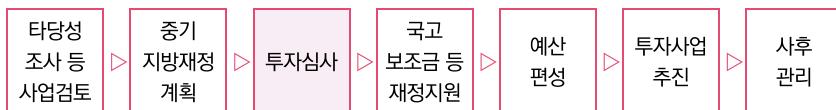
출처: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 바탕으로 재작성, [https://www.si.re.kr/intro4\(2017.8.18\)](https://www.si.re.kr/intro4(2017.8.18))

27) 최태립(2016),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p. 3.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연구원의 별도 조직이며, 기획팀과 조사1·2·3팀의 총 4개 팀으로 구성된다.

#### □ 주요 업무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으며, 예산 편성 전에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박영민 외, 2014:10).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심사 단계에서 사업부서의 심사 의뢰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박영민 외, 2014:10).



[그림 3-8] 공공투자사업 관리 흐름

출처: 박영민 외(201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서울연구원, p.10의 [그림 2-1]

공공투자사업의 실행 단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계획수립단계-심사단계-사후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계획수립단계는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조사 시행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단계이며, 심사단계는 서울시 재정부서가 센터의 지원과 함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사후단계는 사업 준공 후 운영·관리단계를 포함한다(박영민 외, 2012:40).

계획수립단계	심사단계	사후관리단계	
		투자·집행단계	운영·관리단계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조사 등	사업 타당성검토 투자심사	예산 편성·집행 기본·실시설계 착공·준공	운영·관리
사업부서	투자심사위원회	예산담당관/사업부서	사업부서

[그림 3-9] 공공투자사업 실행 단계

출처: 박영민 외(2012),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p.40의 [그림 2-1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업무 분야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연구교육 분야로 구분되며,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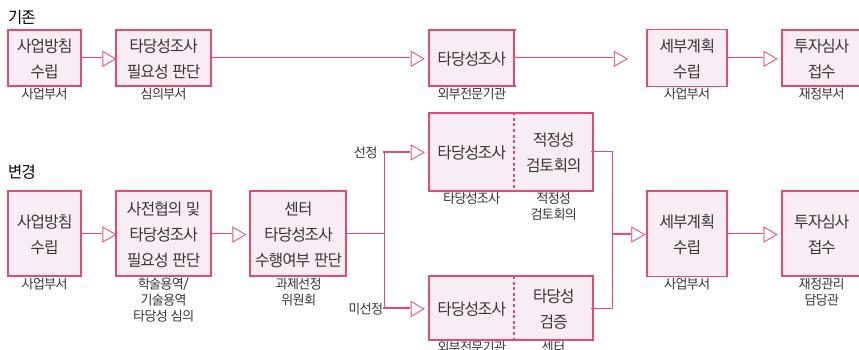
- 재정사업분야 : 투융자심사 이전 타당성검토,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결과검증
- 민간투자분야 : 계획단계 적격성·타당성조사, 협상단계 실시협약지원
- 연구교육분야 : 공공투자사업 지침마련, 기초연구, 관련 실무자 교육, DB구축, 매뉴얼 작성

출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내용 바탕으로 재작성 [https://www.si.re.kr/intro411\(2017.5.22.\)](https://www.si.re.kr/intro411(2017.5.22.))

## □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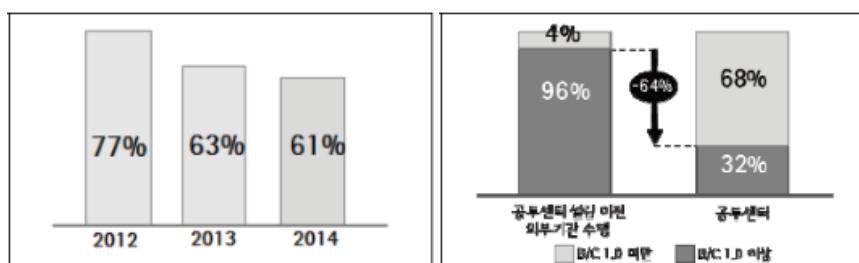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된 이후, 박영민 외(2014), 주재홍 외(2016) 등의 연구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성과를 정리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체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특히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당초 목표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주재홍 외, 2016:151).

그러나 주재홍 외(2016:152)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연구원 하부 조직으로 서울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의사결정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에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3-10]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전·후의 계획단계 절차 변화

출처: 박영민 외(201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p.30의 [그림 2-6]



[그림 3-11] B/C 1.0 미만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

출처: 박영민 외(201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p.38의 [그림 2-9], p.39의 [그림 2-11]

주) B/C(costbenefit ratio) : 비용 편익비

## 4)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설계 관리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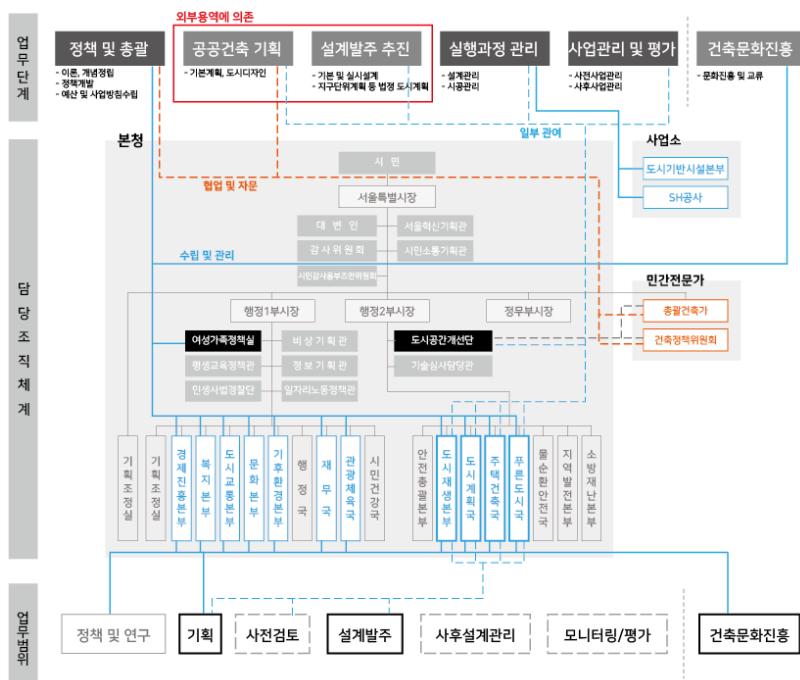
### □ 설립 목표 및 역할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2015년 1월 민선 6기, 박원순 2기 조직 개편 시<sup>28)</sup>에 건축·도시 계획 등 공간환경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로 행정(2)부시장 하위 조직으로,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의 공간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서울만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려 미래 도시가 가져야 할 환경까지 면밀히 생각해 공간환경을 만들어 야 국제적 수준의 도시로, 모든 사람이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단장은 “도시에서 공공건축과 공공건축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서울이라는 원석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야 도시공간이 시민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간,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 2017.3.23. 파이낸셜뉴스(2017.5.22.)

### □ 조직과 인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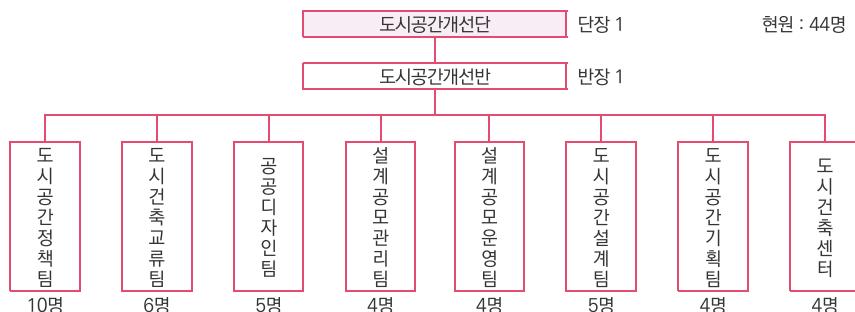


[그림 3-13] 서울시 조직 및 업무현황 종괄

출처: 전영호 외(2016),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p.89

28) 서울시 민선6기의 핵심과제는 시민안전, 창조경제, 도시재생, 희망복지 분야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점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5실 4본부 5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바뀌었다. 서울특별시(2014), “박원순 시장, 2기 시정 실행력 뒷받침 ‘조직개편’”, 2014.10.10. 보도자료 참조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청 행정2부에 8개의 본부·국과는 별개로 조직되어 있으며, 도시공간개선단 내 7개 팀(도시공간정책팀, 도시건축교류팀, 공공디자인팀, 설계공모관리팀, 설계공모운영팀, 도시공간설계팀, 도시공간기획팀)과 도시건축센터로 구성된다. 부서별 인력은 행정·기술직 21명과 임기제 22명, 관리운영 1명으로 2017년 8월 기준(서울시청 홈페이지) 44명이 근무(정원 45명) 중이다<sup>29)</sup>.



[그림 3-14]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조직도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조직도 및 업무직원 바탕으로 재구성

[표 3-13]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정원 및 현원

구분	계	일반직(행정·기술)									일반직(임기제)						관리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3급	5급	6급	6급	6급	6급		
정원	45	23	1	4	8	10	-	-	22	1	4	9	8	-	-	-	
현원	44	21	1	3	6	8	-	3	22	1	4	9	8	1	1	1	

출처: 도시공간개선단(2017), 2017 주요 업무계획, p.1

#### □ 주요 업무

도시공간개선단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 수립 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공간개선단은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으로서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sup>30)</sup>”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도시공간 정책, 소통과 협력의 자문 역할’로 상정하고 도시공간 정책 조정 및 자문,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수립과 추진, 도시·건축문화 선진화방안 제시,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실현이라는 4가지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행사, 교육,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

29) 도시공간개선단(2017), 2017 주요 업무계획, 서울특별시, p.1.

30) 세부 추진전략은 고유한 풍경 회복, 역사의 회복, 도시자생의 회복, 시민 삶의 향상이다. 도시공간개선단(2017), 2017 주요 업무계획, 서울특별시.

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총괄건축가와 건축정책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여 도시공간정책을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up>31)</sup>.

[표 3-14]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2017년도 추진업무

정책목표	정책과제	추진업무
도시공간 정책, 소통과 협력의 자문 역할	도시공간정책 조정 및 자문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수립과 추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제도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 설계공모 일원화 및 통합 홈페이지 운영 도시공간개선 자체공간계획 및 통합계획 수립
	도시·건축문화 선진화방안 제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서울시 기초건축교육 체계 확립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서울 도시건축센터 건립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실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시민/전문가) 서울우수공공디자인(SGPD) 인증제 서울디자인클리닉

출처: 도시공간개선단(2017), 2017 주요 업무계획 바탕으로 재구성

[표 3-15]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위원회 운영

구분	서울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법시 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 조(서울총괄건축가의 운영 등)	- 건축기본법 제18조 및 건축기본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 13조, 제14조
운영 목적	- 도시건축 공공성 강화와 시민중 심의 공간환경 창출	- 건축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 지속적 관리	- 아름답고 쾌적·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운영 현황	- 총괄건축가 자문 : 주2회 - 총괄건축가제도 모니터링 : 년 1회 - 총괄건축가 강연 : 상 하반기, 년2회	- 건축정책위원회 : 월 1회 - 소위원회 : 월 1회 이상(정책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분과위원회 : 월 1회 이상(안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도시디자인위원회 : 월 2회 - 디자인 모니터링 실시 : 상·하반기, 년2회
구성 인원	- 1명 - 공공건축가 171명(기준 109명 + '17년도 선정 62명)	- 27명(총괄건축가, 시의원 2명, 당연직 8명, 전문가 16명)	- 23명(시의원3, 외부18, 내부2 (위원장:도시공간개선단장))
운영 실적	- 총 775건(2014.9월 ~ 2016.12월) - 자문 255건, 회의·면담 470건, 행사 등 50건	- 총 230건(2013.1. ~ 2016.12.) - 건축행정개선(102건), 공공건축 설계공모(92건) 건축문화진흥 등(36건)	- 총 27회(2016년) - 디자인 심의 및 디자인 자문(117건)

출처: 도시공간개선단(2017), 2017 주요 업무계획 바탕으로 재구성

31) 도시공간개선단(2017), 2017 주요 업무계획, 서울특별시, pp.9-11.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 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는 공공건축사업 기획과 설계공모 운영, 공공건축가 제도<sup>32)</sup> 운영이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업무를 조정·자문하거나 지명현상설계에 참여하여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직접 설계한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역할을 수행한다<sup>33)</sup>. 공공건축가가 설계한 어린이집, 119 안전센터, 작은 도서관, 공공주택 등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상생활공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평범하던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가의 손길을 거치면서 지역의 작은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빈집부터 공중화장실, 동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마을의 표정을 담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커뮤니티가 바뀌고, 평범한 동네 어귀의 일상생활 속 건물들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김태형(2017), “공공건축가 제도가 나아갈 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지역을 변화시키다」, p.10-11



[그림 3-15] 도담 어린이집(신시흥 어린이집)

출처: 디림건축 블로그, 박영채 작가 사진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dimarch(2017.5.22.)



[그림 3-16] 구로119안전센터

출처: doojin hwang architects 흙페이지

http://djharch.com/home/ (2017.5.22.)

## □ 업무 성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공간개선단이 민간 도시건축전문가인 총괄건축가 위촉을 계기로 ‘15.1월 출범한 이래 공공사업의 건축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원칙을 마련하고 공공건축가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간의 기능과 디자인적 가치를 높이는 데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34)</sup>.

32) 현재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건축가 제도는 2012년부터 운영되었다.

33) 서울정책아카이브 – 서울시 공공건축가 https://seoulsolution.kr/(2017.5.22.)

34) 서울특별시의회(201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 마무리!”, 2017.11.15. 보도자료 참조

## 5)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컨설팅 수행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 □ 설립 목표 및 역할<sup>35)</sup>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연구하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3월에 설립되었다<sup>36)</sup>.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행정서비스, 의료 및 복지, 범죄예방, 안전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살고 싶은 공간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 경관, 도시시설물 등 공공 디자인과 사업의 컨설팅,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세미나,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등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수립에서 완성까지 총괄적인 조정과 관리를 수행한다.

### □ 조직체계와 인원구성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아래 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연구원의 조직으로써 정책 사업지원단 아래 1개 연구소 및 5개의 동향분석·사업화·연구·지원센터와 함께 운영된다.



[그림 3-17] 충남연구원 조직도

출처: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충남연구원 브로셔 p.13  
[http://www.cdi.re.kr/data/reserve/cni\\_bro\\_kor.pdf](http://www.cdi.re.kr/data/reserve/cni_bro_kor.pdf)

35)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설립 목표와 역할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http://www.cpdc.re.kr/>)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36) 충청남도는 2009년부터 시·군 공공디자인사업의 진단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충청남도(200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설립”, 2009.2.23. 보도자료 참조

인원은 센터장 1, 전임책임연구원 1, 전임연구원 1, 연구원 1, 총 4인으로 구성되며, 업무 분야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과 건축계획 및 설계,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가로경관 계획, 산업디자인, 농촌 및 지역계획이다.

[표 3-16]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구성원 및 업무분야

구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건축계획 및 설계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가로경관계획	산업디자인	농촌 및 지역계획
인원(중복)	4	2	2	1	2	1

출처: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2017.5.22.)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건축(20명), 조경(13명), 도시계획(4명), 도시 및 농촌계획(3명), 산업디자인(9명), 공간디자인(13명), 시각디자인(5명) 분야의 전문가 총 67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 풀을 구성하였으며, 사업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다.

#### □ 주요 업무<sup>37)</sup>

충청남도와 시·군 지자체, 홍성의료원, 충청남도개발공사 등의 기관에서 컨설팅을 신청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총 92개의 사업에서 174개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컨설팅 대상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 공공매체디자인, 공공디자인 정책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는데, 컨설팅 세부 분야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7]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공공디자인 컨설팅 대상

구분	주요분야	세부분야	세부내용
공공공간	도시환경	야외, 기반시설	놀이시스템, 벤치, 휴지통, 버스·도로안내·주소표지판, 승차대, 가판대, 맨홀뚜껑, 콘크리트 구조물, 조명등, 도로분리대, 점자블록, 방음벽 등
	공공건축 및 실내환경	행정, 문화·복지, 역사시설, 교육·연구	
공공시설	교통시설	보행 및 운송	보행신호등, 펜스, 불라드, 가드레일, 정류장, 자전거 정차대, 육교, 신호등, 버스안내시스템, 주차시설, 벤치, 의자, 관광안내 시설, 지역 안내도, 교통정보판 등
	편의시설	휴게 및 위생시설	
	공급시설	판매·관리·정보·행정	
공공매체 디자인	정보매체	지시·유도기능매체	이정표,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광고판, 게시판, 간판, 배너, 홍보영상,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상징매체	광고·행정·유통기능, 환경연출매체	
공공디자 인 정책	문화진흥·산업·보건복지·환경·기술·문화·지역개발· 관광자원개발·이벤트산업·예술·교통안전·스포츠 정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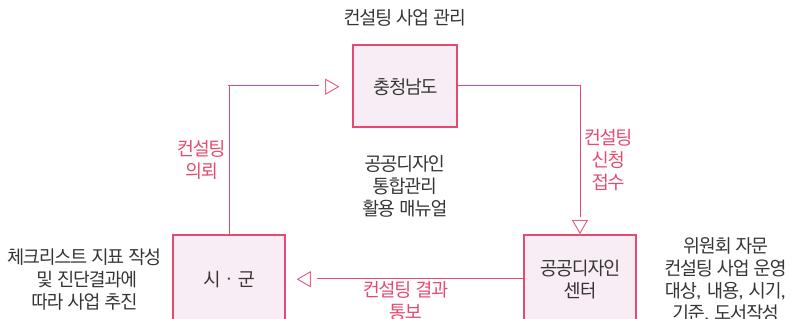
출처: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2017.5.22.)

컨설팅은 충청남도와 시·군이 컨설팅을 의뢰하면 공공디자인센터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역할을 분담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37)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http://www.cpdc.re.kr/>)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 공공디자인 컨설팅 :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공공공간, 시설물, 시각매체, 공공서비스 관련 사업에 기반이 되는 전문지식을 제공
- 컨설팅 추진 절차 : 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은 디자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컨설팅을 요청하면 디자인센터는 대상사업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컨설팅 인력을 배정하고 컨설팅을 실행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
- 운영위원 구성 : 디자인 컨설팅 시 디자인센터 내 전문위원과 공공디자인 및 경관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지며, 요청 컨설팅의 분야와 부합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위원 참여

출처: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2017.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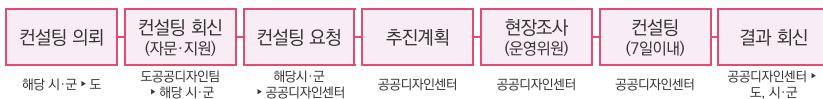


[그림 3-18]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추진체계

출처: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2017.5.22.)

#### • 디자인 자문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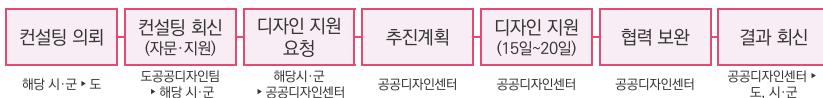
디자인 자문은 공공디자인 및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중요도에 따라 단순 자문과 심층자문으로 구분되며, 충청남도와 시·군의 공공디자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총체적인 디자인 자문이 해당된다.



[그림 3-19] 컨설팅 추진 단계

출처: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2017.5.22.)

디자인 지원은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공디자인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자인 지원 업무는 디자인 계획수립과 방향설정 및 디자인 대안을 작성하여 최종안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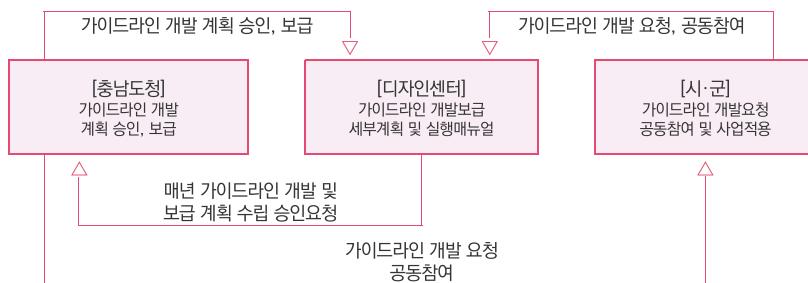
[그림 3-20] 디자인 지원 단계

출처: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2017.5.22.)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sup>38)</sup>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는 것 외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주요 역할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관련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 및 시설물, 공간, 아이덴티티 등 공공디자인 대상별로 정의, 대상, 내용, 범위 등을 범례, 사례 형태로 규정한 규정집이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일관된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적, 지역적 가이드라인,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세부계획 및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림 3-21]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적용 절차

출처: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http://www.cpdc.re.kr/support/support01_consulting1-1.asp)(2017.5.22.)

#### □ 업무 성과

충청남도는 2009년을 ‘공공디자인 원년’으로 선포하여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센터를 설립하는 등 공공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업의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컨설팅을 통해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여 관계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다.

3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http://www.cpdc.re.kr/>)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 4. 지자체 공공건축 조직의 가능성과 한계

### 1) 가능성

#### □ 공공건축의 효율적 수급, 품질 향상 필요성 인식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걸쳐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인식 하에,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관련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2008)’은 지역의 공공건축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첫 사례로써 이후 영주시 ‘도시디자인관리단(후에 ‘도시건축관리단’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 □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 운영, 관리체계 강화 노력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담당하는 개별 실과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적정한 규모와 예산,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에 있는 공공건축담당이 공공건축사업의 공사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비·시공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공공건축 전담 부서를 신설·확대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균형발전국 행정도시지원과에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2016)하였으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2011년에 건설교통국 시설조성과와 회계과 청사관리팀을 합병하여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를 신설하였다.

#### □ 우수한 설계안 도출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한 노력

가격 입찰로 공공건축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비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결과, 각 지자체에서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설계공모 적용 금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에도 우수한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주시,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등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2) 한계

### □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있으나, 본 장에서 조사분석한 공공건축 관련 조직은 모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다.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은 「영주시 경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추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조직의 구성과 주요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 제2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공공건축 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건축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건축 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공공건축의 기획·설계·시공·관리·운영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공공건축 조성 전 절차에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분석 대상 공공건축 조직의 대부분은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공공건축가 등 전문 인력 활용 : 지속성, 실행력 담보에 한계

영주시의 도시건축관리단장, 서울시의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외부 전문가 신분으로써 비상근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설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자문 형태로 개입하고 있다.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위상과 권한,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 제4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안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향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
  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 체계 제안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 

##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향

###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원칙

#### 조직 설립·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지자체가 공공건축 지원 업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설립·지정 관련 사항, 수행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한 공공기관 중 지자체가 제외되어 있으며<sup>39)</sup>, 법정 업무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지자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제외된다. 지역 공공건축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정책 방향과 조직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설치

지자체 조사 결과,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조직 현황, 담당자의 역량이 큰 편차를 보였으며, 공공건축 조성 업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

3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 기능의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요청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 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차이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역량을 갖추고 조직 운영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야 할 것이다.

#### □ 광역·기초 지자체 구분 없이 설립 가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와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광역 단위의 센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광역·기초 구분 없이 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내에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공공건축 조성에 관여하는 지자체의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광역지자체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관할 기초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2) 업무 추진 목표

#### □ 지자체 공공건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

현재는 지자체의 각 부서별로 공공건축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지역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미흡하고 전문조직이 부재하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건축사업의 용도가 중복되거나,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공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공공건축을 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현황과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여 개별 사업의 규모와 스페이스프로그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 지역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계획 : 이용자 중심

공공건축은 공공기관이 하향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 또는 공무원이 해당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이며, 좋은 공공건축은 이용자들이 각각의 요구에 맞게 활발하게 이용하는 건물이다. 현재는 세부 용도와 운영 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의 요구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많다.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역 현황과 시설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사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 수준 높은 공공건축 실현을 위한 체계적 관리 : 삶의 질 향상, 지역 환경 개선

마지막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자는 것이다.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과 설계, 시공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 공공건축의 조성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 3) 업무 구성 기본방향

#### ① 지자체 공공건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

##### □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 • 공공건축 관련 자료 구축 및 관리의 내실화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사전검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 관련 통계를 종합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우수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와 세움터 등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공건축 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이 때,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뿐 아니라, 이용과 재정 현황 자료를 함께 구축하여 지자체 공공건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 우수 공공건축 조성사례의 통합관리

지역의 우수 공공건축 조성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양질의 공간 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 □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 • 지자체에서 수립한 공공건축 관련 계획의 한계

「건축기본법」 제정과 건축정책기본계획 발표 이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건축 관련 계획이 다수 수립되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렵고 실천 기반이 부족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영주시와 광양시 등 공공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 외에는 공공건축의 통합 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없다. 지역 공공건축의 효율적 활용과 적정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별 공공건축 실태 파악에 기반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과 유지·관리 전략을 담은 통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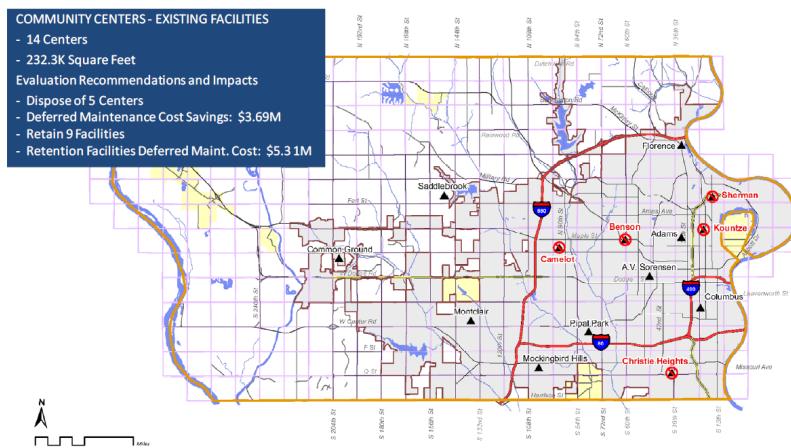
-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사례 : 오마하 공공시설 마스터플랜(City of Omaha: Public Facilities Master Plan)

미국 오마하시에서는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 내 토지이용과 인구변화를 예측하여 도시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고용과 서비스 수요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로와 하수, 공공 안전 서비스(소방서, 경찰서), 공원,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의 시설 수요, 관리 비용, 고용 인력 등을 예측하고 시설 재배치, 신설 등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표 4-1] 오마하 공공건축 마스터플랜 구성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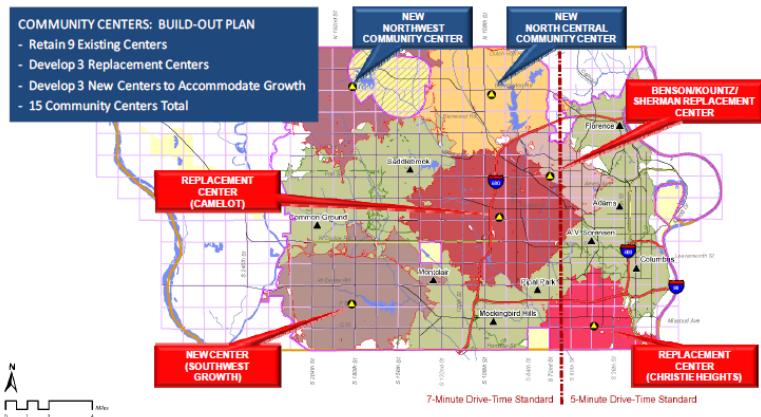
항목	세부 항목
마스터플랜 개요	마스터플랜 목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
시설현황 및 평가	시설개요, 시설보유 비용, 시설비율, 시설 수명 검토
도시성장, 서비스 수요, 직원 예측	도시성장 경향, 도시성장 예측 방법론, 분야별 서비스 수요 예측
전략적 입지계획	서비스 전달 범위와 시설 위치 -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소방서, 경찰서, 공원 관리 시설, 공공 사업시설(도로 유지관리, 하수 유지관리, 종합정비, 기타) 대지 선정 흐름과 선정 과정
시설 요구사항과 예상비용	시설 프로그래밍 방법 - 공간 프로그램, 대지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램 등 예상비용 산출 방법
실행계획	실행계획 주의사항 및 우선사항, 시설별 실행계획 요약

자료출처: BCDM ARCHITECTS·DSA, Inc.(2012) City of Omaha: Public Facilities Master Plan, pp.1-15 요약



[그림 4-1] 커뮤니티 센터 현재 위치와 재배치가 필요한 센터 현황

출처: BCDM ARCHITECTS·DSA, Inc.(2012) City of Omaha: Public Facilities Master Plan, section.4, p.6



[그림 4-2] 커뮤니티 센터의 확장(중장기 재배치 및 신설) 계획안과 서비스 범위

출처: BCDM ARCHITECTS·DSA, Inc.(2012) City of Omaha: Public Facilities Master Plan, section4, p.10

## ② 지역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지원

### □ 기획 지원

- 사업 기획 업무 수행 및 지원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목적, 사업의 주요내용, 사전조사 및 타당성 분석, 사업추진방식, 프로그램, 발주방식,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 부서의 기획 업무를 지원한다.

### □ 계획 지원

- 시설계획 및 관련 기준 검토

입지 여건과 지역의 수요를 분석하여 배치계획과 시설계획의 주안점을 제시하고 시설별로 적용되는 계획 기준과 지침, 인증 사항을 검토한다.

## ③ 지역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 □ 우수 설계자 선정 지원

- 사업 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 제안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특성과 발주 부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발주방식을 제안한다.

- 우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도 연계

국토교통부의 신진건축사 지원 공모사업 등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신진건축사 발굴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 근거와 주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예산 집행 근거가 미약하여 실행되는 사례가 드물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유도한다.

- 사업 발주방식과 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별로 적정한 시공발주 방식을 검토하고,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를 고려하여 사업관리체계, 준공 이후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공공건축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공공건축 사업계획과 시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성과를 평가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건축 지원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구성

#### □ 업무구성 방안

- 업무추진 목표와 업무구성 방향에 따른 기본 업무 구성

지역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앞서 수립한 업무추진 목표와 업무구성의 방향을 바탕으로 기본 업무를 공공건축 정책 지원, 공공건축 조성 지원, 공공건축 관리 업무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정책지원은 지역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건축 조성 지원은 지역에 조성되는 공공건축 사업기획과 사업계획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그림 4-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구성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4] 지자체 기획업무 추진체계

출처: 전영훈 외(2016),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p.172 재편집

##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내용

### □ 국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분담

- 국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분담 방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정책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공건축 관리를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 내에서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현행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수행업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조성 관련 자문에의 응답, 공공건축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구성된다. 연구업무는 공공건축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적용, 공공건축 관련 기준 및 사례 연구, 관련 매뉴얼 개발이 포함된다.

- 국가지역의 센터 운영과 업무분담 사례 분석<sup>40)</sup>

국가와 지역 간 센터 구축, 운영 현황, 업무분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17개의 센터를 대상으로 근거 법에서 명시한 수행업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센터의 업무는 사업, 홍보·상담, 교육, 연구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가와 지역 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국가 센터는 연구, 홍보·상담, 교육, 정보, 정책 순으로, 지역 센터는 사업, 교육, 홍보·상담, 정보 및 연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공공건축 정책지원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정책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건축 매뉴얼 보급하고 홍보·교육, 우수사례 발굴, DB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관련기관 및 지역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 공공건축 조성지원

공공건축 조성 지원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로 국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40) 부록 참조

[표 4-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안)

업무구분	업무내용
공공건축 정책지원	정부 공공건축 정책 지원
공공건축조성지원	법정 업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의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업무	기획지원 설계발주 · 디자인관리
공공건축 관리	연구업무 공공건축기준(계획 · 절차), 관련 제도 연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지원
운영·홍보·대외협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홍보 · 발간, 홈페이지 운영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출처: 연구진 작성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 지역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지원

지역 공공건축의 통합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리, 지자체 시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 지역 공공건축 조성지원

관할 시·군·구의 공공건축 사업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자문에의 응답 업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 지역 공공건축 관리

지역 공공건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우수 설계자 선정 및 지원,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표 4-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안)

구분	업무구성	내용
지역 공공건축 정책지원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지자체 시책 지원 및 지역 내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공공건축 자료 구축 및 관리
지역 공공건축 조성지원	공공건축 기획 지원	사업기획업무 수행 및 지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지원	시설계획 및 관련기준 검토
지역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우수 설계자 선정 지원	우수 설계자 관리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설계의도 구현, 사업발주방식과 관리체계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 사업 모니터링·평가	사업계획과 시행 전 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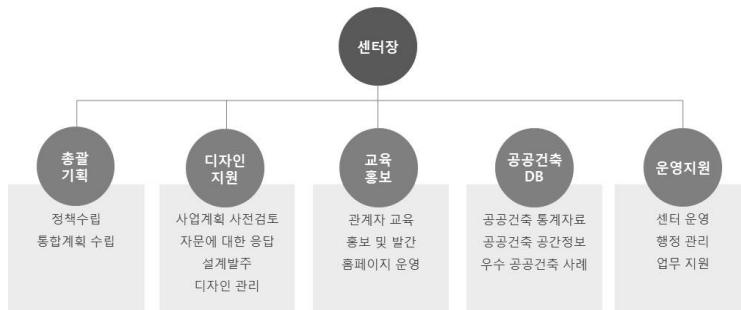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 체계 제안

#### 1) 조직체계

##### □ 조직구성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분담 내용을 기준으로 센터장 및 5개의 전담팀 구성  
총괄기획팀은 지역의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디자인지원팀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설계발주, 디자인 관리를 담당한다. 교육·홍보팀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 교육, 지역 공공건축 홍보 및 자료집 발간, 지역 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한다. 공공건축 DB팀은 지역 내 공공건축 조성과 업무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운영지원팀은 지역 센터운영, 행정(인사, 회계 등) 관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한다.



[그림 4-5]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도

출처: 서수정 외(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p.201 조직도를 참조하여 작성

##### □ 인력구성

- 지역 공공건축 조성 현황과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인력 확보

[표 4-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인력구성(안)

구분	연구직(경력직)1)		행정직	계2)
	박사급	석사급		
센터장	1	-	-	1
총괄기획팀	1	1	-	2
디자인지원팀	1	3	1	5
교육·홍보팀	-	2	1	3
공공건축DB팀	-	1	2	3
운영지원팀			2	2
계	3	7	6	16

1) 연구직은 관련 분야의 유사 경력 산정 기준으로 학위를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의미함

2) 업무에 따라 인력은 조정될 수 있음

자료출처: 서수정 외(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p.203 인력운용(안) 표 참조하여 재작성(항목 및 인력 보완)

## 2) 구축·운영방안

### □ 센터구축 방안 : 운영방식, 예산지원, 설립주체에 따른 대안 검토

- 대안1: 중앙정부 예산 + 지자체 설치 + 지자체 직영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공공건축 현황과 관련 수요 파악에 유리하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에 부담이 있다. 센터운영과 공공건축 조성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가이드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대안2: 지자체 예산 + 지자체 설치 + 지자체 직영(지자체 재량) 또는 위탁

센터 구축 여부는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별 공공건축 수요 및 기타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센터운영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 공공건축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센터의 조기 구축이 가능한 실천력이 높은 대안이다.

- 대안 검토 결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시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고 통합계획 수립,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 수행 시 공공건축 조성·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부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자체 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 4-5]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대안 검토

구분	대안1	대안2
예산	중앙정부	지자체
설립주체	지자체	지자체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지자체 직영 또는 공공기관 위탁
장점	안정적인 센터운영이 가능	지자체 재량, 지자체 센터운영 모델 개발 지역현황 및 수요파악 유리
단점	중앙정부 가이드 필요	지자체장 의존, 지역별 지원 수준의 차이 발생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센터 운영 한계
사례(설립년도)/ 소속기관 운영주체	인천광역자활센터(2004.1)/ 인천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지원팀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4.3)/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

\* 중앙정부 예산지원+중앙정부 설치 대안 제외(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해당)

자료출처: 서수정 외(2014)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 pp.164-166 '지역 주거지원센터 설치 대안' 참조하여 재작성

## □ 센터설립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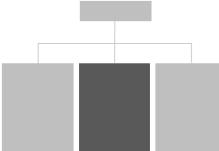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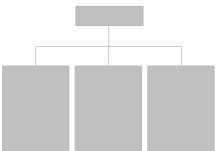
### • 행정조직 내 전담조직

지자체 내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전담조직 구성하여 행정조직 내 센터를 설치하는 형태로 빌주부서 간 협의체계 활용이 용이하며 지역 실정과 수요 파악에 유리한 대안이다.

### • 외부 지원조직

지자체 외부 조직(공공기관, 민간기관)에 센터를 지정하거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대안이다. 공공기관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센터구축이 초기에 실현될 수 있으나 센터를 별도 내부 조직으로 설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추가할 경우 기존 조직 내 위치 설정에 따라 업무 분장과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

[표 4-6]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형태

설립구분	행정조직	외부 지원조직
조직	지자체 행정조직	공공기관
개념도		
장점	기존조직 내 협의체계 활용 지자체 부서 내 설치 지역 수요파악 유리 업무기획 및 추진의 효율성	기존조직 내 협의체계 활용 공기업·지방공사 직영 또는 위탁 센터구축 조기화 가능
단점	빌주주체와 센터 일원화 문제	기관 내 조직위치 (별도 부서 마련 또는 관련부서에 추가) 업무분담 필요
센터사례(설립년도)	서울한옥지원센터(2015.9)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4.3)
소속기관	서울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자료출처: 연구진 작성

## • 유사 센터 설치를 위한 자치법규 사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제13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축·토목·설비·조경 등의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통합정보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정책 및 연구 지원
  2. 기본 및 실행 계획의 수립, 재정립 및 변경
  3. 평가시스템의 개발, 측정 및 개선대책 수립
  4.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
  5. 제7조제4항 관련 검토
  6. 중앙부처 등 관련 제안공모 지원
  7. 통합관리 관련 검토
  8.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도시재생본부'로 한다.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필요할 경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3) 운영방안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센터의 운영체계

- 중앙부처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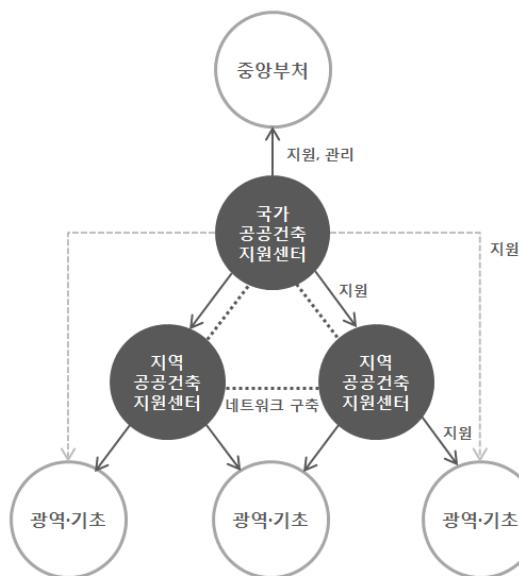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종장기 추진방안으로 기반구축단계, 센터 정착단계, 지역 센터 확대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sup>41)</sup>

- 국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광역·기초 단위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간 정책지원 논의, 교육 및 홍보 확대, DB구축 등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협업 체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행정담당자, 실무자, 전문가 등 공공건축 조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4-6]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체계(안)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광역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운영방안 검토 자료(2016.09.12.) 참조하여 재작성

41) 서수정(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40

##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 개정 방향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조항 개정 및 신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에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분담을 위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되,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지정권자는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2) 개정 내용

#### □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 확대 : 시행령 제21조 개정

##### •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에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조문 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국토연구원과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제외하였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을 위해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나, 다,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 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 5호 <b>나</b> 목과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운영 사항 규정 : 시행령 제21조의2 신설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조항 신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을 법제화하여 관할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운영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세부 업무와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업무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p><b>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제 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p> <p>2.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제 24조제2항에 따른 업무</p> <p>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세부 업무,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센터의 세부 업무와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의 건축설계용역 현황<sup>42)</sup>을 보면 지자체의 공공건축 사업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 사업<sup>43)</sup>의 비율은 2015년 4.2%, 2016년 4.7%에 그치며, 기초 지자체로 대상을 한정하면 그 비율은 2015년 3.5%, 2016년 4.2%로 더욱 낮아진다. 지자체 공공건

42) 부록1 참조

43)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축 지원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업무 범위에 한정하지 말고 각 지자체 현황을 고려하여 업무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 유사입법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균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분담 관련 입법례

- 국가기관과 지역 기관을 구분하여 운영 :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균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1.~7.(생략)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6.(생략)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6.(생략)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5장 결론

- 
1. 연구 성과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 

## 1. 연구 성과

각 지자체는 행정청사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공공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공건축 관리지원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공공건축 관리 체계 구축 방향과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분석 및 주요 쟁점 도출

1980~90년대 이후 공공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에 약 24,000동, 1990년대에 46,000동, 2000년대에 49,000동이 조성되었다. 공사계약 실적에서 지자체 발주 사업은 2015년 전체 건수 중 33.19%, 계약금액의 8.58%를 차지하며, 공공부문(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자체 발주 공사계약 건수는 68.9%, 계약금액의 33.06%를 차지한다. 지자체 공공건축은 양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건축 공사계약 실적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공공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 공공건축의 품질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공건축은 무엇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

이며 삶의 장소에 인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 연령층과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공공건축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와 품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건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낮거나 지역 수요에 맞지 않는 시설이 공급되고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수급·관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산, 규모, 프로그램 등의 사업계획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주민 수요와 장소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질 낮은 공공건축이 양산되고 있다.

#### □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 분석을 통한 공공건축 지원조직 필요성 도출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사업 기획은 총무,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 노인·보건·장애인, 자치행정 등 해당 시설을 담당하고 운영하는 개별 부서에서 담당한다.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 담당 부서와 협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 담당 부서가 발주 단계부터 개입하여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설계예정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계공모를 원활하게 운영할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2008년 「건축기본법」 시행 이후 모든 광역 지자체와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 공공건축 품질 향상에 대한 인식 부재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 6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사전검토, 자문응답,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통해 지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적 지원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받은 단일 센터로써 업무가 과중되고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세종시 공공건축추진단, 서울시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도시공간개선단,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의 조직이 신설되어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의 인력 구성과 예산, 수행 업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타 부서와 업

무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분업적 행정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건축의 기획·조성·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5-1] 일반적인 지자체 공공건축 조직의 문제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조직 현황과 문제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 개별 부서에 의한 사업 기획	☞ 공공건축 기획조성관리를 통합적 시각에서 조정하는 조직 필요
✓ 수요와 공급 불일치, 지역 불균형	
✓ 비전문가가 사업계획 수립	☞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 전문가가 개입하여 예산, 규모, 프로그램 검토
✓ 예산, 규모, 프로그램 계획 부실	
✓ 공모 준비 운영 미숙, 디자인 관리 역량 부족	☞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우수 설계자 선정에 한계, 설계의도 구현 실패	☞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제외 공공사업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는 건축가 조직 필요(ex.공공건축가)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향 제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원칙과 업무 추진 목표, 업무 구성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공공건축 지원 조직의 설립과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내에서 공공건축 건립과 관련된 다수의 부서와 원활하게 협업하기 위해서는 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모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정책 방향과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된 지자체에 한해 선별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면 센터 설립 사례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 구분 없이 설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영주시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추진 목표는 지자체 공공건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 차원의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지자체 공공건축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을 할 것, 지역 여건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수준 높은 공공건축을 실현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 조성의 전 과정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와 조직 체계 제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업무 추진 목표에 따라 ①지자체 공공건축의 통합

적 접근을 위해서는 공공건축 테이터베이스 구축, 통합계획 수립, ②지역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공건축 기획 및 계획 지원, ③지역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수 설계자 선정 지원, 설계의도 구현과 관리체계 마련, 공공건축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위의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센터장 이하 총괄 기획, 디자인 지원, 교육·홍보,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운영 지원 등 5개 팀으로 구성하는 조직 체계를 제안하였다.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 시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조직의 형태보다 지자체 행정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각각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더라도 국가와 지역, 서로 다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 부처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 공공건축 조성 지원, 교육 및 홍보 현황, 특히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제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를 개정하는 한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표 5-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 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 5호 나목과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p><b>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의 요청에 있는 경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제 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li> <li>2.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제 24조제2항에 따른 업무</li> <li>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세부 업무,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 □ 연구 한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공공건축 정책 방향,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 관련 조직 담당자의 역량, 지자체 사업에 관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관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성 현황,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조직 현황과 업무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연구기간이 한정되어 지자체 간 상이한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공공건축 지원조직 설립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제안하였으며, 자체 특성을 고려한 업무 구성, 업무의 대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 향후 과제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

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 공공건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역 공공건축의 품질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건축을 조성·관리하는 조직의 역량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며, 전문적인 지원 조직 필요하다. 전문가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의 공공건축이 지역 사회의 중요 요소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공공건축이 지어져야 한다.

앞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운영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규모와 유형,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 공무원 역량과 전문가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업무 범위와 절차, 조직 구성 방안을 검토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식, 자료 공유,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References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권영상 외(2013), 「광양읍 공공 공간·공공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광양시.
- 김태형(2017), “공공건축가 제도가 나아갈 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지역을 변화시키다」, p.10-11.
- 박계현(2012), “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의 한 예를 보여준 영주시”, SPACE Magazine, [http://www.vmspace.com/2008\\_re/kor/sub\\_news\\_view.asp?idx=5889](http://www.vmspace.com/2008_re/kor/sub_news_view.asp?idx=5889)(2017.5.22.)
- 박영민(2012),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박영민·이세구(201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서울연구원.
- 박인석(2017), 「건축이 바꾼다」, 서울: 마티, pp.91-92.
- 방경식(2011),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 방재성(201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충청남도.
- 백승만(2007),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수정 외(201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01:203:240.
- 서수정 외(2014),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64-166.
- 이규철·임유경·김혜련·이상아(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상민·차주영·임유경·김영현(2008),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3.
- 임유경 외(2016),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 전영훈 외(2016),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p.89:172.

주재홍·윤형호(2016),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차주영 외(2011),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조준배·박선영(2014),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 1-영주시의 시도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최태림(2016),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BCDM ARCHITECTS·DSA, Inc.(2012), City of Omaha: Public Facilities Master Plan,  
pp.1-15.

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자료(2016.9.7.).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광역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운영방안 검토 자료(2016.9.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토교통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국토교통부(2016),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도시공간개선단(2016),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서울건축포럼.  
도시공간개선단(2017), 2017 주요 업무계획,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2015), 「지방공공투자사업 관리 개선방향 워크숍 자료집」.  
서울특별시(2014), “박원순 시장, 2기 시정 실행력 뒷받침 ‘조직개편’”, 2014.10.10.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201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 마무리!”, 2017.11.15. 보도자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추진단(2017), ‘17년도 공공건축사업 추진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16), “지방자치회관 건립 당선작 발표”, 2016.11.21. 보도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7),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17.5.18. 보도자료.  
충청남도(200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설립”, 2009.2.23. 보도자료.  
행정자치부(20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1), “건설청, 세종시 본격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 2011.6.21. 보도자료.

---

# Establishing Public Building Center at Local-level

SUMMARY

Lim, Yookyoung  
Byun, Nahyang  
Park, Seok-hwan

---

Each municipality constructs and manages various public facilities such as administrative building, community center, art gallery, library, daycare center,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sports facilities. The scope of public services has gradually expan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s the demands for the balanced supply and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have increas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goal of management and support work of public facilities in the municipality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construction of local public building center. Also, we tried to suggest a way to share the role of national – local public building center.

Despite the increase of public facilities and the importance of quality, municipal public buildings still has many problems; In some municipalities, the supply level of public service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other regions. Some public facilities do not meet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regional equity can not be secured. Budget, scale, and programs are often inadequate, resulting in low-quality public building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residents and the context of the site.

In most metropolitan and local municipalities, public building project planning is handled directly by departments responsible for and managing women, families, culture, sports, tourism, the elderly, health, and the disabled, not by planning or construction professionals. Some municipalities, such as Asan City in Chungcheongnam-do, have been working wit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construction in the early stages of planning. However, in most municipalities, the public building department intervenes only after the ordering stage and takes charge of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The plan is to be built by a non-expert.

It is noteworthy that some municipalities have established an organization to carry out public construction work and consult with other departments of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construction and to make excellent public buildings ; Yeongju city construction management team, Sejong city public construction team, Seoul city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urban space improvement unit, Chungnam public design center. Despit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improve their quality, the legal regulations that define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budget and missions of these organizations are insufficient and they are having difficulty in cooperating with other departments.

After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s public building policy, we proposed the principles, main task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building local public building center.

The first principle is to establish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local public work support organizations. The second is not to establish mandatory centers in all municipalities, but to select municipalities with competence and will. The last is to allow any municipalities to apply for the designation of a public building center, without distinction of metropolitan or local authority.

The goals of the local public building center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take an integrated approach to comprehensive planning and management of all municipal public buildings, rather than approach by facility.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public building plan reflecting local conditions and user demand. The last is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entire process of public construction to realize high-quality public building and improve the local environment.

In order to carry out the above tasks, it was suggested that the local public building center should be composed of five teams including general planning, design support,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database, center operation and support. We proposed that the municipality should invest the budget. By establishing a local public construction support center, the local government budget will be used more efficiently, the city's competitiveness will be enhanced, and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will increase. Regarding the type of organization, it would be advantageous to operate as a local government sub-organization rather than an external support organization.

Even if each public building center is established in the metropolitan or local level, it is important to cooperate with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public building centers. The ministries, national public and local public building centers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They need to share policy,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support program, education programs, and especially public building database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hould constantly monitor the operation of local public construction support center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 to establish local public support center.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Services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municipality can be designated as a public construction support center. In addition, a provision stipulating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main tasks of the local public building center should be established(Article 2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municipalities to establish and operate public building centers would have to carry out in-depth tasks. The scope, procedur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center should be review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ze and type of the proj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the demand of the residents, and the possibility of civil servant capacity and expert particip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public construction support centers, researches on the role sharing, cooperation method, data sharing and monitoring methods of the center should be also followed.

**Keywords :**

Public Building,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Public Building Center, Local Public Building Center

# 부록 1. 지자체 건축설계용역

Appendix 1

## 계약현황 2015~2016

### 1. 자료 개요

- 자료 출처: 조달정보개발포털( <http://data.g2b.go.kr:8275/pt/main/index.do> )
- 사용 자료 : 2015~16년도 건축설계용역 계약 현황
- 분석 목적 : 지자체의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하여 응답 등) 대상 파악

### 2. 서울특별시

[부록 표 1-1] 서울특별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특별시	66	374,058,415	16	24%	22	33%	5	8%	6	9%	17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22	12,495,629	15	68%	5	23%	2	9%	0	0%	0	0%
서울특별시 강동구	12	59,702,500	4	33%	5	42%	2	17%	0	0%	1	8%
서울특별시 강북구	7	55,329,000	1	14%	5	71%	0	0%	0	0%	1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6	9,857,500	4	67%	2	33%	0	0%	0	0%	0	0%
서울특별시 관악구	26	32,734,551	8	31%	15	58%	1	4%	2	8%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8	39,099,398	3	38%	2	25%	2	25%	1	13%	0	0%
서울특별시 구로구	34	23,339,828	19	56%	11	32%	3	9%	0	0%	1	3%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특별시 금천구	8	10,737,500	6	75%	2	25%	0	0%	0
서울특별시 노원구	26	27,636,308	9	35%	14	54%	1	4%	2	8%	0	0%
서울특별시 도봉구	20	15,020,050	11	55%	8	40%	1	5%	0	0%	0	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8	26,693,330	9	50%	7	39%	0	0%	2	11%	0	0%
서울특별시 동작구	10	21,940,283	2	20%	7	70%	1	10%	0	0%	0	0%
서울특별시 마포구	8	35,945,250	6	75%	1	13%	0	0%	0	0%	1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1	13,900,000	6	55%	5	45%	0	0%	0	0%	0	0%
서울특별시 서초구	24	68,732,624	15	63%	5	21%	2	8%	0	0%	2	8%
서울특별시 성동구	34	13,689,701	18	53%	15	44%	1	3%	0	0%	0	0%
서울특별시 성북구	39	15,687,282	21	54%	17	44%	0	0%	1	3%	0	0%
서울특별시 송파구	12	34,374,433	5	42%	6	50%	0	0%	0	0%	1	8%
서울특별시 양천구	26	16,868,365	16	62%	9	35%	0	0%	1	4%	0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73,858,333	4	44%	4	44%	0	0%	0	0%	1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10	11,826,700	8	80%	1	10%	1	10%	0	0%	0	0%
서울특별시 은평구	15	22,963,099	6	40%	8	53%	0	0%	1	7%	0	0%
서울특별시 종로구	12	39,441,708	4	33%	6	50%	0	0%	2	17%	0	0%
서울특별시 중구	15	53,179,473	4	27%	9	60%	0	0%	1	7%	1	7%
서울특별시 중랑구	5	21,945,080	3	60%	1	20%	1	20%	0	0%	0	0%
소계	483	75,392,006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2] 서울특별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특별시	93	163,513,039	15	16%	52	56%	8	9%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9,833,044	12	75%	3	19%	1	6%	0	0%	0	0%
서울특별시 강동구	15	41,502,461	5	33%	6	40%	3	20%	0	0%	1	7%
서울특별시 강북구	5	78,060,200	1	20%	2	40%	0	0%	2	40%	0	0%
서울특별시 강서구	4	14,206,250	1	25%	3	75%	0	0%	0	0%	0	0%
서울특별시 관악구	47	18,187,862	29	62%	14	30%	3	6%	1	2%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13	92,059,846	6	46%	2	15%	3	23%	0	0%	2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24	29,746,507	12	50%	10	42%	1	4%	0	0%	1	4%
서울특별시 금천구	10	57,566,900	4	40%	4	40%	1	10%	0	0%	1	10%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특별시 노원구	18	37,501,886	4	22%	10	56%	3	17%	1	6%	0	0%
서울특별시 도봉구	20	28,809,100	5	25%	10	50%	4	20%	1	5%	0	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3	63,778,662	20	61%	11	33%	1	3%	0	0%	1	3%
서울특별시 동작구	24	19,904,576	13	54%	10	42%	0	0%	1	4%	0	0%
서울특별시 마포구	18	49,210,011	10	56%	4	22%	2	11%	0	0%	2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	26,057,421	12	63%	4	21%	2	11%	1	5%	0	0%
서울특별시 서초구	25	63,782,764	4	16%	16	64%	3	12%	0	0%	2	8%
서울특별시 성동구	17	39,804,294	4	24%	9	53%	1	6%	3	18%	0	0%
서울특별시 성북구	31	48,698,065	9	29%	20	65%	0	0%	1	3%	1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	62,113,650	5	25%	9	45%	2	10%	2	10%	2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35	21,614,923	19	54%	14	40%	1	3%	1	3%	0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5	35,194,395	14	56%	8	32%	1	4%	1	4%	1	4%
서울특별시 용산구	16	27,872,229	5	31%	10	63%	0	0%	1	6%	0	0%
서울특별시 은평구	19	31,883,421	3	16%	13	68%	2	11%	1	5%	0	0%
서울특별시 종로구	31	75,486,540	10	32%	16	52%	2	6%	1	3%	2	6%
서울특별시 중구	23	125,071,497	4	17%	15	65%	1	4%	0	0%	3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17	48,196,036	5	29%	9	53%	1	6%	1	6%	1	6%
소계	618	62,680,789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3. 부산광역시

[부록 표 1-3] 부산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부산광역시	29	178,178,308	5	17%	13	45%	4	14%	1	3%	6	21%
부산광역시 강서구	4	11,935,000	2	50%	2	5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금정구	9	28,023,889	4	44%	4	44%	0	0%	1	11%	0	0%
부산광역시 기장군	15	24,179,260	7	47%	7	47%	0	0%	1	7%	0	0%
부산광역시 남구	7	35,879,103	3	43%	3	43%	0	0%	1	14%	0	0%
부산광역시 동구	9	15,448,656	5	56%	3	33%	1	11%	0	0%	0	0%
부산광역시 동래구	2	57,098,000	1	50%	0	0%	0	0%	1	50%	0	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3	20,055,265	7	54%	4	31%	2	15%	0	0%	0	0%
부산광역시 북구	9	40,644,482	3	33%	5	56%	0	0%	0	0%	1	11%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부산광역시 사상구	15	38,086,818	9	60%	4	27%	0	0%	1	7%	1	7%
부산광역시 사하구	20	35,704,000	10	50%	9	45%	0	0%	0	0%	1	5%
부산광역시 서구	18	17,773,061	7	39%	9	50%	2	11%	0	0%	0	0%
부산광역시 수영구	15	31,897,741	9	60%	4	27%	1	7%	0	0%	1	7%
부산광역시 연제구	6	8,476,250	4	67%	2	33%	0	0%	0	0%	0	0%
부산광역시 영도구	8	10,871,250	4	50%	4	5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중구	12	28,193,298	4	33%	7	58%	0	0%	1	8%	0	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	29,768,851	6	38%	8	50%	0	0%	2	13%	0	0%
소계	207	48,294,36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부록 표 1-4] 부산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부산광역시	24	56,619,792	3	13%	12	50%	6	25%	2	8%	1	4%
부산광역시 강서구	6	90,179,344	1	17%	2	33%	1	17%	2	33%	0	0%
부산광역시 금정구	14	35,400,755	5	36%	6	43%	2	14%	0	0%	1	7%
부산광역시 기장군	26	36,845,495	14	54%	7	27%	3	12%	0	0%	2	8%
부산광역시 남구	7	74,232,571	1	14%	5	71%	0	0%	0	0%	1	14%
부산광역시 동구	12	24,117,396	2	17%	10	83%	0	0%	0	0%	0	0%
부산광역시 동래구	6	12,625,400	2	33%	4	67%	0	0%	0	0%	0	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5	40,034,019	4	27%	8	53%	0	0%	3	20%	0	0%
부산광역시 북구	5	17,761,332	2	40%	3	6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사상구	13	22,122,081	5	38%	7	54%	0	0%	1	8%	0	0%
부산광역시 사하구	17	25,952,401	7	41%	7	41%	2	12%	1	6%	0	0%
부산광역시 서구	14	9,967,571	7	50%	7	5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수영구	13	50,082,884	6	46%	6	46%	0	0%	0	0%	1	8%
부산광역시 연제구	12	13,067,532	8	67%	3	25%	1	8%	0	0%	0	0%
부산광역시 영도구	7	28,158,571	3	43%	3	43%	0	0%	1	14%	0	0%
부산광역시 중구	13	13,692,381	7	54%	6	46%	0	0%	0	0%	0	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5	59,814,512	6	24%	13	52%	1	4%	3	12%	2	8%
소계	229	37,005,835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4. 대전광역시

[부록 표 1-5] 대전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대전광역시	20	58,160,332	6	30%	9	45%	2	10%	2	10%	1	5%
대전광역시 대덕구	5	58,579,616	2	40%	2	40%	0	0%	0	0%	1	20%
대전광역시 동구	8	39,495,949	6	75%	0	0%	1	13%	0	0%	1	13%
대전광역시 서구	11	16,346,800	8	73%	2	18%	1	9%	0	0%	0	0%
대전광역시 유성구	16	6,737,208	13	81%	3	19%	0	0%	0	0%	0	0%
대전광역시 중구	8	10,577,875	4	50%	4	50%	0	0%	0	0%	0	0%
소계	68	31,533,903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6] 대전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대전광역시	22	1,118,281,990	11	50%	6	27%	3	14%	1	5%	1	5%
대전광역시 대덕구	8	79,070,000	6	75%	2	25%	0	0%	0	0%	0	0%
대전광역시 동구	16	93,146,070	14	88%	2	13%	0	0%	0	0%	0	0%
대전광역시 서구	16	494,781,140	12	75%	3	19%	0	0%	0	0%	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22	506,716,600	16	73%	5	23%	0	0%	0	0%	1	5%
대전광역시 중구	6	45,885,000	5	83%	1	17%	0	0%	0	0%	0	0%
소계	90	2,337,880,800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5. 인천광역시

[부록 표 1-7] 인천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인천광역시	9	1,316,705,538	0	0%	3	33%	1	11%	1	11%	4	44%
인천광역시 강화군	17	35,604,304	5	29%	7	41%	4	24%	1	6%	0	0%
인천광역시 계양구	3	165,682,233	0	0%	0	0%	0	0%	2	67%	1	33%
인천광역시 남구	13	56,939,682	5	38%	6	46%	0	0%	0	0%	2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7	12,071,294	5	71%	2	29%	0	0%	0	0%	0	0%
인천광역시 동구	6	23,078,500	2	33%	3	50%	1	17%	0	0%	0	0%
인천광역시 부평구	10	51,945,824	4	40%	3	30%	0	0%	3	30%	0	0%
인천광역시 서구	5	9,015,800	3	60%	2	4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연수구	10	39,788,200	5	50%	3	30%	1	10%	0	0%	1	10%
인천광역시 응진군	20	31,816,576	10	50%	5	25%	4	20%	1	5%	0	0%
인천광역시 중구	18	15,125,720	7	39%	11	61%	0	0%	0	0%	0	0%
소계	118	133,787,028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8] 인천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인천광역시	17	32,946,133	5	29%	10	59%	0	0%	2	12%	0	0%
인천광역시 강화군	12	17,610,447	5	42%	6	50%	1	8%	0	0%	0	0%
인천광역시 계양구	2	144,735,290	0	0%	0	0%	1	50%	1	50%	0	0%
인천광역시 남구	21	29,595,847	10	48%	9	43%	0	0%	1	5%	1	5%
인천광역시 남동구	11	16,207,865	7	64%	3	27%	1	9%	0	0%	0	0%
인천광역시 동구	13	19,319,930	5	38%	7	54%	1	8%	0	0%	0	0%
인천광역시 부평구	12	9,249,417	7	58%	5	42%	0	0%	0	0%	0	0%
인천광역시 서구	17	43,079,074	9	53%	5	29%	1	6%	1	6%	1	6%
인천광역시 연수구	8	34,510,663	3	38%	3	38%	2	25%	0	0%	0	0%
인천광역시 응진군	33	13,329,079	16	48%	16	48%	1	3%	0	0%	0	0%
인천광역시 중구	23	18,211,887	11	48%	10	43%	1	4%	1	4%	0	0%
소계	169	24,201,149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6. 대구광역시

[부록 표 1-9] 대구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대구광역시	25	38,612,644	12	48%	7	28%	2	8%	4	16%	0	0%
대구광역시 남구	12	19,813,500	6	50%	5	42%	1	8%	0	0%	0	0%
대구광역시 달서구	18	76,603,005	4	22%	9	50%	1	6%	1	6%	3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5	32,614,768	2	40%	1	20%	2	40%	0	0%	0	0%
대구광역시 동구	8	45,483,586	1	13%	4	50%	2	25%	1	13%	0	0%
대구광역시 북구	9	32,788,000	2	22%	5	56%	1	11%	1	11%	0	0%
대구광역시 서구	6	57,107,930	0	0%	4	67%	1	17%	1	17%	0	0%
대구광역시 수성구	5	20,783,646	0	0%	5	100%	0	0%	0	0%	0	0%
대구광역시 중구	2	96,700,000	0	0%	0	0%	2	100%	0	0%	0	0%
소계	90	44,932,58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10] 대구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대구광역시	37	125,206,671	12	32%	15	41%	4	11%	1	3%	5	14%
대구광역시 남구	11	57,908,547	2	18%	6	55%	1	9%	1	9%	1	9%
대구광역시 달서구	7	21,677,000	3	43%	3	43%	1	14%	0	0%	0	0%
대구광역시 달성군	2	53,515,750	0	0%	1	50%	1	50%	0	0%	0	0%
대구광역시 동구	15	38,600,428	3	20%	8	53%	2	13%	2	13%	0	0%
대구광역시 북구	13	16,882,512	7	54%	5	38%	1	8%	0	0%	0	0%
대구광역시 서구	13	44,989,680	3	23%	6	46%	1	8%	3	23%	0	0%
대구광역시 수성구	7	25,894,787	1	14%	5	71%	1	14%	0	0%	0	0%
대구광역시 중구	3	80,776,620	0	0%	1	33%	1	33%	1	33%	0	0%
소계	108	67,919,90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7. 광주광역시

[부록 표 1-11] 광주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광주광역시	22	73,035,867	9	41%	9	41%	2	9%	0	0%	2	9%		
광주광역시 광산구	5	12,569,688	2	40%	3	60%	0	0%	0	0%	0	0%		
광주광역시 남구	7	17,517,214	3	43%	4	57%	0	0%	0	0%	0	0%		
광주광역시 동구	14	15,450,417	8	57%	6	43%	0	0%	0	0%	0	0%		
광주광역시 북구	4	24,594,571	2	50%	1	25%	1	25%	0	0%	0	0%		
광주광역시 서구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52	40,518,118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12] 광주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광주광역시	16	48,840,022	7	44%	3	19%	3	19%	2	13%	1	6%		
광주광역시 광산구	5	83,695,678	0	0%	2	40%	2	40%	0	0%	1	20%		
광주광역시 남구	16	24,914,911	5	31%	9	56%	2	13%	0	0%	0	0%		
광주광역시 동구	17	8,660,035	13	76%	4	24%	0	0%	0	0%	0	0%		
광주광역시 북구	5	61,913,950	1	20%	1	20%	2	40%	1	20%	0	0%		
광주광역시 서구	7	23,876,447	3	43%	4	57%	0	0%	0	0%	0	0%		
소계	66	33,673,982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8. 울산광역시

[부록 표 1-13] 울산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울산광역시	6	89,810,430	2	33%	0	0%	2	33%	1	17%	1	17%		
울산광역시 남구	2	107,803,460	0	0%	1	50%	0	0%	1	50%	0	0%		
울산광역시 동구	10	13,540,990	7	70%	2	20%	1	10%	0	0%	0	0%		
울산광역시 북구	1	207,003,000	0	0%	0	0%	0	0%	1	100%	0	0%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울산광역시 울주군	5	157,518,114	0	0%	1	20%	1	20%	2	40%	1	20%		
울산광역시 중구	8	153,530,458	3	38%	1	13%	2	25%	1	13%	1	13%		
소계	32	97,272,395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14] 울산광역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울산광역시	13	504,896,341	2	15%	5	38%	0	0%	1	8%	5	38%		
울산광역시 남구	3	162,841,400	0	0%	0	0%	2	67%	0	0%	1	33%		
울산광역시 동구	10	47,848,832	4	40%	2	20%	2	20%	2	20%	0	0%		
울산광역시 북구	4	57,114,950	0	0%	2	50%	1	25%	1	25%	0	0%		
울산광역시 울주군	10	117,287,883	0	0%	4	40%	3	30%	0	0%	3	30%		
울산광역시 중구	3	79,038,883	0	0%	0	0%	2	67%	1	33%	0	0%		
소계	43	213,235,35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9. 세종특별자치시

[부록 표 1-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세종특별자치시	41	44,542,963	15	37%	23	56%	0	0%	2	5%	1	2%		
소계	41	44,542,963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1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세종특별자치시	47	63,685,334	16	34%	24	51%	3	6%	0	0%	4	9%		
소계	47	63,685,33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0. 강원도

[부록 표 1-17] 강원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강원도	6	58,269,500	3	50%	2	33%	0	0%	0	0%	1
강원도 강릉시	5	85,391,064	0	0%	2	40%	2	40%	0	0%	1	20%		
강원도 고성군	32	17,485,182	13	41%	17	53%	1	3%	1	3%	0	0%		
강원도 동해시	1	111,1764,900	0	0%	0	0%	0	0%	1	100%	0	0%		
강원도 삼척시	32	11,494,188	20	63%	11	34%	1	3%	0	0%	0	0%	0	0%
강원도 속초시	11	22,629,364	2	18%	8	73%	1	9%	0	0%	0	0%	0	0%
강원도 양구군	22	23,420,846	10	45%	10	45%	2	9%	0	0%	0	0%		
강원도 양양군	13	42,277,077	4	31%	8	62%	0	0%	0	0%	1	8%		
강원도 영월군	30	18,279,912	14	47%	14	47%	1	3%	1	3%	0	0%		
강원도 원주시	54	11,549,014	34	63%	19	35%	1	2%	0	0%	0	0%		
강원도 인제군	27	44,960,797	12	44%	10	37%	3	11%	0	0%	2	7%		
강원도 정선군	28	23,912,896	10	36%	13	46%	5	18%	0	0%	0	0%		
강원도 철원군	21	22,661,213	6	29%	12	57%	3	14%	0	0%	0	0%		
강원도 춘천시	48	102,750,068	25	52%	16	33%	6	13%	0	0%	1	2%		
강원도 태백시	22	24,769,100	11	50%	8	36%	1	5%	2	9%	0	0%		
강원도 평창군	37	21,086,883	12	32%	24	65%	0	0%	0	0%	1	3%		
강원도 홍천군	63	12,059,311	40	63%	21	33%	2	3%	0	0%	0	0%		
강원도 화천군	4	91,710,585	1	25%	1	25%	1	25%	0	0%	1	25%		
강원도 횡성군	21	30,694,681	10	48%	9	43%	0	0%	1	5%	1	5%		
소계	477	30,794,965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18] 강원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강원도	13	50,848,535	8	62%	3	23%	1	8%	0	0%	1
강원도 강릉시	23	15,743,629	11	48%	11	48%	1	4%	0	0%	0	0%		
강원도 고성군	32	41,637,631	14	44%	14	44%	2	6%	1	3%	1	3%		
강원도 동해시	6	81,978,987	0	0%	3	50%	1	17%	2	33%	0	0%		
강원도 삼척시	24	20,367,523	12	50%	10	42%	1	4%	1	4%	0	0%		
강원도 속초시	22	41,538,670	12	55%	8	36%	1	5%	0	0%	1	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강원도 양구군	11	28,621,766	4	36%	5	45%	1	9%	1	9%	0	0%		
강원도 양양군	13	21,011,785	4	31%	8	62%	1	8%	0	0%	0	0%		
강원도 영월군	25	67,577,066	5	20%	12	48%	3	12%	2	8%	3	12%		
강원도 원주시	36	16,138,847	14	39%	22	61%	0	0%	0	0%	0	0%		
강원도 인제군	29	15,855,015	13	45%	15	52%	0	0%	1	3%	0	0%		
강원도 정선군	18	41,513,791	5	28%	11	61%	1	6%	0	0%	1	6%		
강원도 철원군	34	42,833,200	8	24%	23	68%	0	0%	2	6%	1	3%		
강원도 춘천시	33	24,702,282	15	45%	14	42%	1	3%	3	9%	0	0%		
강원도 태백시	21	45,959,988	6	29%	9	43%	3	14%	2	10%	1	5%		
강원도 평창군	31	33,490,248	11	35%	16	52%	2	6%	1	3%	1	3%		
강원도 홍천군	54	12,057,594	27	50%	25	46%	2	4%	0	0%	0	0%		
강원도 화천군	20	41,239,263	4	20%	14	70%	1	5%	0	0%	1	5%		
강원도 횡성군	22	26,109,364	12	55%	8	36%	0	0%	1	5%	1	5%		
소계	467	31,350,553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1. 경기도

[부록 표 1-19] 경기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기도	29	223,604,763	14	48%	10	34%	1	3%	0	0%	4	14%		
경기도 가평군	9	67,283,159	4	44%	3	33%	1	11%	0	0%	1	11%		
경기도 고양시	27	27,600,957	14	52%	12	44%	0	0%	0	0%	1	4%		
경기도 과천시	8	11,507,500	4	50%	4	50%	0	0%	0	0%	0	0%		
경기도 광명시	3	299,984,077	0	0%	1	33%	1	33%	0	0%	1	33%		
경기도 광주시	5	10,012,000	2	40%	3	60%	0	0%	0	0%	0	0%		
경기도 구리시	9	176,528,802	2	22%	5	56%	0	0%	0	0%	2	22%		
경기도 군포시	11	197,693,000	3	27%	6	55%	0	0%	0	0%	2	18%		
경기도 김포시	8	78,706,375	3	38%	4	50%	0	0%	0	0%	1	13%		
경기도 남양주시	9	73,774,546	2	22%	4	44%	0	0%	2	22%	1	11%		
경기도 동두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도 부천시	8	100,293,525	1	13%	6	75%	0	0%	0	0%	1	13%		
경기도 성남시	13	304,287,757	0	0%	4	31%	4	31%	0	0%	5	38%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기도 수원시	12	546,539,548	2	17%	2	17%	3	25%	3	25%	2	17%		
경기도 시흥시	13	289,308,611	1	8%	4	31%	1	8%	1	8%	6	46%		
경기도 안산시	20	96,810,652	6	30%	9	45%	2	10%	1	5%	2	10%		
경기도 안성시	7	18,340,611	4	57%	2	29%	1	14%	0	0%	0	0%		
경기도 안양시	16	17,980,025	7	44%	8	50%	1	6%	0	0%	0	0%		
경기도 양주시	6	193,409,107	1	17%	3	50%	1	17%	0	0%	1	17%		
경기도 양평군	30	69,011,855	12	40%	17	57%	0	0%	0	0%	1	3%		
경기도 여주시	4	66,598,840	0	0%	2	50%	1	25%	1	25%	0	0%		
경기도 연천군	15	16,504,205	7	47%	6	40%	2	13%	0	0%	0	0%		
경기도 오산시	2	55,064,205	0	0%	1	50%	1	50%	0	0%	0	0%		
경기도 용인시	4	370,211,250	0	0%	1	25%	0	0%	1	25%	2	50%		
경기도 의왕시	10	12,663,777	4	40%	6	60%	0	0%	0	0%	0	0%		
경기도 의정부시	10	116,414,448	5	50%	2	20%	0	0%	2	20%	1	10%		
경기도 이천시	14	20,046,629	9	64%	4	29%	0	0%	1	7%	0	0%		
경기도 파주시	21	53,013,547	7	33%	13	62%	0	0%	0	0%	1	5%		
경기도 평택시	2	81,158,990	0	0%	0	0%	1	50%	1	50%	0	0%		
경기도 포천시	24	48,922,458	14	58%	8	33%	1	4%	0	0%	1	4%		
경기도 하남시	3	45,218,787	1	33%	1	33%	1	33%	0	0%	0	0%		
경기도 화성시	49	86,849,881	16	33%	24	49%	3	6%	0	0%	6	12%		
소계	401	112,499,903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부록 표 1-20] 경기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기도	37	64,334,767	10	27%	19	51%	1	3%	2	5%	3	8%		
경기도 가평군	11	73,154,118	5	45%	4	36%	0	0%	0	0%	1	9%		
경기도 고양시	17	44,788,339	7	41%	7	41%	1	6%	0	0%	1	6%		
경기도 과천시	6	18,104,958	1	17%	5	83%	0	0%	0	0%	0	0%		
경기도 광명시	6	150,093,952	3	50%	3	50%	0	0%	1	17%	2	33%		
경기도 광주시	22	8,946,864	8	36%	3	14%	1	5%	0	0%	0	0%		
경기도 구리시	11	87,797,909	2	18%	4	36%	0	0%	0	0%	2	18%		
경기도 군포시	18	39,450,819	4	22%	11	61%	3	17%	2	11%	0	0%		
경기도 김포시	20	81,245,508	6	30%	12	60%	2	10%	0	0%	2	10%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기도 남양주시	14	124,899,234	3	21%	5	36%	2	14%	2	14%	2	14%
경기도 동두천시	18	51,112,222	4	22%	9	50%	2	11%	1	6%	1	6%
경기도 부천시	37	44,147,878	11	30%	24	65%	3	8%	2	5%	1	3%
경기도 성남시	15	213,005,135	3	20%	7	47%	1	7%	2	13%	4	27%
경기도 수원시	10	242,039,671	3	30%	3	30%	2	20%	2	20%	3	30%
경기도 시흥시	22	183,499,773	8	36%	11	50%	2	9%	3	14%	5	23%
경기도 안산시	19	38,404,602	7	37%	10	53%	2	11%	3	16%	0	0%
경기도 안성시	16	19,459,438	7	44%	7	44%	0	0%	1	6%	0	0%
경기도 안양시	19	82,195,421	5	26%	10	53%	2	11%	0	0%	4	21%
경기도 양주시	14	63,131,679	4	29%	6	43%	2	14%	0	0%	2	14%
경기도 양평군	33	28,846,354	8	24%	20	61%	0	0%	0	0%	1	3%
경기도 여주시	11	70,136,556	3	27%	5	45%	2	18%	3	27%	0	0%
경기도 연천군	24	19,323,191	9	38%	11	46%	1	4%	1	4%	0	0%
경기도 오산시	4	127,887,300	2	50%	2	50%	0	0%	0	0%	1	25%
경기도 용인시	7	147,963,580	1	14%	4	57%	2	29%	0	0%	1	14%
경기도 의왕시	11	35,171,591	2	18%	7	64%	1	9%	1	9%	0	0%
경기도 의정부시	20	59,435,601	9	45%	10	50%	3	15%	2	10%	1	5%
경기도 이천시	33	28,779,838	8	24%	8	24%	1	3%	1	3%	1	3%
경기도 파주시	30	47,294,091	6	20%	17	57%	2	7%	1	3%	2	7%
경기도 평택시	1	124,913,400	0	0%	0	0%	0	0%	1	100%	0	0%
경기도 포천시	25	42,146,716	11	44%	11	44%	2	8%	1	4%	1	4%
경기도 하남시	9	408,225,320	2	22%	3	33%	0	0%	2	22%	4	44%
경기도 화성시	66	122,994,383	23	35%	39	59%	1	2%	0	0%	9	14%
소계	606	76,804,179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2. 경상남도

[부록 표 1-21] 경상남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상남도	22	28,204,245	9	41%	11	50%	0	0%	2	9%	0	0%
경상남도 거제시	13	79,899,485	2	15%	7	54%	2	15%	1	8%	1	8%
경상남도 거창군	21	15,646,143	10	48%	10	48%	0	0%	1	5%	0	0%
경상남도 고성군	7	19,481,883	2	29%	4	57%	1	14%	0	0%	0	0%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상남도 김해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남해군	3	74,192,997	0	0%	1	33%	2	67%	0	0%	0	0%	0	0%
경상남도 밀양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사천시	30	14,071,886	19	63%	10	33%	0	0%	1	3%	0	0%	0	0%
경상남도 산청군	23	20,726,130	12	52%	8	35%	2	9%	1	4%	0	0%	0	0%
경상남도 양산시	15	9,674,133	9	60%	6	40%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의령군	2	47,681,000	0	0%	1	50%	1	50%	0	0%	0	0%	0	0%
경상남도 진주시	2	53,143,205	0	0%	1	50%	1	50%	0	0%	0	0%	0	0%
경상남도 창녕군	5	68,402,040	0	0%	3	60%	1	20%	1	20%	0	0%	0	0%
경상남도 창원시	100	17,968,337	59	59%	37	37%	2	2%	0	0%	2	2%	0	0%
경상남도 통영시	33	14,063,124	23	70%	9	27%	0	0%	1	3%	0	0%	0	0%
경상남도 하동군	38	28,217,667	14	37%	21	55%	1	3%	1	3%	1	3%	1	3%
경상남도 함안군	14	15,967,126	6	43%	7	50%	1	7%	0	0%	0	0%	0	0%
경상남도 함양군	21	10,310,829	13	62%	8	38%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합천군	5	36,517,000	0	0%	4	80%	1	20%	0	0%	0	0%	0	0%
소계	354	22,288,63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22] 경상남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상남도	43	25,662,933	27	63%	11	26%	2	5%	3	7%	0	0%	0	0%
경상남도 거제시	17	49,205,765	5	29%	9	53%	1	6%	1	6%	1	6%	1	6%
경상남도 거창군	36	10,202,134	25	69%	9	25%	2	6%	0	0%	0	0%	0	0%
경상남도 고성군	6	4,891,333	5	83%	1	17%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김해시	6	46,720,468	1	17%	4	67%	0	0%	1	17%	0	0%	0	0%
경상남도 남해군	6	24,902,290	1	17%	5	83%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밀양시	2	37,762,345	0	0%	2	100%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사천시	39	20,443,513	26	67%	10	26%	2	5%	0	0%	1	3%	0	0%
경상남도 산청군	29	17,314,000	13	45%	15	52%	1	3%	0	0%	0	0%	0	0%
경상남도 양산시	17	26,068,069	10	59%	5	29%	1	6%	1	6%	0	0%	0	0%
경상남도 의령군	2	36,486,450	0	0%	1	50%	1	50%	0	0%	0	0%	0	0%
경상남도 진주시	6	250,739,625	0	0%	3	50%	1	17%	0	0%	2	33%	0	0%
경상남도 창녕군	4	131,107,610	0	0%	2	50%	1	25%	0	0%	1	25%	0	0%
경상남도 창원시	93	25,625,618	57	61%	31	33%	2	2%	1	1%	2	2%	0	0%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상남도 통영시	32	39,422,588	18	56%	11	34%	1	3%	1	3%	1	3%		
경상남도 하동군	23	41,153,911	10	43%	10	43%	2	9%	0	0%	1	4%		
경상남도 함안군	12	28,452,417	4	33%	7	58%	0	0%	1	8%	0	0%		
경상남도 함양군	26	25,914,317	16	62%	6	23%	1	4%	3	12%	0	0%		
경상남도 합천군	6	106,724,000	0	0%	2	33%	3	50%	0	0%	1	17%		
소계	405	31,933,536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3. 경상북도

[부록 표 1-23] 경상북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상북도	21	112,561,895	3	14%	6	29%	7	33%	2	10%	3	14%		
경상북도 경산시	9	180,269,140	0	0%	3	33%	1	11%	2	22%	3	33%		
경상북도 경주시	8	191,936,169	0	0%	1	13%	4	50%	2	25%	1	13%		
경상북도 고령군	1	24,519,430	0	0%	1	100%	0	0%	0	0%	0	0%		
경상북도 구미시	45	38,877,637	29	64%	12	27%	1	2%	2	4%	1	2%		
경상북도 군위군	3	64,284,030	0	0%	2	67%	0	0%	1	33%	0	0%		
경상북도 김천시	6	657,750,462	0	0%	3	50%	0	0%	2	33%	1	17%		
경상북도 문경시	7	502,612,187	0	0%	2	29%	2	29%	2	29%	1	14%		
경상북도 봉화군	1	64,484,240	0	0%	0	0%	1	100%	0	0%	0	0%		
경상북도 상주시	18	23,974,005	7	39%	10	56%	0	0%	1	6%	0	0%		
경상북도 성주군	9	145,925,978	3	33%	3	33%	1	11%	0	0%	2	22%		
경상북도 안동시	12	78,794,530	3	25%	8	67%	0	0%	0	0%	1	8%		
경상북도 영덕군	0	0	0	0%	0	0%	0	0%	0	0%	0	0%		
경상북도 영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경상북도 영주시	7	50,858,411	1	14%	3	43%	1	14%	2	29%	0	0%		
경상북도 영천시	3	50,267,648	0	0%	2	67%	1	33%	0	0%	0	0%		
경상북도 예천군	1	2,237,000,000	0	0%	0	0%	0	0%	0	0%	1	100%		
경상북도 울릉군	8	17,285,000	0	0%	8	100%	0	0%	0	0%	0	0%		
경상북도 을진군	22	45,551,515	0	0%	16	73%	3	14%	2	9%	1	5%		
경상북도 의성군	3	49,655,733	0	0%	2	67%	1	33%	0	0%	0	0%		
경상북도 청도군	1	26,849,970	0	0%	1	100%	0	0%	0	0%	0	0%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상북도 청송군	1	25,000,000	0	0%	1	100%	0	0%	0	0%	0	0%
경상북도 칠곡군	11	60,600,909	6	55%	3	27%	0	0%	0	0%	2	18%
경상북도 포항시	10	155,715,113	0	0%	5	50%	2	20%	0	0%	3	30%
소계	207	116,024,409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24] 경상북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상북도	17	101,331,778	2	12%	9	53%	1	6%	4	24%	1	6%
경상북도 경산시	8	239,496,808	0	0%	2	25%	3	38%	1	13%	2	25%
경상북도 경주시	8	54,104,004	1	13%	4	50%	2	25%	1	13%	0	0%
경상북도 고령군	2	330,878,250	0	0%	1	50%	0	0%	0	0%	1	50%
경상북도 구미시	58	33,149,896	39	67%	16	28%	1	2%	0	0%	2	3%
경상북도 군위군	3	61,132,927	0	0%	2	67%	0	0%	1	33%	0	0%
경상북도 김천시	3	154,764,353	0	0%	1	33%	1	33%	0	0%	1	33%
경상북도 문경시	7	509,527,027	0	0%	5	71%	0	0%	0	0%	2	29%
경상북도 봉화군	3	213,405,510	0	0%	1	33%	1	33%	0	0%	1	33%
경상북도 상주시	16	247,998,237	7	44%	5	31%	1	6%	0	0%	3	19%
경상북도 성주군	6	96,163,592	1	17%	3	50%	1	17%	0	0%	1	17%
경상북도 안동시	8	108,395,000	2	25%	4	50%	0	0%	0	0%	2	25%
경상북도 영덕군	1	50,563,220	0	0%	0	0%	1	100%	0	0%	0	0%
경상북도 영양군	2	65,567,800	0	0%	1	50%	1	50%	0	0%	0	0%
경상북도 영주시	9	46,955,222	1	11%	5	56%	2	22%	1	11%	0	0%
경상북도 영천시	10	66,159,681	2	20%	5	50%	0	0%	3	30%	0	0%
경상북도 예천군	4	295,758,968	1	25%	0	0%	1	25%	0	0%	2	50%
경상북도 울릉군	7	31,400,609	0	0%	5	71%	2	29%	0	0%	0	0%
경상북도 울진군	31	50,464,306	1	3%	24	77%	3	10%	2	6%	1	3%
경상북도 의성군	27	16,149,030	20	74%	6	22%	0	0%	1	4%	0	0%
경상북도 청도군	3	92,021,377	0	0%	0	0%	2	67%	1	33%	0	0%
경상북도 청송군	9	28,823,842	2	22%	6	67%	0	0%	1	11%	0	0%
경상북도 칠곡군	8	20,107,823	3	38%	4	50%	1	13%	0	0%	0	0%
경상북도 포항시	9	43,371,909	1	11%	6	67%	2	22%	0	0%	0	0%
소계	259	87,561,570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4. 전라남도

[부록 표 1-25] 전라남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라남도	27	22,465,844	17	63%	6	22%	2	7%	2	7%	0	0%
전라남도 강진군	33	26,712,934	22	67%	9	27%	0	0%	1	3%	1	3%
전라남도 고흥군	2	168,234,500	0	0%	0	0%	1	50%	0	0%	1	50%
전라남도 곡성군	11	28,191,736	2	18%	7	64%	1	9%	1	9%	0	0%
전라남도 광양시	3	96,067,567	0	0%	1	33%	1	33%	1	33%	0	0%
전라남도 구례군	8	31,658,469	4	50%	3	38%	0	0%	1	13%	0	0%
전라남도 나주시	2	6,090,500	1	50%	1	50%	0	0%	0	0%	0	0%
전라남도 담양군	2	23,604,000	0	0%	2	100%	0	0%	0	0%	0	0%
전라남도 목포시	20	20,837,275	10	50%	9	45%	0	0%	1	5%	0	0%
전라남도 무안군	2	82,308,340	0	0%	0	0%	2	100%	0	0%	0	0%
전라남도 보성군	17	54,019,422	9	53%	5	29%	1	6%	0	0%	2	12%
전라남도 순천시	66	28,198,947	34	52%	26	39%	2	3%	1	2%	3	5%
전라남도 신안군	19	27,813,962	4	21%	12	63%	3	16%	0	0%	0	0%
전라남도 여수시	31	10,406,245	23	74%	7	23%	1	3%	0	0%	0	0%
전라남도 영광군	3	79,471,907	0	0%	1	33%	1	33%	1	33%	0	0%
전라남도 영암군	15	17,067,177	7	47%	7	47%	1	7%	0	0%	0	0%
전라남도 완도군	3	65,163,260	0	0%	1	33%	1	33%	1	33%	0	0%
전라남도 장성군	2	17,395,050	1	50%	1	50%	0	0%	0	0%	0	0%
전라남도 정흥군	22	28,751,591	7	32%	13	59%	0	0%	1	5%	1	5%
전라남도 진도군	8	31,768,621	0	0%	8	100%	0	0%	0	0%	0	0%
전라남도 함평군	2	101,545,815	0	0%	1	50%	0	0%	1	50%	0	0%
전라남도 해남군	3	57,503,100	0	0%	2	67%	0	0%	1	33%	0	0%
전라남도 화순군	4	42,684,000	0	0%	2	50%	2	50%	0	0%	0	0%
소계	305	29,852,94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26] 전라남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라남도	23	22,761,437	15	65%	6	26%	1	4%	0	0%	1	4%
전라남도 강진군	24	20,795,417	15	63%	8	33%	0	0%	0	0%	1	4%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라남도 고흥군	3	163,696,333	0	0%	0	0%	1	33%	1	33%	1	33%		
전라남도 곡성군	16	40,886,005	6	38%	6	38%	2	13%	2	13%	0	0%		
전라남도 광양시	9	171,136,913	1	11%	5	56%	0	0%	1	11%	2	22%		
전라남도 구례군	10	16,573,529	5	50%	4	40%	1	10%	0	0%	0	0%		
전라남도 나주시	2	58,941,125	0	0%	1	50%	1	50%	0	0%	0	0%		
전라남도 담양군	2	39,689,700	0	0%	1	50%	1	50%	0	0%	0	0%		
전라남도 목포시	18	12,963,542	10	56%	8	44%	0	0%	0	0%	0	0%		
전라남도 무안군	4	37,279,900	1	25%	2	50%	1	25%	0	0%	0	0%		
전라남도 보성군	20	85,756,633	5	25%	7	35%	4	20%	2	10%	2	10%		
전라남도 순천시	85	30,451,618	40	47%	33	39%	5	6%	6	7%	1	1%		
전라남도 신안군	34	30,456,648	4	12%	24	71%	6	18%	0	0%	0	0%		
전라남도 여수시	37	26,495,295	15	41%	18	49%	3	8%	0	0%	1	3%		
전라남도 영광군	5	51,601,244	0	0%	3	60%	2	40%	0	0%	0	0%		
전라남도 영암군	18	25,290,656	3	17%	14	78%	0	0%	1	6%	0	0%		
전라남도 완도군	11	88,549,375	0	0%	5	45%	4	36%	1	9%	1	9%		
전라남도 장성군	5	154,611,680	0	0%	4	80%	0	0%	0	0%	1	20%		
전라남도 장흥군	31	9,743,387	18	58%	12	39%	1	3%	0	0%	0	0%		
전라남도 진도군	3	34,572,667	0	0%	3	100%	0	0%	0	0%	0	0%		
전라남도 함평군	4	43,077,295	0	0%	2	50%	2	50%	0	0%	0	0%		
전라남도 해남군	7	123,584,354	1	14%	1	14%	3	43%	1	14%	1	14%		
전라남도 화순군	6	244,648,500	1	17%	1	17%	0	0%	2	33%	2	33%		
소계	377	42,823,146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5. 전라북도

[부록 표 1-27] 전라북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라북도	17	17,436,353	7	41%	8	47%	2	12%	0	0%	0	0%		
전라북도 고창군	14	33,248,164	7	50%	4	29%	2	14%	1	7%	0	0%		
전라북도 군산시	28	18,444,383	20	71%	6	21%	0	0%	2	7%	0	0%		
전라북도 김제시	14	25,028,714	6	43%	6	43%	2	14%	0	0%	0	0%		
전라북도 남원시	7	59,297,211	0	0%	5	71%	1	14%	0	0%	1	14%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라북도 무주군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북도 부안군	3	68,173,659	0	0%	2	67%	0	0%	1	33%	0	0%		
전라북도 순창군	33	29,214,919	15	45%	14	42%	2	6%	1	3%	1	3%		
전라북도 원주군	12	50,834,179	0	0%	8	67%	3	25%	1	8%	0	0%		
전라북도 익산시	8	149,847,500	0	0%	3	38%	2	25%	2	25%	1	13%		
전라북도 임실군	3	83,786,000	0	0%	1	33%	1	33%	1	33%	0	0%		
전라북도 장수군	8	51,850,943	0	0%	6	75%	2	25%	0	0%	0	0%		
전라북도 전주시	53	39,433,416	28	53%	17	32%	2	4%	3	6%	3	6%		
전라북도 정읍시	56	6,689,927	44	79%	12	21%	0	0%	0	0%	0	0%		
전라북도 진안군	2	71,530,845	0	0%	0	0%	2	100%	0	0%	0	0%		
소계	258	32,151,376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28] 전라북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라북도	15	92,009,233	3	20%	8	53%	2	13%	1	7%	1
전라북도 고창군	27	19,616,013	19	70%	6	22%	0	0%	2	7%	0	0%		
전라북도 군산시	35	30,506,210	25	71%	6	17%	0	0%	3	9%	1	3%		
전라북도 김제시	5	40,969,400	0	0%	4	80%	1	20%	0	0%	0	0%		
전라북도 남원시	9	97,089,511	0	0%	6	67%	0	0%	1	11%	2	22%		
전라북도 무주군	1	66,287,150	0	0%	0	0%	1	100%	0	0%	0	0%		
전라북도 부안군	2	132,218,950	0	0%	1	50%	0	0%	0	0%	1	50%		
전라북도 순창군	34	19,222,551	22	65%	9	26%	1	3%	2	6%	0	0%		
전라북도 원주군	9	58,964,756	0	0%	5	56%	2	22%	2	22%	0	0%		
전라북도 익산시	13	83,795,538	2	15%	6	46%	1	8%	3	23%	1	8%		
전라북도 임실군	7	61,859,329	0	0%	4	57%	1	14%	2	29%	0	0%		
전라북도 정수군	7	34,539,780	0	0%	6	86%	1	14%	0	0%	0	0%		
전라북도 전주시	47	23,703,277	28	60%	16	34%	1	2%	1	2%	1	2%		
전라북도 정읍시	51	11,915,470	35	69%	14	27%	2	4%	0	0%	0	0%		
전라북도 진안군	3	76,721,987	0	0%	0	0%	3	100%	0	0%	0	0%		
소계	265	35,045,887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6. 제주특별자치도

[부록 표 1-2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38	31,337,713	16	42%	13	34%	7	18%	2	5%	0	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7	16,806,287	22	59%	12	32%	2	5%	1	3%	0	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6	22,250,521	26	57%	14	30%	4	9%	2	4%	0	0%
소계	121	23,439,584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3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6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29	47,589,946	8	28%	14	48%	3	10%	3	10%	1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3	55,990,774	7	21%	18	55%	2	6%	5	15%	1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3	30,316,176	21	40%	23	43%	4	8%	5	9%	0	0%
소계	115	42,039,663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7. 충청남도

[부록 표 1-31] 충청남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2015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충청남도	25	42,297,973	16	64%	5	20%	1	4%	1	4%	2	8%
충청남도 계룡시	5	9,556,860	4	80%	1	20%	0	0%	0	0%	0	0%
충청남도 공주시	41	7,552,444	30	73%	10	24%	1	2%	0	0%	0	0%
충청남도 금산군	20	20,610,624	8	40%	9	45%	3	15%	0	0%	0	0%
충청남도 논산시	32	17,855,250	24	75%	6	19%	0	0%	2	6%	0	0%
충청남도 당진시	29	12,370,659	21	72%	6	21%	2	7%	0	0%	0	0%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5	10,551,631	50	77%	13	20%	1	2%	1	2%
충청남도 보령시	60	13,612,369	48	80%	8	13%	1	2%	3	5%	0	0%
충청남도 서산시	22	17,894,222	12	55%	8	36%	2	9%	0	0%	0	0%
충청남도 서천군	28	73,555,478	12	43%	13	46%	0	0%	2	7%	1	4%
충청남도 아산시	12	26,788,393	3	25%	7	58%	2	17%	0	0%	0	0%
충청남도 예산군	18	24,704,183	5	28%	10	56%	3	17%	0	0%	0	0%
충청남도 천안시	18	171,417,398	1	6%	14	78%	0	0%	0	0%	3	17%
충청남도 청양군	4	231,807,340	0	0%	1	25%	2	50%	0	0%	1	25%
충청남도 태안군	20	24,951,386	7	35%	10	50%	2	10%	1	5%	0	0%
충청남도 홍성군	17	37,516,588	9	53%	7	41%	0	0%	0	0%	1	6%
소계	416	30,357,515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부록 표 1-32] 충청남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4	76,901,310	8	33%	9	38%	3	13%	1	4%
충청남도	5	29,171,850	4	80%	0	0%	0	0%	1	20%	0	0%
충청남도 계룡시	68	7,706,032	40	59%	28	41%	0	0%	0	0%	0	0%
충청남도 금산군	20	49,125,046	10	50%	5	25%	3	15%	0	0%	2	10%
충청남도 논산시	36	29,337,369	26	72%	6	17%	1	3%	1	3%	2	6%
충청남도 당진시	38	19,354,658	28	74%	9	24%	0	0%	0	0%	1	3%
충청남도 보령시	73	8,436,319	56	77%	16	22%	1	1%	0	0%	0	0%
충청남도 부여군	31	14,882,230	21	68%	7	23%	2	6%	1	3%	0	0%
충청남도 서산시	31	41,500,263	16	52%	9	29%	1	3%	3	10%	2	6%
충청남도 서천군	33	22,049,729	13	39%	15	45%	5	15%	0	0%	0	0%
충청남도 아산시	18	39,916,611	6	33%	11	61%	0	0%	0	0%	1	6%
충청남도 예산군	24	35,130,363	9	38%	11	46%	2	8%	1	4%	1	4%
충청남도 천안시	30	52,492,267	9	30%	19	63%	0	0%	0	0%	2	7%
충청남도 청양군	4	382,859,680	0	0%	1	25%	2	50%	0	0%	1	25%
충청남도 태안군	23	29,480,821	11	48%	9	39%	0	0%	3	13%	0	0%
충청남도 홍성군	20	10,975,673	12	60%	8	40%	0	0%	0	0%	0	0%
소계	478	29,176,528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18. 충청북도

[부록 표 1-33] 충청북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5)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충청북도	24	57,336,765	15	63%	5	21%	3	13%	0	0%	1	0%
충청북도 괴산군	7	25,173,257	1	14%	6	86%	0	0%	0	0%	0	14%
충청북도 단양군	5	22,583,600	2	40%	3	60%	0	0%	0	0%	0	0%
충청북도 보은군	20	10,603,525	15	75%	4	20%	1	5%	0	0%	0	7%
충청북도 영동군	26	15,554,518	12	46%	13	50%	1	4%	0	0%	0	0%
충청북도 옥천군	21	13,556,645	11	52%	9	43%	1	5%	0	0%	0	7%
충청북도 음성군	15	30,574,149	8	53%	5	33%	1	7%	0	0%	1	6%
충청북도 제천시	32	49,226,900	16	50%	14	44%	1	3%	0	0%	1	0%
충청북도 증평군	13	48,523,138	4	31%	7	54%	0	0%	1	8%	1	0%
충청북도 진천군	5	94,693,068	0	0%	1	20%	2	40%	2	40%	0	0%
충청북도 청주시	10	303,487,336	0	0%	6	60%	1	10%	1	10%	2	24%
충청북도 충주시	4	155,712,250	0	0%	1	25%	0	0%	2	50%	1	11%
소계	182	51,440,946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부록 표 1-34] 충청북도 건축설계용역 계약현황(2016)

지역	사업 건수	평균계약 금액(원)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2.1억 원 미만		2.1억 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충청북도	24	15,095,497	15	63%	8	33%	0	0%	1	4%	0	0%
충청북도 괴산군	7	173,008,686	1	14%	3	43%	1	14%	1	14%	1	14%
충청북도 단양군	9	33,444,933	1	11%	6	67%	1	11%	1	11%	0	0%
충청북도 보은군	29	48,510,129	18	62%	5	17%	2	7%	2	7%	2	7%
충청북도 영동군	20	9,622,263	13	65%	7	35%	0	0%	0	0%	0	0%
충청북도 옥천군	15	39,697,612	8	53%	4	27%	1	7%	1	7%	1	7%
충청북도 음성군	16	31,472,581	9	56%	6	38%	0	0%	0	0%	1	6%
충청북도 제천시	41	15,696,861	19	46%	20	49%	2	5%	0	0%	0	0%
충청북도 증평군	8	9,157,638	6	75%	2	25%	0	0%	0	0%	0	0%
충청북도 진천군	1	43,092,030	0	0%	1	100%	0	0%	0	0%	0	0%
충청북도 청주시	21	248,690,508	0	0%	10	48%	3	14%	3	14%	5	24%
충청북도 충주시	9	126,303,300	1	11%	3	33%	3	33%	1	11%	1	11%
소계	200	58,458,882										

자료출처: 조달청 조달정보 DB

# 부록 2. 센터 운영 사례 조사

Appendix 2

## 1. 조사 개요

### 2. 조사 내용

## 1. 조사 개요

### 목적

- 국가 및 지역 센터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기관과 지역기관의 운영형식, 센터의 역할 분담, 센터별 수행업무 등을 분석

### 조사대상

- 법령에서 센터설립 근거가 명시된 사례를 대상으로 함

[부록 표 2-1] 센터명과 센터 설립 근거법

번호	근거법		센터명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제10조 법제11조, 영제14조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33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법제8~9조	중앙장애인아동지원센터 지역장애인아동지원센터
4	진로교육법	법제15조 법제16조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5	노후준비 지원법	법제9조 법제10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제15조의2 법제15조의3 법제16조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제25조 법제26조 법제30조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번호	근거법		센터명
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제19조 법제20조 법제39조의2, 영제73조의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문화교육센터
9	평생교육법	법제39조의2, 영제73조의3	지역문화교육센터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제10조, 영제7조 법제10조, 영제8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11	주거기본법	법제22조	주거복지센터
12	건강가정기본법	법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제23조	공공투자관리센터
14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5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제23조	녹색건축센터
17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	충남공공디자인지원센터

자료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 2. 조사내용

### 1) 센터 운영형식

- 국가기관과 지역기관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형식과 국가기관 또는 지역기관만 운영하는 형식으로 구분

[부록 표 2-2] 센터 운영형식에 따른 분류

구분	역할분담 여부	설립주체	센터명
		국가	도시재생지원기구
1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국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지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가	중앙장애인아동지원센터
3		지역	지역장애인아동지원센터
		국가	국가진로교육센터
4		지역	지역진로교육센터
		국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5		지역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국가	중앙자활센터
6		광역	광역자활센터
		기초	지역자활센터
		국가	중앙응급의료센터
7		광역	권역별응급의료센터
		기초	지역응급의료센터
	국가기관과 지역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		
국가기관과 지역기관을 구분하여 운영			
	국가기관과 지역기관을 구분하여 운영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구분	역할분담 여부	설립주체	센터명
국가기관 또는 지역기관만 있는 경우	국가-지역 간 역할분담 국가-지역 간 역할구분 없음	8 국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9 지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지자체 별도의 제도적 근거	9 국가	국가문화교육센터
		10 지역	지역문화교육센터
	국가기관만 있는 경우	10 국가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11 지역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자체 기관만 있는 경우	12 -	주거복지센터
국가기관 또는 지역기관만 있는 경우	국가-지역 간 역할구분 국가·지자체 별도의 제도적 근거	13 국가	공공투자관리센터
		14 지역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국가기관만 있는 경우	15 지역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16 국가	녹색건축센터
	지자체 기관만 있는 경우	17 지역	충남공공디자인지원센터

자료출처: 연구진 작성

## 2) 센터 수행업무

- 센터별 관련법 기준으로 수행업무 검토
  - 국가기관과 지역기관, 광역기관과 기초기관 주체로 운영되는 센터의 수행업무를 관련법에서 명시된 기준으로 검토하여 수행업무 내용을 '정책·제도, 계획, 사업 관련, 연구, 교육, 정보, 홍보·관련 활동, 상담, 기관 관련, 기타'로 분류

[부록 표 2-3] 수행업무의 분류

업무 분류*	내용
정책	정책/제도 필요정책 개발, 제도 개발, 정책·제도 지원
	계획수립 기관별 필요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관련	기획/사전검토 사업기획, 사업계획 평가
	시행/운영 사업시행, 사업의 운영·관리(지원)
연구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교육훈련
정보	관련 정보 제공,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홍보·상담	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 상담
기관	센터 관리 및 평가, 지역기관 관리

\*센터별 수행업무 키워드 도출 후 그룹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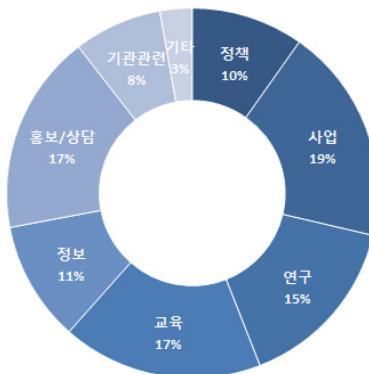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부록 표 2-4] 기관별 수행업무 검토 방법(예시)

기관	수행업무*	정책 제도 수립		사업 기획 사전 검토		연구	교육	정보	홍보 상담	기관 관련	기타
		정책 제도	계획 수립	기획	사전 검토						
도시 재생 지원 기구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1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						1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1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1	
도시 재생 지원 센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1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1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1

\*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령제14조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센터별 수행업무는 사업, 홍보·상담, 교육, 연구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국가기관은 연구, 홍보·상담, 교육, 정보, 정책 순으로, 지역기관은 사업, 교육, 홍보·상담, 정보 및 연구 순으로 업무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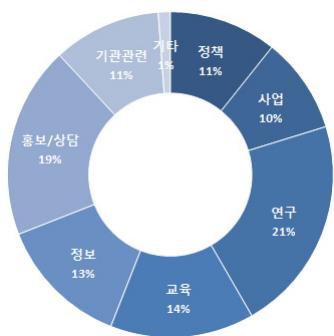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 센터 수행업무의 항목별 원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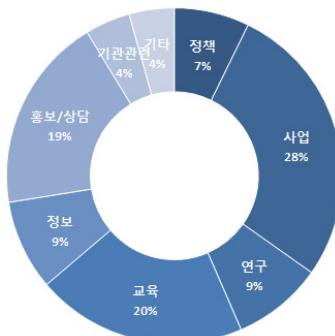
[부록 표 2-5] 센터 운영사례(전체)의 수행업무 항목별 비율

	정책	사업	연구	교육	정보	홍보상담	기관관련	기타	합계
전체 (비율)	14 (10%)	27 (19%)	22 (15%)	25 (17%)	15 (11%)	25 (17%)	11 (8%)	4 (3%)	143 (100%)

출처: 연구진 작성



[부록 그림 2-2] 국가기관의 수행업무 비율



[부록 그림 2-3] 지역기관의 수행업무 비율

출처: 연구진 작성

[부록 표 2-6] 센터 운영사례(전체)의 수행업무 항목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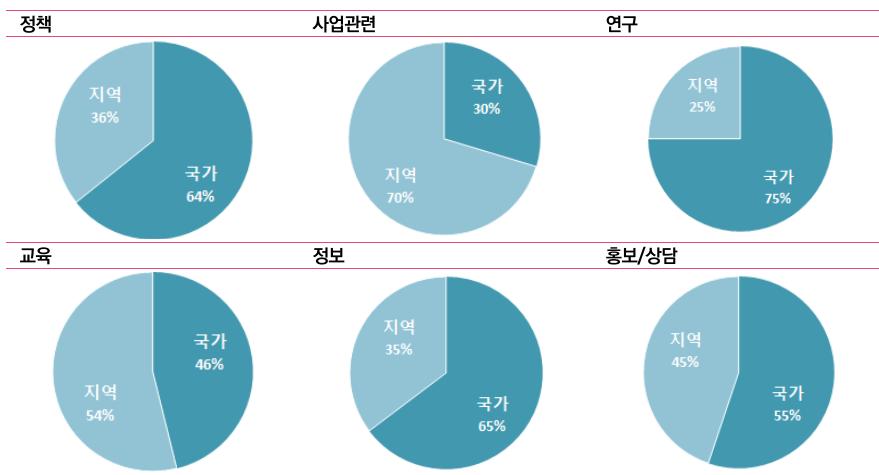
	정책	사업	연구	교육	정보	홍보상담	기관관련	기타	합계
국가	9 (11%)	8 (10%)	18 (21%)	12 (14%)	11 (13%)	16 (19%)	9 (11%)	1 (1%)	84 (100%)
지역	5 (7%)	19 (28%)	6 (9%)	14 (20%)	6 (9%)	13 (19%)	3 (4%)	3 (4%)	69 (100%)

\*국가-지역 역할 구분이 없는 주거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복

출처: 연구진 작성

- 수행업무별로 살펴보면 교육, 홍보·상담의 업무 외에 정책, 연구, 정보 관련 업무는 국가기관이 높게 나타나고 사업 관련 업무는 지역기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록 표 2-7] 국가기관과 지역기관의 수행업무 항목별 비교



출처: 연구진 작성